

# 강원특별자치도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5028 호

2023. 7. 7(금)

## 조 례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070호	강원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5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071호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정국 소관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8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072호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073호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074호	강원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075호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4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076호	강원특별자치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6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077호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	28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078호	강원특별자치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9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079호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30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080호	강원특별자치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1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081호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2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082호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37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083호	강원특별자치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39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084호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	41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085호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9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086호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50

회									
람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087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53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088호	강원특별자치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57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089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	58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090호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59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091호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60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092호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61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093호	강원특별자치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2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094호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63

**규 칙**

강원특별자치도 규칙 제3084호	강원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80
-------------------	---------------------------	----

**입 법 예 고**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3-61호	강원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2
------------------------	----------------------------	----

**고 시**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240호	부사원천 하천점용허가(새마을교) 고시	88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242호	양덕원천 하천점용허가(절골보(양덕원6보)) 고시	89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243호	인북천 하천점용허가(물결보도교) 고시	90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244호	기린지구 받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91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245호	항만개발사업의 고시	92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246호	주포천(신림지구) 재해예방사업 하천공사 시행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93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247호	영월 한옥마을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승인(변경) 고시	110

**공 고**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1120호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사항 공고	139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1121호	제80회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140
강원특별자치도축산기술연구소 공고 제2023-8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14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3-7호	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부설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4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3-8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49

**시 군 행 정**

춘천시 고시 제2023-324호	춘천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중도남유원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57
춘천시 공고 제2023-1513호	춘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안) 열람공고	190
춘천시 공고 제2023-1514호	춘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류765호선)사업 실시계획(안) 열람공고	192
원주시 고시 제2023-256호	원주 도시계획시설(소로1-201호, 소로2-545호)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94
원주시 고시 제2023-260호	원주 도시계획시설(중로3-302호, 중로3-303호, 소로3-3002호, 주차장307호)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97
원주시 공고 제2023-2014호	원주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23호,경관녹지46호)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205
동해시 공고 제2023-898호	동해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36호선, 소로1-27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208
태백시 고시 제2023-58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209
태백시 고시 제2023-6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218
속초시 고시 제2023-93호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93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221
삼척시 고시 제2023-96호	삼척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삼척자동차터미널)사업 실시계획 인가 실효 고시	223
영월군 고시 제2023-138호	군계획시설(공원)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225
영월군 고시 제2023-140호	영월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227

고성군 고시 제2023-122호	고성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제11차) .....	234
고성군 고시 제2023-123호	고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	249



4. 그 밖에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신고·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이하 “신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갑질 상담 및 신고의 접수, 조사
- 2. 갑질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 3. 갑질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 4. 그 밖에 갑질과 관련된 사항

③ 도지사는 신고·지원센터에 감사·감찰 직원을 전담배치하고, 변호사, 심리상담사 등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조사 결과, 갑질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중복 접수의 처리) 도지사는 갑질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피해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공무원 등으로부터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징계·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을 통한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해야 한다.

제9조(갑질 예방교육)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강원자치도 및 공공기관에 대한 갑질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피해자 등은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신분상 등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 등이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강원자치도 감사부서, 인사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강원자치도 감사부서는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강원자치도 인사부서 또는 관련 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피해자 등의 신분, 내용 등에 대하여 피해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도지사는 피해자 등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피해자 등이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보복행위 신고) ① 피해자 등이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강원자치도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강원자치도 감사부서는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의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피해자 등 비밀보장 위반 시 조치) 도지사는 제10조를 위반하여 피해자 등의 비밀보장을 철저히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의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허위신고) ① 피해자 등이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도지사는 피해자 등이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피해 회복 지원) ① 도지사는 피해자가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법률상담 등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자 회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피해자 등이 소속된 기관이나 산하 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기관에 대한 권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산하 공공기관에 갑질 행위 근절에 대한 제도개선, 시정조치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도지사는 갑질 행위 근절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3. 6. 23.) 및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5. 18.)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정국 소관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071호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정국 소관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강원특별자치도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둘 수 있다” 를 “둔다” 로 한다.

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다목 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일정등급” 을 “일정 등급” 으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운영할 수 있다” 를 “설치·운영한다” 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한정하여” 를 “한하여” 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의3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조(「강원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도내” 를 “강원특별자치도 내” 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를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한다)” 를 “한다) 제2조” 로 한다.

제11조 중 “개발·보급과곤충산업”을 “개발·보급과 곤충산업”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운영한다”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행할 수 있다”를 “수행한다”로 한다.

제4조(「강원특별자치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1호의”를 “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모든시책”을 “모든 시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8조 중 “연1회”를 “연 1회”로 한다.

제5조(「강원특별자치도 보증종자의 생산·보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보증종자의 생산·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생산·보급”을 “생산·보급”으로, “규정한다”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제19조”를 “제1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강원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4조의”를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 중 “종자산업법 제26조”를 “「종자산업법」 제26조”로 한다.

제21조 중 “종자산업법 제15조제2항”을 “「종자산업법」 제15조제2항”으로, “식물신품중보호법 제28조의”를 “「식물신품중보호법」 제28조에 따른”으로, “종자산업법 제38조에 따라”를 “「종자산업법」 제38조에 따른”으로, “제3조의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합동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강원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민간인증기관 지원) 도지사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강원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을 “법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 1. “가축”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가축 및 동물을 말한다.  
제1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을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중 “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영 제11조의5제1항”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5제1항”으로 한다.
  
- 제8조(「강원특별자치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목적으로 기르”를 “목적으로 기르”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규정된”을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소유자”를 “소유자 등”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16조”를 “법 제3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피학대동물 또는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을 “사람”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를 “피학대동물 또는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확산과 건전한 여가 정착”을 “확산”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3. 6. 23.) 및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5. 18.)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072호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시설사용 제한)” 을 “(휴관일 및 시설사용 제한)”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 제3호 중 “산사태” 를 “산사태, 홍수, 태풍”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 을 “제2항” 으로 한다.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다만, 성수기와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휴관일에서 제외한다.

2.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제8조제2항 중 “도지사” 를 “자연휴양림의 귀책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도지사” 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별표 5” 로,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를 “시설사용료를 환급하고, 일부를 배상할 수 있다” 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약금” 을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산불, 산사태,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상황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여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예약신청 및 예약성립)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통합예약시스템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결제하지 않을 경우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제12조의 제목 “(예비객실의 운영)” 을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 를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운영은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며,” 로, “홈페이지” 를 “누리집” 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의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

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휴양림 이용객의 객실 사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객실의 대처가 필요한 경우
- 5. 휴양림 시설물 이용객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도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관리자 예약) 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
-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
-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제12조의3(매매·교환 등의 금지)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별표 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일반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3. “주중”이란 “주말”을 제외한 요일을 말한다.
4. “단체”란 3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5.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어른”이란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9.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10.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이하인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족 구성원을 말한다.
1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12. “의사상자”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제2조의2에 따른 의사상자를 말한다.
13. “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4. “국민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별표 2]

입장료(제6조제2항 관련)

(단위 : 원/1일)

구 분	개인			단체		
	어른	청소년 · 군인	어린이	어른	청소년 · 군인	어린이
요 금	2,000	1,500	1,000	1,500	1,000	700

■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별표 3]

시설사용료(제6조제3항 관련)

(단위 : 원)

시설명	구 분		시설사용료			비 고
			성수기	9월 ~ 다음 해 6월		
				주 말	주 중	
주차장	경형 승용차(배기량 1,000cc 미만)		2,500	2,000	1,500	1대1일
	소·중·대형 승용차(배기량 1,000cc 이상) 소형 승합차(15인 이하), 소형 화물차(1톤 이하)		3,000	2,500	2,000	
	중형 승합차(16인 이상 ~ 35인 이하) 중형 화물차(1톤 초과 ~ 5톤 미만)		4,000	3,500	3,000	
	대형 승합차(36인 이상), 대형 화물차(5톤 이상)		5,000	4,500	4,000	
야영데크	대(2.7m×5.4m)		35,000	24,000	17,000	1조1일
	소(2.7m×2.7m)		23,000	16,000	11,000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4인실	산막형	70,000	60,000	50,000	1실1박
	6인실	원룸 및 산막형	110,000	90,000	70,000	
	10인실	다중형	160,000	130,000	100,000	
강원숲체험장 (숲속의 집)	4인실	장작아궁이 황토구들형	60,000	50,000	40,000	1실1박
		원룸 및 산막형	70,000	60,000	50,000	
	6인실	원룸형	110,000	90,000	70,000	
	10인실	다중형	160,000	130,000	100,000	
활쏘기장	1회 사용료(화살10축)		3,000	3,000	3,000	활1장
세미나실	대회의실(80석 규모)		80,000	80,000	80,000	4시간
	소회의실(30석 규모)		50,000	50,000	50,000	
명상장	1회 사용료(40석 규모)		50,000	50,000	50,000	4시간

※ 참고사항

1. 야영데크는 5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하며, 이용 시간은 조례 제5조에 따른다.
2. 이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이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3. 1일 미만 이용할 경우에도 1일 이용료를 징수한다.
4. 산불조심기간(봄철 : 2. 1.~ 5. 15., 가을철 : 11. 1.~12. 15.) 동안 산림휴양시설 내 숯(장작)불 사용은 전면 금지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별표 4]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제7조 관련)

(단위 : 원, %)

입장료 감면요금	개인			단체			비고
	어른	청소년 · 군인	어린이	어른	청소년 · 군인	어린이	
	1,000	800	500	800	500	300	
숲속의 집 시설사용료 감면율	감면대상			등급		감면율	9월~ 다음 해 6월 주중에 한정 (1가정 1실)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국가보훈대상자			1 ~ 3급		50	
				4 ~ 7급		30	
				8 ~ 14급		20	
	다자녀 가정			-		3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30	
	한부모가족			-		30	
	강원특별자치도민			-		30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			-		50	
공공기관·단체간 협약체결 등 주중활성화를 위해 정하는 시설의 이용객(중복할인 불가)			-		30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 감면요금을 적용한다.
  - 가. 강원특별자치도민
  - 나. 다자녀 가정
  - 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숲속의 집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가. 장애인
  - 나. 국가보훈대상자
  - 다. 다자녀 가정
  - 라. 강원특별자치도민
  - 마.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
  - 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사. 한부모가족

아. 그 밖에 도지사가 휴양림 경영활성화 등을 위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국가보훈대상자·배우자 및 보호자(상이등급 1~3급)

다. 의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의상자 1~2급)

라.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

마. 숙박시설 및 야영테크를 이용하는 사람

바. 활쏘기·세미나실 등 유료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다만, 유료시설 사용 후 자연휴양림 시설(산책·탐방 등)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입장료를 징수한다.

사.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우수자원봉사자

아.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가.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

나. 10명 기준 숙박시설 및 야영테크(대) : 주차 3대

다. 6명 기준 숙박시설 : 주차 2대

라. 4명 기준 숙박시설 및 야영테크(소) : 주차 1대

마. 활쏘기·세미나실 등 유료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다만, 유료시설 사용 후 자연휴양림 시설(산책·탐방 등)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주차료를 징수한다.

바.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별표 5]

시설사용료 환급기준(제8조제2항 관련)

구 분		공제 기준		비 고
		주 중	주 말	
성 수 기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결제당일 취소	전액 환급	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	전액 환급 및 이용요금의 10% 배상	전액 환급 및 이용요금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5일 전	전액 환급 및 이용요금의 30% 배상	전액 환급 및 이용요금의 40% 배상	
	사용예정일 3일 전	전액 환급 및 이용요금의 50% 배상	전액 환급 및 이용요금의 60% 배상	
	사용예정일 2일 전	손해배상	손해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	손해배상	손해배상	
	사용예정 당일	손해배상	손해배상	
비 수 기	사용예정일 2일 전	전액 환급	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	전액 환급 및 이용요금의 10% 배상	전액 환급 및 이용요금의 20% 배상	
	사용예정 당일	전액 환급 및 이용요금의 20% 배상	전액 환급 및 이용요금의 30% 배상	

\* 본 환급기준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별표 6]

위약금 공제기준(제9조제1항 관련)

구 분		공제기준		비 고
		주 중	주 말	
성 수 기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결제당일 취소	전액 환급	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총 요금의 4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총 요금의 6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2일 전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총 요금의 9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총 요금의 9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 당일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총 요금의 90% 공제 후 환급	
비 수 기	사용예정일 2일 전	전액 환급	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 당일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본 위약금 공제 기준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3. 6. 23.) 및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5. 18.)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073호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수행사항)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감염병·식품·약품·수질·대기·폐기물·토양·환경유해인자 등의 시험·검사·조사·연구(이하 “시험·연구 등”이라 한다)를 의뢰받아 처리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험·연구 등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각각 정하는 수수료에 따르며 그 외의 시험항목의 수수료는 가장 유사한 시험항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정전염병”을 “법정감염병”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도지사 또는 원장”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각급학교”를 “각 급 학교”로, “먹는 물을”을 “먹는물”로,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단, 최초로 개발하여 먹는 물의 적부 판정을 받기 위한 검사는 제외)”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수질검사”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최초로 개발하여 먹는물의 적부 판정을 받기 위한 검사는 제외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내”를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이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일상 생활”을 “일상생활”로, “제3조에서 규정하는”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연구용역 사업”을 “연구용역사업”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수행 할”을 “수행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연구용역사업중”을 “제1항에 따른 연구용역사업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 등에 관한 조례 [별표]

시험성적서 등 사본발급 수수료(제3조제4항 관련)

구 분	수 수 료	비 고
시험성적서 사본 1통	500원	국문
	1,000원	영문
의약품등 통관예정보고서 접수필증 사본 1통	1,000원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3. 6. 23.) 및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5. 18.)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074호

강원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잠수어업인이 바다내의 힘든 조업환경 등으로 잠수병 관련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에 따라 잠수어업인”을 “잠수어업인”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잠수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27조와 제41조 및 제47조에 따라 어업허가 및 어업신고를”을 ““잠수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및 제48조에 따라 면허·허가·신고 어업을”로, “시행령에 따른 잠수기어업 또는 나잠어업”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마을·잠수기·나잠어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진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 「지역보건법」 제12조 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진료기관을 말한다.

제4조제2항 중 “발급 받았거나”를 “발급받았거나”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지원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을 “지원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5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3. 6. 23.) 및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5. 18.)에서 의결된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075호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민·관” 을 “민관” 으로 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이하 “연합회” 라 한다)란 수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 라 한다) 내 수산업종별 자생단체로 구성된 사회적 협의기구를 말한다.
- 2. “수산인” 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을 말한다.

제3조 중 “법 제22조에 따라 연합회” 를 “연합회” 로, “위한” 을 “위하여” 로, “마련할 수 있다” 를 “수립·이행해야 한다” 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지원사업)” 을 “(비용의 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를 “위하여” 로, “사업비를 보조” 를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연구·조사 수행에 관한 사업” 을 “조사·연구” 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중전의 제5호) 중 “필요한” 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으로 한다.

- 1. 연합회 운영 및 활동
- 3. 회원의 교육 및 수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 4. 수산인에 대한 경영지도 및 상담
- 5. 국내외 교류 및 협력(강원자치도 내 해양수산 관련 단체 간 교류 및 협력을 포함한다)

제5조제1항 중 “지원 사무에 대하여” 를 “보조사업 수행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결과 위법한 사항이 있을때” 로 한다.

- ② 도지사는 연합회로 하여금 보조사업의 수행을 보고하게 해야 한다.
- ③ 도지사는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3. 6. 23.) 및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5. 18.)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076호

강원특별자치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리 사항을 정함” 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 “높이고” 를 “높이고,” 로, “이바지하는 것” 을 “이바지함” 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제8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을 “제8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어장 중 어촌계가 운영하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산업법」 제38조제1항” 을 “「수산업법」 제37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 으로 한다.

제3조 중 “발굴·추진하여야” 를 “발굴·추진해야” 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종합계획의 수립)” 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립하여야” 를 “수립·시행해야” 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사업)” 을 “(지원 및 관리 사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관한 사항” 을 “관한 사업”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사항” 을 “사업” 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재정지원 등)” 을 “(비용의 지원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을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 재정적” 을 “따른” 으로, “5월 말” 을 “5월 31일” 로, “제출하여야” 를 “제출해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위원회의 설치)” 를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를 “관리에 관한 주요” 로,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을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할”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부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변경
- 2. 제5조에 따른 지원 및 관리사업
- 3. 제6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

4. 그 밖에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를 “(위원회의 구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업무관  
련” 을 “업무 관련” 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인정하는” 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원의 임기) ① 임명된 위원 임기는 업무 관련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된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 제목 “(위원회의 운영)” 을 “(위원회의 회의)”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  
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3항) 중  
“회의” 를 “위원회의 회의”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4항) 중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와” 를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로, “제출 및” 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9조의3(운영세칙) 제9조부터 제9조의2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중 “자에게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게” 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3. 6. 23.) 및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5. 18.)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077호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3. 6. 23.) 및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5. 18.)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078호

강원특별자치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연직”을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으로, “수출 지원”을 “수출지원”으로, “과장”을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④ 도지사는 필요시 협의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회의 종료 후에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3. 6. 23.) 및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5. 18.)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079호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위원장이” 를 “도지사가” 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3. 6. 23.) 및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5. 18.)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080호

강원특별자치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3. 6. 23.) 및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5. 18.)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081호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의4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도심리지원단”이라 한다)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 재난심리, 정신건강, 재해구호기금 담당 부서 및 소방본부 등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재난심리지원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강원권트라우마센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등을 말한다)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임직원
  4.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장 및 광역 정신건강센터 센터장
  5. 재난심리지원 및 재해구호와 관련 있는 학회나 협회(상담학회, 재해구호협회 등) 임직원
  6. 재난심리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도심리지원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한 사람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는 당연직 단원으로 하며,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는 위촉직 단원으로 한다.
- ③ 제1항의 위촉직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단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 ④ 신규로 위촉된 단원은 회의에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단원 임기 등) ①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심리지원단의 위촉직 단원 및 당연직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
3. 그 밖에 단원이 업무수행에 공정성을 현저히 떨어뜨렸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회의에 대한 모든 직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대표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개최) ① 도심리지원단의 심리지원을 위한 회의는 단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단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단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임명된 단원이 회의에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대신하여 바로 아래 하급자를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며 의결권을 가진다.

제6조(회의 운영) ① 회의는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의4제1항 각 호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심의 안건도 같은 방법으로 심의·의결한다.

-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단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3. 긴급한 안건으로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
- 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심리지원단의 회의는 단원이 화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되는 원격회의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7조(안건 검토 및 의견 청취) ① 단장은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 전에 전문기관 또는 학회 등에 안건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회의 간사) 간사는 심리회복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고, 단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 1. 심의안의 정리 및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 2.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 3. 그 밖에 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제9조(수당 등의 지급) ① 회의 등에 출석한 단원 및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단장은 미리 안건의 자문을 구한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조례의 준용) 도심리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이외에 도심리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도심리지원단 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심리회복지원단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예 [ ]	아니오 [ ]
1	도심리지원단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도심리지원단의 심의·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3	도심리지원단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허가·면허·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	아니오 [ ]
4	도심리지원단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용역·계약 또는 연구·논문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5	도심리지원단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6	도심리지원단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7	도심리지원단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심리지원단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직무윤리 서약서

직 위 :

성 명 : ○ ○ ○

상기 본인은 심리지원단 단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단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1. 도심리지원단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2. 도심리지원단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3. 도심리지원단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4. 도심리지원단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 하는 행위 금지
- 5. 도심리지원단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 할 경우 회피
- 6. 도심리지원단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 7. 도심리지원단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 8. 그 밖에 도심리지원단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 ○ ○ (서명)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3. 6. 23.) 및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6. 26.)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082호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강원특별자치도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5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포상) 도지사는 적극행정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시·군, 그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3. 6. 23.) 및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6. 26.)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083호

강원특별자치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출신 전직대통령의 위업을 선양하기 위하여 기념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전직대통령”이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전직대통령 중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출생 또는 성장하여 대통령의 위업을 이룩한 사람을 말한다.
- 2. “기념사업회”란 전직대통령의 위업을 선양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기념사업의 시행)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직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하여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추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기념사업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전직대통령의 위업 발굴 및 전승에 관한 사업
- 2. 전직대통령에 대한 추모사업
- 3. 전직대통령 관련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 4. 그 밖에 전직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이 조례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전직대통령이 법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강원도 출신은 강원특별자치도 출신으로 본다.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3. 6. 23.) 및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6. 26.)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084호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해야 한다.

② 선서의 절차와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2.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 확립)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과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 근무자는 합부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④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제9조(공무원증의 발급 등) 공무원증의 발급, 휴대 및 패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근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나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도지사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해야 한다.

제12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도지사는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 16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 여행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③ 연가는 오전이나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도지사는 공무원이 연가신청 시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한다.

제14조(특별휴가) ① 도지사는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 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④ 도지사는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⑤ 도지사는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우수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자기계발을 위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⑥ 공무원은 자녀 입영일 및 훈련소 퇴소식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각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재해·재난대응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⑧ 도지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서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 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1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6조(공무 외의 국외 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서문(제2조제1항 관련)

선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2]

선서의 절차와 방법(제2조제2항 관련)

1. 선서의 시기와 장소

-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도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나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3]

공 직 자 의 행 동 룰(제5조 관련)

대 민 관 계	대 내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li> <li>○ 항상 웃으면서 차별없이 대한다.</li> <li>○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li> <li>○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하게 한다.</li> <li>○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li> <li>○ 민원은 신속 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li> <li>○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li> <li>○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li> <li>○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li> <li>○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을 엄수한다.</li> <li>○ 어려운 동료들을 돕는다.</li> <li>○ 근검 절약한다.</li> <li>○ 남에게 겸손한다.</li> <li>○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li> <li>○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li> <li>○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li> <li>○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li> <li>○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li> <li>○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li> </ul>

[별표 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2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확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3호봉 미만으로 인정된 경우 : 1일 가산
- 유사경력이 3호봉 이상으로 인정된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5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갑	본인 및 배우자	1
출산	배우자	1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입양	본인	20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3. 6. 23.) 및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6. 26.)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085호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를 “적정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로, “높임으로써” 를 “높여” 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공사·공단 및 「강원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을 “공사·공단 및 「강원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책무)” 를 “(도지사의 책무)”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하여야 하고” 를 “해야 하고” 로, “노력하여야” 를 “노력해야” 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년 다음” 을 “다음” 으로,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공공기관에 권고하여야” 를 “보수기준(이하 “보수기준” 이라 한다)을 매년 정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권고해야”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장 및 임원” 을 “임원” 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 을 “「최저임금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임원의 보수: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 을 “가목 외 임원: 법 제10조제1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최저임금법」에” 를 “법에” 로, “고려하여야” 를 “고려해야” 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기준 권고 내용” 을 “권고한 보수기준” 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를 “점검해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하여야” 를 “제출해야” 로 한다.

제6조 중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기준의 권고 내용대로” 를 “권고한 보수기준을”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3. 6. 23.) 및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6. 26.)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086호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공정책”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사업계획 및 자치법규(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개정을 말한다.
- 2. “공공갈등”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 3. “공공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4. “공공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갈등의 요인을 예측·조사·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정책 등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또는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갈등영향분석) ① 도지사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 및 변경 시 도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도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공갈등영향분석을 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공공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말한다)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공공정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공공갈등 유발 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계획

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도지사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추진

2. 공공갈등관리 대상사업의 지정 및 조정

3. 제5조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 결과

4. 공공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5. 제8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도지사는 소속 직원 또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심의결과의 반영)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추진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공공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① 도지사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 호선한다.

④ 위원은 강원자치도, 시·군 소속 공무원과 당사자(해당 사안의 공공정책 업무 소관부서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전문가로 한다.

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명 또는 여러 명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의 임기는 협의 절차가 완료되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⑧ 그 밖에 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협의결과문)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가 성실하게 이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민간전문가 등의 활용) 도지사는 효율적인 공공갈등관리를 위하여 공공갈등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위촉하거

- 나 연구기관, 대학 등 공공갈등관리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1조(공공갈등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도지사는 공공갈등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12조(공공갈등관리 실태의 점검) 도지사는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 제13조(시·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공갈등 예방·해결 및 관련 교육 등 효율적인 공공갈등 관리를 위하여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유지) 위원회 및 협의회 의원 등 공공갈등관리 모든 관계자는 직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15조(공공갈등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도지사는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6조(운영지원 등) 도지사는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제10조에 따른 전문가, 전문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3. 6. 23.) 및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6. 26.)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087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 및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은 물론 다수인민원 등의 신속·공정한 조정 또는 해결을 통해 주민의 기본적 권익과 신뢰를 보호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 2. “다수인민원”이란 다섯 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고충민원을 말한다.
- 3. “신청인”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4. “사무국”이란 위원회의 고충민원 조사·권고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 5.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2장 위원회 기능·구성 등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고충민원, 다수인민원 등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권고,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 처리
- 2. 주민이 신청한 민원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처리

3.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 이라 한다)가 고충민원, 다수인민원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와 처리

-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또는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평가
- 5. 민원사항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 6.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교육·홍보
- 7.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 구제기관·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 8.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지원
-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4조(관할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 1. 강원자치도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
- 2. 강원자치도에서 시·군에 위임한 사무의 경우 시·군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
- 3. 강원자치도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4. 강원자치도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또는 출연기관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나,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고충민원 등의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⑤ 도지사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 「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제7조(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8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

다.

- 1. 제6조·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1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결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복합된 내용의 경우에는 사안별로 달리할 수 있다.

- 1. 시정권고: 피신청인(대상기관)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변경·개선하거나 이행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
- 2. 의견표명: 피신청인(대상기관)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제도개선 권고: 법령 이외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도개선 의견표명: 법령 이외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5. 합의 권고: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
- 6. 조정: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7. 기각: 신청인의 요구가 타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 8. 각하: 고충민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9. 이첩: 다른 기관 및 관련 부서에 이첩하는 경우
- 10. 심의안내: 다른 절차 및 제도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는 경우

제13조(전문가 자문)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사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위원회는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도지사과 도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과 도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사무국 구성 및 운영

제16조(사무국)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위원회 위원이 겸직할 수 없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사무를 관장한다.

③ 도지사는 관련 근무 경력 및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사무국장을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고충민원의 전문적 조사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3항 및 4항에 따른 근무자에 대하여 인사·처우 등에 우대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지원) 도지사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종전의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3. 6. 23.) 및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6. 26.)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088호

강원특별자치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등으로 이송되는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응급차량”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이동수단으로, 같은 법 제44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46조의 기준을 갖춘 구급차를 말한다.
- 2. “응급환자”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3. “종합병원등”이란 「의료법」 제3조의3 및 제3조의4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을 말한다.
- 4. “의료기관”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대상은 이송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강원자치도 내에 소재한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등으로 이송되는 도민으로 한다.

제4조(재정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금 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원금의 신청 및 방법과 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해야 한다.

제7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3. 6. 23.) 및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6. 26.)에서 의결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089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응원 활동 등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서포터즈의 구성) 도지사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응원 활동 등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서포터즈를 공개 모집한다.

제5조(서포터즈의 활동범위 등) ① 서포터즈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참가국 선수들의 응원에 관한 활동
- 2. 그 밖에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에 필요한 활동

② 서포터즈의 활동기간은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로 한다.

제6조(서포터즈의 대우) 서포터즈는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및 식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포상)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8조(보험 가입)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활동 중에 서포터즈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9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4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권한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서포터즈의 구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군,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3. 6. 23.) 및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6. 26.)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090호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해당기관” 을 “해당 기관” 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 를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 로 한다.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의2 및 제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편의와 맞춤형관광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문화관광해설사로 양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여 배치하려는 강원자치도 내 시·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에 필요한 대상 선정 및 방법과 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의2(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자질향상과 해설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선진 문화관광지 견학 등 매년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사무위탁)” 을 “(사무의 위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문기관”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회(2023. 6. 23.) 및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6. 26.)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091호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도지사” 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 로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3. 6. 23.) 및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6. 26.)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092호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과 각종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림부산물”이란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산림청고시) 제2조에 해당하는 산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 산림부산물 수집·운반
- 2. 산림부산물 활용제품 생산·판매
- 3. 산림부산물 활용 산업 연구·개발
- 4. 그 밖에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산림부산물 활용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3. 6. 23.) 및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6. 26.)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093호

강원특별자치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축산법」 제3조에 따라 조사료” 를 “조사료” 로 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조사료 전문단지”란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축산·경종농가” 를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서” 를 “자 중” 으로, “해당하여야” 를 “해당하는 자로”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농업인, 농업법인,” 을 “농업경영체와” 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중전의 제3호) 중 “조사료 생산·이용자료” 를 “제6조에 따른” 으로 한다.

-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 3.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지정된 조사료 전문단지를 운영하는 자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 조사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로, “지원할” 을 “할”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구입 비용” 을 “구입”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조·운송비” 를 “등 제조·운송”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구입비용” 을 “구입”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포장비용” 을 “포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조성비용” 을 “조성 및 관리” 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신축 및 증축·개보수” 를 “조성 및 관리” 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지원” 을 “지급” 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산지생태 축산목장” 을 “방목생태축산농장” 으로, “관리비용” 을 “관리” 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9. 초지 조성 및 관리

- 11. 그 밖에 도지사가 조사료 수급 안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3. 6. 23.) 및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6. 26.)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094호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후단 중 “제3조제1호의” 를 “제3조제1호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전단 중 ““준비단계”란” 을 ““준비단계”란” 으로 하며, 제3호 중 “실무 반” 을 “실무반” 으로 하고, ““대책본부”” 를 ““대책본부”” 로 하고, ““본부장”” 을 ““본부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호 전단 중 ““대비”” 를 ““대비”” 로 하며, 제8호 전단 중 ““대응”” 을 ““대응”” 으로 하고, 제9호 전단 중 ““복구”” 를 ““복구”” 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강원도” 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로 하며, 같은 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난관리”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를 말한다.

15.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제3조제1항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도지사는 비상단계 시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의” 로 하고, 제4항(중전의 제3항) 후단의 “지도, 조언, 지원” 을 “지도·조언·지원” 으로 하며, 제5항(중전의 제4항)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 으로 한다.

제6조에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를 “조정하기 위하여” 로 하고, 제2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심의 등” 을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심의 등에 관한 사항” 으로 한다.

제7조제1항에서 “안전관리위원회” 를 “안전관리위원회의”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법 제3조제5호 나목에” 를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로 하며, 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3호에서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을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로 하며, 같은 조 제8호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에서 제1항의 “영 제73조의3” 을 “영 제73조의5” 로 하고, 제1항제5호를 제1항제6호로 하며, 제1항제5호는 “안전관리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으로 하며, 제6항의 “제8조 및 9조” 를 “제8조 및 제9조” 로 한다.

제16조 제1항의 “안전총괄과” 를 “안전정책 담당부서” 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제1호 후단 중 “사람(이하 “전문가” 라 한다)” 을 “사람” 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점검” 을 “점검에 관한 사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에서 “의견수렴” 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으로 한다.

제19조제9호에서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22조 후단 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이하 “도 대책본부” 라 한다.)” 를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 라 한다)를 둔다.” 로 한다.

제24조제1항을 “도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별표 1과 같다” 를 “도 대책본부의 구성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도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제7호 중 “과건 받은” 을 “과건받은” 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전단 중 “비상단계 시 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을 “비상단계 시 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경우” 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별표 3과 같음” 을 “별표 3”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에서 “별표 4와 같음” 을 “별표 4” 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별표 5와 같음” 을 “별표 5”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별표 6과 같음” 을 “별표 6”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에서 “별표 7과 같음” 을 “별표 7” 로 한다.

제29조제1항 전단 중 “제24조제7호의” 를 “제24조제7호에 따른” 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제3조제1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서” 를 “사회재난으로서”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대책본부회의는” 을 “대책본부의 회의는” 으로 하며, 위원의 “과반 수 이상의 참석으로” 를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를 출석위원 “과반수의” 로 한다.

제34조제3항에서 “수행하여” 를 “수행하며,”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현황” 을 “현황 확인”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습상황” 을 “수습상황 확인” 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본문 중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 를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로 한다.

제41조의 “별표8과 같다.” 는 “별표 8과 같이 한다.” 로 한다.

제42조의2 후단 중 “강원도재난방송협의회(이하 “재난방송협의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를 “강원특별자치도재난방송협의회(이하 “재난방송협의회” 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로 한다.

제48조제2항 “강원도” 를 “강원자치도” 로 한다.

제5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 보고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다.

제52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를 “제1항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를 “각 호에 따른” 으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제1항의” 를 “제1항에 따른” 으로 하고, “안전관련” 을 “안전 관련” 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제3조의9호” 를 “제3조제9호” 로 한다.

제69조제3호 중 “선박사고 포함” 을 “선박사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단체” 를 “단체의 활동” 으로 한다.

제71조의 제목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취약계층”으로, “수립하여”를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로 한다.

제71조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유자 시설에 사용할 피난기구 설치
  2.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시설의 소방·가스·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과 생활안전환경 개선
  3.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4.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마스크 등의 용품
  5. 그 밖에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② 도지사는 재난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취약계층의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한 대피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2조 전단 중 “재난”을 “이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재난”으로 하고, 후단의 “이 경우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를 삭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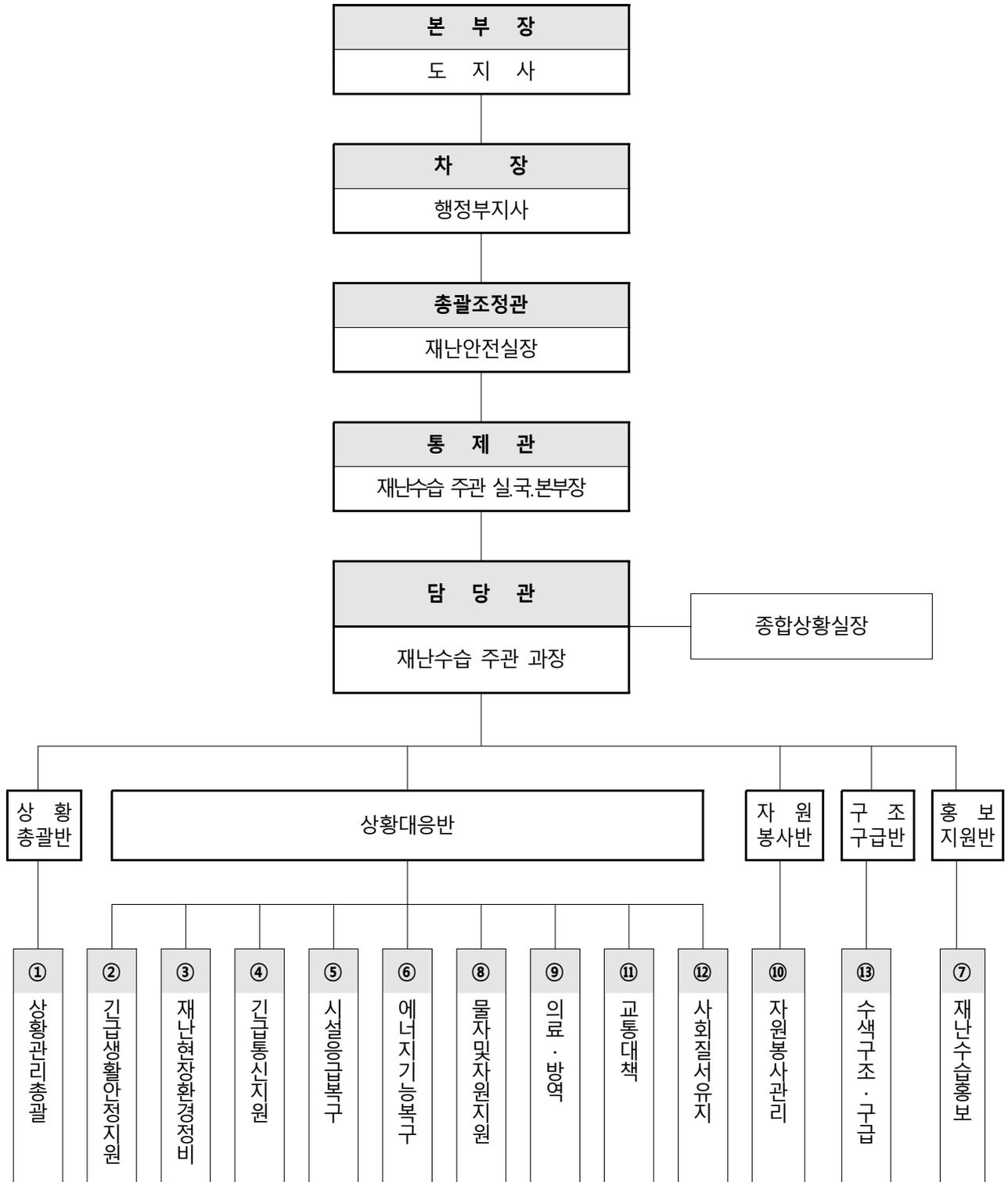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 별표7, 별표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법률 제18994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조직개편이 포함된 최초의 인사발령을 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별표1]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체계도(제24조제1항 관련)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별표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24조제3항 관련)

분야	위기유형	주관기관	담당부서	비고
자연재난	풍수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지진	행정안전부		
	대형화산폭발	행정안전부		
	적조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국	
	조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국	
	조류대발생(녹조)	환경부	산림환경국	
	산사태	산림청	산림환경국	
사회재난	산불	산림청	산림환경국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환경부		
	대규모수질오염	환경부		
	대규모해양오염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국	
	댐붕괴	국토교통부/환경부	재난안전실/ 건설교통국	
	다중밀집시설대형화재	소방청	소방본부	
	인접국가방사능누출	원자력안전위원회	재난안전실	
	해양선박사고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국	
	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	고용노동부	경 제 국	
	다중밀집건축물붕괴 대형사고	국토교통부	건설교통국	
	가축질병	농림축산식품부	농 정 국	
	감염병	질병관리청	복 지 국	
	정보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 정 국	
	금융전산	금융위원회		
	원전안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재난안전실	
	전력	산업통상자원부	경 제 국	
	원유수급	산업통상자원부		
	보건의료	보건복지부	복 지 국	
	식용수	환경부	산림환경국	
	육상화물운송	국토교통부	건설교통국	

분야	위기유형	주관기관	담당부서	비고
	GPS전파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 정 국	
	해양유도선사고	해양경찰청	해양수산국	
	공연장안전사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국	
	초미세먼지	환경부	산림환경국	
주요상황 매뉴얼	정부중요시설(청사)	행정안전부	행 정 국	
	도로터널	국토교통부	건설교통국	
	가스	산업통상자원부	경 제 국	
	내수면유도선사고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황사	환경부	산림환경국	
	위험물 사고	소방청	소방본부	
	저수지 사고	농림축산식품부	농 정 국	
	문화재시설 사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국	

※ 비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별표3]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27조제1항제1호 관련)

- 1. 가동기준 : 평상시
- 2. 실무반 편성

담 당 관	종합상황실장
실 무 반	종합상황실 소속 공무원과 필요시 각 부서 파견 인력

※ 비고 : 1. 준비단계는 종합상황실에서 도 대책본부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종합상황실장은 필요한 경우, 실과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별표4]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27조제1항제2호 관련)

□ 비상 1단계

- 1. 가동기준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 가. 호우·대설 : 호우·대설주의보(3개 시·군 이상 발효 시)  
호우·대설경보(1개 시·군 이상 발효 시)
  - 나. 태풍 : 예비특보 발효 시
- 2. 실무반 편성: 7+ $\alpha$ 명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국장)	○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과장)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도 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실무 총괄	
근무인원	총 7+ $\alpha$ 명	
상황관리 총괄반	반 장(1)	담 당 관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6+ $\alpha$ )	- 재난상황관리반(6) · 종합상황실(2) - 상황근무자 · 재난수습 주관부서(3), 재난 총괄부서(1) * 기상청, 경찰청,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자체 상황근무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alpha$ )	긴급생활안정지원	-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12개 협업기능 관련 부서로 구성( $\alpha$ )
	재난현장환경정비	
	긴급통신지원	
	시설응급복구	
	에너지기능복구	
	재난수습홍보	
	물자관리및자원지원	
	의료방역	
	자원봉사관리	
	교통대책	
	사회질서유지	
	수색구조구급	

다. 근무방법

- 1. 상황관리총괄반 : 비상1단계부터 재난 수습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 2. 협업기능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도 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비상 2단계

1. 가동기준

- 가. 호우·대설 : 호우·대설경보(3개 시·군 이상 발효 시), 국지적 피해 예상(발생) 시
- 나. 태풍 : 태풍주의보 및 경보 발령시, 국지적 피해 예상(발생) 시

2. 실무반 편성:  $11 + \alpha + \beta$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국장)	○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과장)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도 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실무 총괄	
근무인원	총 $11 + \alpha + \beta$ 명	
상황관리 총괄반 ( $11 + \alpha$ 명)	반 장(1)	담 당 관
	재난정보·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 $3 + \alph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상황관리반(<math>3 + \alpha</math>)</li> <li>· 종합상황실(2) - 상황근무자</li> <li>· 재난수습 주관부서(1)</li> <li>* 강원지방기상청, 강원지방경찰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도내 사무소 자체근무</li> <li>- 관계기관(<math>\alpha</math>명)</li> <li>· 여름철: <math>\alpha</math>명(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li> <li>· 겨울철: <math>\alpha</math>명(한국도로공사)</li> </ul>
	상황보고서 작성 ( $3 + \alpha$ )	- 재난수습 주관부서(2), 재난 총괄부서(1)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 $3 + \alpha$ )	- 재난수습 주관부서(2), 재난 총괄부서(1)
	행정지원반 ( $1 + \alpha$ )	- 행정국 직원( $1 + \alpha$ )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alpha$ )	-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12개 협업기능 관련 부서로 구성( $\alpha$ )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beta$ )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국가스공사 강원지사, 한국전력 강원본부 등	

다. 근무방법

-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 재난수습 주관 및 총괄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2) 행정지원반 :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도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비상 3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 광역적인 호우·대설경보 발령 시 또는 대규모피해 예상(발생) 시

나. 태풍 : 광역적인 태풍경보 발령 시 또는 대규모피해 예상(발생) 시

2. 실무반 편성:  $20 + \alpha + \beta$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국장)	○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과장)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도 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실무 총괄	
근무인원	총 $20 + \alpha + \beta$ 명	
상황관리 총괄반 ( $20 + \alpha$ 명)	반 장(1)	담 당 관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 $7 + \alpha$ )	- 재난상황관리반( $7 + \alpha$ ) · 종합상황실(2) - 상황근무자 · 재난수습 주관부서(2) · 강원지방기상청(1), 강원지방경찰청(1), 국립공원 관리공단(1) - 관계기관( $\alpha$ 명) · 여름철 : $\alpha$ 명(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 겨울철 : $\alpha$ 명(한국도로공사)
	상황보고서 작성 ( $4 + \alpha$ )	- 재난수습 주관부서(3), 재난 총괄부서(1)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 $7 + \alpha$ )	- 재난수습 주관부서(5), 재난 총괄부서(2)
	행정지원반 ( $1 + \alpha$ )	- 행정국 직원( $1 + \alpha$ )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alpha$ )	-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12개 협업기능 관련 부서로 구성( $\alpha$ )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beta$ )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국가스공사 강원지사, 한국전력 강원본부 등	

다.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 재난수습 주관 및 총괄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행정지원반 :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  
능 및 실무반(도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별표5]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제27조제1항제2호 관련)

1. 가동기준 :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통 계 관 (재난수습 주관 실·국·본부장)	○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과장)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도 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		
근무인원	총 $10 + \alpha + \beta$ 명	
상황관리 총괄반 ( $10 + \alpha$ 명)	반 장(1)	담 당 관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 $5 + \alpha$ )	- 재난상황관리반( $5 + \alpha$ ) · 종합상황실(2) - 상황근무자 · 사회재난 유형별 주관부서(3)
	상황보고서 작성 ( $3 + \alpha$ )	- 사회재난 유형별 주관부서(2) - 재난 총괄부서(1)
	행정지원반 ( $1 + \alpha$ )	- 행정국 직원( $1 + \alpha$ )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alpha$ )	- 사회재난 유형별 주관부서가 12개 협업기능 관련 부서로 구성( $\alpha$ )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beta$ )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국가스공사 강원지사, 한국전력 강원본부 등	

※ 비고 : 재난유형 및 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도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별표6]

자연재난 실무반 기능과 역할 (제27조제2항제1호 관련)

구 분		담 당 업 무	비고
통제관		본부장·차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당관		본부장·차장·통제관 보좌, 실무업무 총괄	
① 상 황 관 리 총 괄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1.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 전파 2.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3.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4.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5. TV 방송 모니터링 6. 댐·저수지 수위·방류량, 주요도로 소통·통제, 국립공원 입산통제 관련 정보수집분석·전파 7. 상황전파시스템 및 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파악 8. 대책본부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재난수습 주관 및 총괄부서
	상황보고서 작성	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각종 회의 자료 및 보고서 작성 3. 피해정보의 수집·보고·분석 및 관련기관 제공 4.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관리 5. 재난 수습상황 관리 6.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7.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1.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등 준비운영 2. 현장상황 관리관 및 재난현장 대응인력 파견·관리 3.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4.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및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5.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6. 재난상황판단 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7. 재난발생지역의 예·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지원 8. 본부장 등 재난현장 방문 일정수립 9.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10.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11.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12. 댐·저수지 방류량, 펌프장 가동 등 홍수정보 분석·대응 13. 중앙 및 강원도대책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행정지원	1.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행 정 국
② 긴급생활 안정지원		1.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2.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3.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4.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5.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6.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업무 및 상황 관리 7.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홍보 및 지급 독려	재 난 안 전 실 · 복 지 국
③ 재난현장 환경정비		1.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	산 림

구 분	담 당 업 무	비고
	1. 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처리실태 파악·관리 2.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 인력·장비·자재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4. 시·군 복구 현황 파악	환경 국 · 해 양 수 산 국
④ 긴급 통신지원	1.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 3.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4. 시·군 복구현황 파악	행정 국
⑤ 시설 응급복구	1.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2.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 긴급복구 상황 파악 3.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 긴급복구용 인력·장비·자재 지원 4. 시·군 복구 현황 파악	재난복구 주관부서
⑥ 에너지 기능복구	1.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2.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 상황 파악 3.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시·군 복구현황 파악	산 업 국
⑦ 재난수습 홍보	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라디오·CATV·생방송 및 자막방송, KBS·재난방송 등) 3. 재난관련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4. 재난현장 취재 지원 5. 언론사 등이 요청하는 재난관련 각종 정보 제공 총괄	대변인실
⑧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1. 국가·지자체·관계기관·단체, 민간 자원가능 물자 및 자원 사전 파악 2. 재난발생 지역 응급복구 장비·인력·자재 투입 현황 파악 3. 응급복구용 장비·인력·자재 부족 시 긴급 지원 요청	재 난 안 전 실
⑨ 의료·방역	1.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6.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복 지 국
⑩ 자원봉사 관리	1.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2. 응급복구 등 대민 지원 활동 추진 3. 피해시설 안전점검 및 무상 수리 지원 요청 등	행 정 국
⑪ 교통 대책	1. 교통통제 상황 모니터링 2. 교통 두절구간 실태 파악 보고 3. 교통 두절구간 통행 재개 및 소통 대책 지원	건 설 교 통 국
⑫ 사회질서 유지	1. 재난발생(우려) 지역 순찰 강화, 출입 통제 2. 재난발생(우려) 지역 주민 대피 지원 3. 재난발생(우려) 지역 범죄 예방 및 치안 유지	재 난 안 전 실 · (협)

구 분	담 당 업 무	비고
		조) 강 원 도 경 찰 청
⑬ 수색,구조구급	1. 재난지역 수색, 구조 지원 2. 재난지역 구급 지원 3.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지원 5. 수해지역 응급복구 지원	소방본부
관계기관	자연재난관리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업무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별표7]

사회재난 실무반 기능과 역할 (제27조제2항제2호 관련)

구 분	주요 기능 및 업무와 역할	
	세부 기능	주요 업무와 역할
상황총괄반	상황관리팀 ① 재난상황관리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 및 분석·전파, 예보·경보 발령</li> <li>○ 상황판단회의 주관 ○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li> <li>○ 재난위험정보 수집, 분석, 판단</li> <li>○ 관계부처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상황 관리</li> <li>○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관리</li> <li>○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TV 방송 모니터링</li> <li>○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본부장 등 현장방문 일정수립</li> <li>○ 본부장·차장 특별지시사항 처리</li> <li>○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및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li> <li>○ 대책본부 통신·전산장비 운영 및 지원</li> </ul>
	상황보고서 작성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li> <li>○ 각종 회의자료 및 보고서 작성</li> </ul>
	행정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근무자 복무 단속</li> </ul>
협업 기능	② 긴급 생활안정 지원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li> <li>- 긴급생활안정 및 사유재산 피해 지원대책 검토</li> <li>○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li> <li>○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li> </ul>
	③ 재난현장 환경 정비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현장 환경오염 피해상황 파악보고</li> <li>○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li> </ul>
	④ 긴급통신 지원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보고</li> <li>○ 통신 두절지역 통신인프라 복구</li> <li>○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li> </ul>
	⑤ 피해시설 응급복구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시설 현황파악 및 응급복구 지원</li> </ul>
	⑥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생활 불편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li> <li>○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li> </ul>
	⑦ 재난수습 홍보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 대응</li> <li>○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li> <li>○ 보도사항, 신문 스크랩 분석 보고 및 자료 수집·전파</li> <li>○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li> </ul>
	⑧ 재난관리자원 지원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관리자원 투입 실태 및 소요자원 파악</li> <li>○ 장비·인력 등 재난관리자원 응원 및 배치 등 지원</li> </ul>
	⑨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염병 및 전염병 등 방역대책 지원</li> <li>○ 방역·제독 및 기동방역·제독반 편성·운영(이동초소 등)</li> <li>○ 재난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li> </ul>

구 분	주요 기능 및 업무와 역할	
	세부 기능	주요 업무와 역할
	⑩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지역 자원봉사 인력 수요 파악 및 지원</li> <li>○ 재난지역 긴급대응인력 투입   ○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등</li> </ul>
	⑪ 교통대책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 두절구간 실태 파악 보고</li> <li>○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li> </ul>
	⑫ 사회질서 유지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현장 출입통제,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li> </ul>
	⑬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명구조 상황 총괄·조정 및 지휘</li> <li>○ 고립자의 구조, 사상자의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li> <li>○ 사상자 응급처리를 위한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도·확인</li> <li>○ 군부대와 구조·구급활동 협조 및 지원</li> <li>○ 실종자 수색 및 처리업무 등</li> </ul>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별표8]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제41조 관련)

일련 번호	사무내용	업무내용	담당관	통제관	총괄 조정관	차장	본부장
1	복무관리	비상단계 근무명령	○				
		근무자 출장명령·복명	○				
		현장 상황 관리관 파견			○		
		중앙사고수습지원 파견			○		
		관계기관 파견요구			○		
2	상황관리	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				
		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				
		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		
		재난 예보·경보 발령			○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3	대책본부 운영상황	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				
		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
4	피해조사 및 복구	피해액 확정				○	
		복구계획 수립					○
		복구사업 지도 감독			○		
5	대책본부 회의	회의소집			○		
		회의결과 통보			○		
6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등	재난사태 선포여부 판단				○	
		재난사태 선포 건의					○
		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
7	기 타	지시 및 기존방침이나 법령에 규정된 사안에 따라 조치되는 사항			○		

**규 칙**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6. 21.)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규칙 제3284호

**강원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별표 1” 을 “별표” 로 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시행규칙 [별표]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제2조 관련)

공인의 명칭	관수자
도지사직인 및 계인	문서업무 팀장
민원실 전용 도지사직인	민원업무 팀장
지역본부 또는 출장소 전용 도지사직인	문서업무 팀장
소속기관의 장 직인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보조기관)	당해 기관의 서무업무 팀장 합의제행정기관은 소관업무 팀장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당해 기관의 회계업무 팀장
계인	당해 기관의 서무업무 팀장

**입 법 예 고**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3-61호

「강원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개정(2023.06.1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임용시험 관련 각종 기준 등을 정비하고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2023.06.13.)으로 변경된 내용을 강원특별자치도인사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응시수수료 반환요건 확대 (안 제6조의2)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응시수수료 반환 기간 및 반환금액을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요건 추가
    - \* (당초) 응시원서마감 후 3일이내 응시 철회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반환
    - \* (추가) 시험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반환 가능
-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 시험위원 위촉 제한 (안 제12조)
  -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해야함을 추가 규정
    - \* (당초) 응시자와의 관계(친인척, 사제지간 등)시 제척사항만을 규정
-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임용점검위원회」 신설 (안 제14조의2)
  - 임기제, 전문경력관 등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시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임용시험 전 과정에 대한 채용절차 점검을 의무화(신설)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7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24266),

강원특별자치도청 총무과

- 전 화 : 033-249-2218
- F A X : 033-249-4022
- E-mail : htiger80@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참고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인사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제1항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를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 를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 로 한다.

제14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을 신설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33531호)」 시행 이후 공고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부터 적용한다.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생략)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 전부나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p> <p>제12조(시험위원)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p>	<p>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생략)                      ② -----는 영 제64조제2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p> <p>제12조(시험위원)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                      -----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                      -----</p>
<p>제14조의2 (신설)</p>	<p>제14조의2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p>

-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견제출

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수정사유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주소 :

연락처 :

고 시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240호

부사원천 하천점용허가(새마을교)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7월 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하천의 명칭		부사원천(지방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홍천군수(건설과장)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북방면 능평리 부사원천 새마을교 수해복구공사			
	개 요	시 설 명		재 원	
		합 계		영구	일시
새마을교		L=26.34m, B=5m		1,065	297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 214번지 (하천기본계획 측점 No.26+93)			
	면 적	영구 : 1,065㎡ 일시 : 297㎡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영구 : 시설물 존치시까지 일시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6개월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242호

양덕원천 하천점용허가(절골보(양덕원6보))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7월 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하천의 명칭		양덕원원천(지방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홍천군수(건설과장)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남면 명동리 절골보(양덕원6보) 개보수공사		
	개 요	시설명		점용면적(m <sup>2</sup> )
		재 원		영구
		합 계		영구
		절골보(양덕원6보)	L=113m, B=22m	2,826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홍천군 남면 명동리 245-5번지 일원 (하천기본계획 측점 No.91+43)		
	면 적	영구 : 2,826m <sup>2</sup>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영구 : 시설물 존치시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243호

인북천 하천점용허가(물결보도교)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7월 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하천의 명칭		인북천(지방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인제군수(도시개발과장)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 8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인북천 물결보도교 건립사업			
	개 요	시설명	재 원	점용면적(m <sup>2</sup> )	
		합 계		영구	일시
		물결보도교	L=181.35m, B=3.9m	3,554	4,072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1094-12번지 외 4필지 (하천기본계획 축점 No.27+270~27+274)			
	면 적	영구 : 3,554m <sup>2</sup> 일시 : 4,072m <sup>2</sup>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영구 : 시설물 존치시까지 일시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4개월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244호

기린지구 받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인제군 기린지구 받기반정비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수립 등)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 변경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7. 7.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사 업 명 : 기린지구 받기반정비사업
2. 사업구역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북리, 서리 일원
3. 사업목적 : 받기반정비를 통한 생산성향상 및 품질개선, 농촌소득증대 도모
4. 수혜면적 : 92.6ha
5. 사 업 량

구 분	용수개발	농로	배수로	기 타
변 경	- 관정(150m <sup>3</sup> /일) 2개소 - 저수조(A=30m <sup>2</sup> ) 1개소 - 급수탑 1개소	콘크리트포장(B=3.0m) 30조 L=4,492m	- 배수로(개거, 현장타설) 13조 L=1,684m - 배수로(개거, 수로관) 24조 L=2,106m - 전석쌓기 7조 L=857m - 배수로 보강 A=771m <sup>2</sup>	전기공사, 물가변동(E/S), 폐기물처리, 품질시험 등
당 초	- 관정(150m <sup>3</sup> /일) 2개소 - 저수조(A=30m <sup>2</sup> ) 1개소 - 급수탑 1개소	콘크리트포장(B=3.0m) 30조 L=4,492m	- 배수로(개거, 현장타설) 12조 L=1,666m - 배수로(개거, 수로관) 24조 L=2,106m - 전석쌓기 7조 L=857m	전기공사, 물가변동(E/S), 폐기물처리, 품질시험 등

6. 사 업 비 : 3,187백만원
7. 사업기간 : [당초] 2020. 10. ~ 2023. 6. / [변경] 2020. 10. ~ 2023. 12.
8. 사업시행자 : 인제군수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245호

항만개발사업의 고시

「항만법」 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항만개발사업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속초항 중앙물양장 확장 및 동명물양장 외 2개소 보수공사”에 대하여 항만개발사업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3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강원특별자치도환동해본부장

나.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 14

2. 항만명 : 속초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속초항 중앙물양장 확장 및 동명물양장 외 2개소 보수공사

나. 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동 468-190번지 일원(중앙물양장), 동명동 1-131번지 일원(동명물양장), 383-1번지 일원(관공선부두), 금호동 482-276번지 일원(청교물양장)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가. 공사목적 : 「항만법」 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제1항에 따라속초항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소형선부두(중앙물양장) 확장 및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노후 물양장을 보수함으로써, 항만시설의 안전성과 사용성 향상을 위하여 공사를 추진하고자 함

나. 공사내용 : 중앙물양장 확장 L=50m, 동명물양장 외 2개소 보수 1식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365일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 892백만원(도금액 841, 관금액 51)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246호

주포천(신림지구) 재해예방사업 하천공사 시행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원주시에서 시행하는 주포천(신림지구) 재해예방사업 하천공사에 대하여 「하천법」 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6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하천)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하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하천공사의 명칭: 주포천(신림지구) 재해예방사업 하천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본 과업은 원주시 주포천을 홍수에 안전하면서 살아있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한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하천의 치수·이수·환경기능을 감안한 기술적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적용하여 이용자 및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 있다.
  - 개요: 하천정비 L=2.9km 등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원주시청(건설방재과)
  - 주소: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착공예정일 : 시행계획 고시일
  - 준공예정일 : 2024.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의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편입면적: 154,279㎡ ※ 토지조서 참조 (붙임)
7. 실시설계도서: 원주시청 건설방재과 비치 및 열람가능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 총 사업비 19,353백만원  
(단위 : 백만 원)

구분	총사업비 (백만원)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비고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19,353	7,949	4,250	533	3,935	2,686	
국비							
도비	13,159	5,405	2,890	362	2,676	1,826	
시비	6,194	2,544	1,360	171	1,259	860	

9. 공사예정공정표

구분 공종	요율(%)	추진 계획								비 고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21개월	24개월	
1. 축 제 공	24.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2. 호 안 공	24.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 배 수 공	8.00				2.00	2.00	2.00	2.00		
4. 교 량 공	28.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5. 포 장 공	8.00					2.00	2.00	2.00	2.00	
6. 부 대 공	8.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계	100	7.00	11.00	11.00	13.00	15.00	15.00	15.00	13.00	
		7.00	18.00	29.00	42.00	57.00	72.00	87.00	100.00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이후 원주시에서 유지·관리

11. 폐천부지 등의 발생 예상 면적 : 해당없음

가. 토지조서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1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208-4	전	701	701	강원도	강원도	-	-
2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207-1	답	1,224	1,224	여충섭		-	-
3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977-2	답	32	32	강원도	강원도	-	-
4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208-5	답	139	139	강원도	강원도	-	-
5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977-3	답	21	21	강원도	강원도	-	-
6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93-3	답	1,437	1,437	강원도	강원도	-	-
7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46-2	전	502	502	강원도	강원도	-	-
8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46-1	전	2,073	2,073	강원도	강원도	-	-
9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93-1	답	464	464	강원도	강원도	-	-
10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45-2	답	386	386	강원도	강원도	-	-
11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45-4	답	10	10	강원도	강원도	-	-
12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34-1	답	311	311	진병창	신림리 198	-	-
13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34-2	답	590	590	진병창	신림리 198	-	-
14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45-3	답	536	536	강원도	강원도	-	-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15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44-2	답	473	473	강원도	강원도	-	-
16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36-6	답	420	420	원주시	원주시	-	-
17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36-8	답	458	458	강원도	강원도	-	-
18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43-6	하천	93	93	강원도	강원도	-	-
19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43-7	하천	16	16	변동혁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65 현대타운하우스 에이동 101	-	-
20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981-3	구거	5,949	92	국	건설부	-	-
21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41-1	전	2,046	188	원주시	원주시	-	-
22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35-6	답	174	174	강원도	강원도	-	-
23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35-7	답	566	566	강원도	강원도	-	-
24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40-7	대지	134	134	강원도	강원도	-	-
25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40-5	대지	36	36	강원도	강원도	-	-
26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40-6	전	56	56	강원도	강원도	-	-
27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40-8	전	299	299	강원도	강원도	-	-
28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39	답	2,572	2,572	강원도	강원도	-	-
29	원주시	136-9	답	78	78	강원도	강원도	-	-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신림면 신림리								
30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36-7	답	52	52	강원도 외 4	강원도	-	-
31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39-1	도로	2,979	272	국	건설부	-	-
32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37-3	답	303	303	강원도	강원도	-	-
33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955	구거	2,292	31	국	농수산부	-	-
34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37-2	답	409	409	강원도	강원도	-	-
35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38-1	전	534	534	강원도	강원도	-	-
36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21-1	전	35	35	강원도	강원도	-	-
37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21-3	전	35	35	강원도	강원도	-	-
38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37-1	하천	910	910	강원도	강원도	-	-
39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21-4	전	1,921	32	강원도	강원도	-	-
40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21-2	전	725	725	강원도	강원도	-	-
41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21-5	전	40	40	강원도	강원도	-	-
42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22	하천	1,802	1,802	강원도	강원도	-	-
43	원주시 신림면	122-5	전	68	68	강원도	강원도	-	-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신림리								
44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22-8	전	192	192	강원도	강원도	-	-
45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975-1	도로	139	110	국	건설부	-	-
46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22-2	하천	17	17	강원도	강원도	-	-
47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22-9	전	16	16	강원도	강원도	-	-
48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22-6	전	5	5	강원도	강원도	-	-
49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22-7	전	1	1	강원도	강원도	-	-
50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22-10	전	3	3	강원도	강원도	-	-
51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23-4	전	4	4	강원도	강원도	-	-
52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23-5	전	287	287	강원도	강원도	-	-
53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23-3	하천	448	448	강원도	강원도	-	-
54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23	하천	43	43	강원도	강원도	-	-
55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25-5	도로	73	30	국	건설부	-	-
56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25-1	임야	6,479	2,356	국	채무부	-	-
57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541	하천	131	131	강원도	강원도	-	-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58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541-11	답	59	59	강원도	강원도	-	-
59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541-9	답	315	315	강원도	강원도	-	-
60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541-7	답	4	4	강원도	강원도	-	-
61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541-6	하천	2,177	2,177	강원도	강원도	-	-
62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541-10	대지	15	15	강원도	강원도	-	-
63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956-1	구거	301	240	국	국토해양부	-	-
64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540	도로	3,329	361	국	건설부	-	-
65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539-2	도로	386	373	국	건설부	-	-
66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539-3	도로	28	9	국	건설부	-	-
67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539-4	도로	13	9	국	건설부	-	-
68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956	구거	1,906	5	국	농수산부	-	-
69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539-5	전	136	133	강원도	강원도		
70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539	하천	374	374	강원도	강원도		
71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538-7	전	102	102	강원도	강원도		
72	원주시	538-1	하천	190	190	강원도	강원도		

순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신림면 신림리								
73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538-2	철도	777	177	국	국토교통부		
74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534-2	철도	311	1	국	국토교통부	-	-
75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534-4	대	248	211	국	강원도	-	-
76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948-8	대	202	202	국	강원도	-	-
77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533-7	대	27	27	국	강원도	-	-
78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525-1	도로	773	31	국	원주시	-	-
79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948-11	도로	61	61	국	원주시	-	-
80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948-9	하천	161	161	국	강원도	-	-
81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533-4	대	34	3	국	원주시	-	-
82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533-5	대	15	15	국	원주시	-	-
83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533-8	대	99	99	강원도	강원도	-	-
84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532-4	도로	110	110	국	원주시	-	-
85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532-1	잡	152	152	강원도	강원도	-	-
86	원주시 신림면	531-2	도로	154	154	국	원주시	-	-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신림리								
87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531	대	55	55	국	원주시	-	-
88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519-24	대	35	35	강원도	강원도	-	-
89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8-1	대	127	127	강원도	강원도	-	-
90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8-24	대	9	9	강원도	강원도	-	-
91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8-25	대	147	147	강원도	강원도	-	-
92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2-1	도로	3	3	국	건설부	-	-
93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8-14	도로	7	7	홍기품	533	-	-
94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2-12	도로	23	23	국	건설부	-	-
95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2-9	도로	10	10	정광순	712	-	-
96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8-15	도로	17	17	안석주	원주시 중앙동 33	-	-
97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8-26	대	56	56	강원도	강원도	-	-
98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8-16	도로	17	17	유관진	미등기	-	-
99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8-27	대	78	78	이옥자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치악로 18	-	-
100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8-17	도로	30	30	김임순학	횡성군 우천면 추동리 17	-	-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101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8-18	도로	13	13	이일용	74	-	-
102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8-28	대	87	87	국	강원도	-	-
103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8-29	대	12	12	국	강원도	-	-
104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2-11	도로	40	40	선봉찬	712-5	-	-
105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2-21	대	48	48	국	국토교통부	-	-
106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2-15	도로	77	37	국	국토해양부	-	-
107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8-2	도로	198	141	국	건설교통부	-	-
108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2-30	대	50	50	국	강원도	-	-
109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957-1	구거	347	98	국	농림수산부	-	-
110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2-20	대	22	22	강원도	강원도	-	-
111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2-10	도로	13	13	국	건설부	-	-
112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2-28	대	37	37	국	강원도	-	-
113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0-28	도로	98	12	국	원주시	-	-
114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0-30	도로	147	94	국	원주시	-	-
115	원주시	710-48	대	25	7	국	강원도	-	-

순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신림면 신림리								
116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2-19	대	42	42	국	국토교통부	-	-
117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2-27	대	49	49	강원도	강원도	-	-
118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2-24	대	50	18	국	강원도	-	-
119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0-36	도로	362	362	국	원주시	-	-
120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0-49	대	69	40	국	강원도	-	-
121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532-3	잡종지	82	82	강원도	강원도	-	-
122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531-1	대	125	125	국	강원도	-	-
123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957	도로	8,800	756	국	건설교통부	-	-
124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2-7	대	96	96	국	강원도	-	-
125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2-18	대	63	63	국	국토교통부	-	-
126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2-22	대	9	9	국	강원도	-	-
127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2-26	대	111	111	국	강원도	-	-
128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2-23	대	20	20	국	강원도	-	-
129	원주시 신림면	710-1	하천	96	96	국	강원도	-	-

순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신림리								
130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2-2	대	489	489	국	강원도	-	-
131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0-3	대	74	31	국	강원도	-	-
132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0-45	대	197	197	국	강원도	-	-
133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0-46	대	30	30	국	강원도	-	-
134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0-50	대	24	24	국	강원도	-	-
135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2-25	대	434	434	국	강원도	-	-
136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2-14	대	52	52	강원도	강원도	-	-
137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2-29	대	7	7	국	강원도	-	-
138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3-6	도로	243	243	국	원주시	-	-
139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3-7	답	1,128	762	국	강원도	-	-
140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3-10	답	369	231	국	강원도	-	-
141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713-3	하천	1,788	327	국	국토해양부	-	-
142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1-1	도로	23	23	홍윤식	원주시 단구동 176	-	-
143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1-4	대	133	133	국	강원도	-	-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144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1-3	도로	53	53	국	강원도	-	-
145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0-18	도로	20	14	조정식	690-5	-	-
146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3-25	도로	79	59	국	강원도	-	-
147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946	도로	8,731	460	국	건설교통부	-	-
148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948-15	대	11	11	국	강원도	-	-
149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4-9	대	25	25	강원도	강원도	-	-
150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5-4	도로	33	33	국	건설부	-	-
151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4-5	도로	17	17	국	강원도	-	-
152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4-11	전	4	4	전기찬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4-1	-	-
153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5-11	대	4	4	전기찬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4-1	-	-
154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7-4	답	3	2	국	강원도	-	-
155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7-3	도로	132	123	국	강원도	-	-
156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7-1	도로	33	16	국	강원도	-	-
157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7-5	대	146	47	국	강원도	-	-
158	원주시	695-9	도로	236	20	국	건설부	-	-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신림면 신림리								
159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3-2	도로	36	36	국	강원도	-	-
160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3-10	대	60	10	국	강원도	-	-
161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4-10	대	9	9	홍세희	원주시 봉화로 231	-	-
162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4-2	전	132	132	국	강원도	-	-
163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4-6	도로	43	43	홍우창	판부면 단구리	-	-
164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4-3	대	90	68	국	강원도	-	-
165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4-4	도로	33	33	국	강원도	-	-
166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3-54	대	30	1	국	원주시	-	-
167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3-32	대	30	10	국	강원도	-	-
168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3-11	도로	40	39	국	원주시	-	-
169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3-24	도로	50	43	국	건설부	-	-
170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0-24	전	63	4	국	건설교통부	-	-
171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0-59	도로	187	152	국	원주시	-	-
172	원주시 신림면	690-29	대	38	3	국	원주시	-	-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신림리								
173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0-55	도로	194	180	국	원주시	-	-
174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0-58	대	5	5	국	원주시	-	-
175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90-54	도로	15	15	국	원주시	-	-
176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89-9	도로	330	330	국	원주시	-	-
177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89-11	대	152	152	국	원주시	-	-
178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689-18	답	91	8	국	강원도	-	-
179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948	하천	143,106	6,602	국	건설부	-	-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32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6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하천)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하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합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시설: 하천) 결정에 관한 사항

1) 방재시설(원주시)

가) 하천

■ 하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706	주포천	지방하천	신림면 성남리 903-2	신림면 용암리 1018-9	신림리	10.5	10~124	567,067	강고제77호 (09.2.27)	
변경	706	주포천	지방하천	신림면 성남리 903-2	신림면 용암리 1018-9	신림리	10.5	10~124	583,008		

■ 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706	주포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면적 변경</li> <li>- 567,067㎡ → 583,008㎡ (증) 15,94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천법」 제27조에 따른 주포천 재해예방공사 시행계획의 수립 내용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하천)을 결정(변경) 하고자 함.</li> </ul>

나. 도시계획시설(하천)사업 시행자지정에 관한 사항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주포천(신림지구) 재해예방사업

2)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 치: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일원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규 모: 하천정비 L=2.9k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원주시장(건설방재과)

- 주 소: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무실동)

다. 도시계획시설(하천)사업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1) 사업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 위치	사업면적 또는 규모	사업기간
주포천(신림지구) 재해예방사업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일원	- 규 모: 하천정비 L=2.9km - 면 적: A=154,279㎡	시행계획 고시일 ~ 2024. 12. 31.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원주시장(건설방재과)
- 주 소: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무실동)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 게재생략(하천공사 시행계획 편입조서로 같음함)

4)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3. 기타사항

- 설계도서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 등은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원주시 건설방재과(033-737-3242)에 비치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247호

영월 한옥마을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승인(변경) 고시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영월 한옥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 제19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변경),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변경)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률 제16조 및 제19조,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 명 칭 : 영월 한옥마을 조성사업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남면 북쌍리 산39번지 일원
- 면 적 : (기정) 295,074㎡ → (변경) 245,712㎡

나.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 목 적 : 영월군의 역사, 문화 예술, 환경 차별화된 종합적 관광·휴양단지를 조성 개발하여 고용창출과 지역의 소득증대 및 지역활성화 도모
- 시행기간 : 2017년 ~ 2025년

다. 지역개발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변경)

- 시 행 자: (기정) 더한옥호텔앤리조트 (주) 대표 조정일  
→ (변경) 더한옥호텔앤리조트 주식회사 대표 조정일, 이정림
- 시행방식: 협의에 의한 취득·사용방식

라.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 계획(변경)

- 공간 및 시설배치기법을 통한 일조·자연채광을 반영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며, 바람길을 조성하여 에너지 절감을 고려한 시설배치, 절·성토를 최소화하여 자연환경변화를 최소화 계획 수립
- 분야별 오염방지 방안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세부추진계획 게재 생략 담당부서 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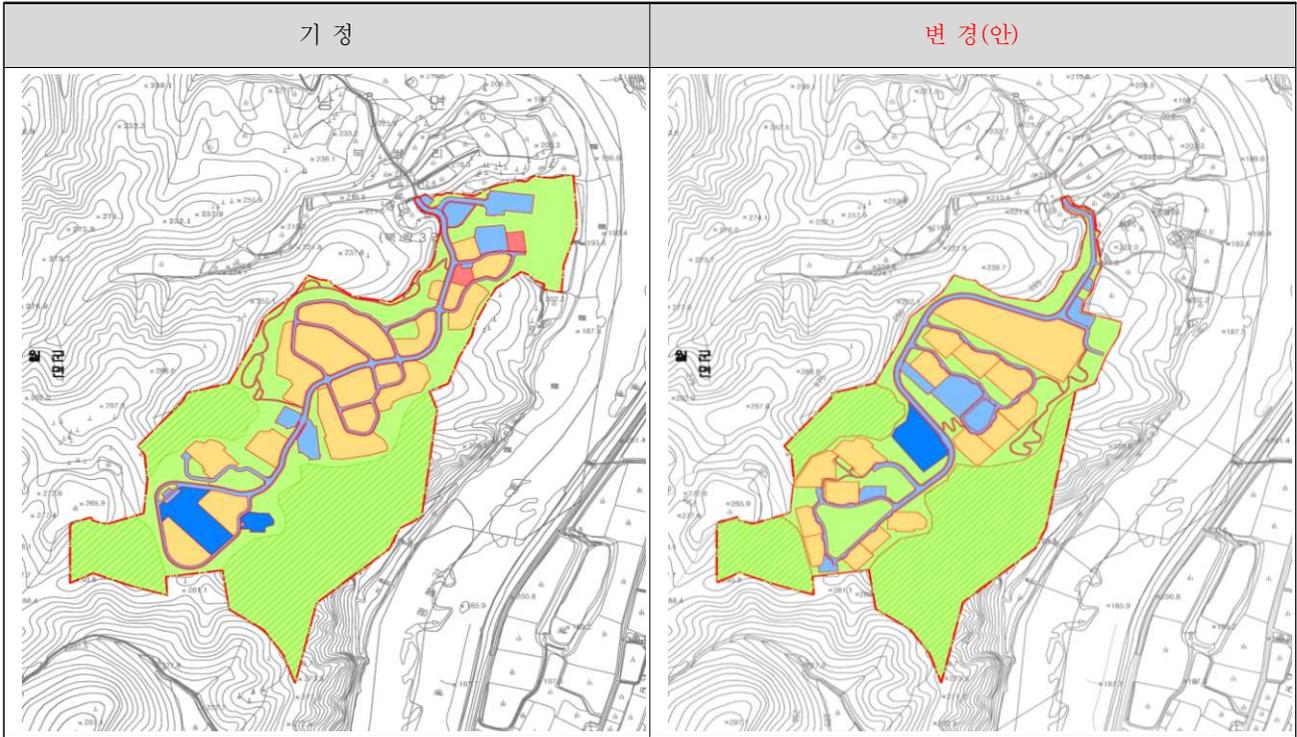
마.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변경)

- 인구수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담당부서 비치

- 교통처리계획(변경) : 계재생략 담당부서 비치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적(m <sup>2</sup> )			구성비 (%)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계		295,074	감) 49,362	245,712	100.0	감) 16.7%
관광휴양 시설용지	소 계	71,924	감) 15,366	56,558	22.9	감) 21.4%
	숙박시설	61,333	감) 10,549	50,784	20.6	
	상업시설	2,030	감) 2,030	-	-	폐지
	복합문화시설	7,021	감) 1,247	5,774	2.3	
	복합문화시설 (한옥문화플랫폼)	1,540	감) 1,540	-	-	폐지
공공시설 용지	소 계	34,835	감) 1,038	33,797	13.8	감) 3.0%
	도로	23,164	증) 662	23,826	9.7	인도, 산책로 포함
	주차장	7,478	감) 1,622	5,856	2.4	
	업무시설	4,193	감) 4,193	-	-	폐지
	기타시설	-	증) 4,115	4,115	1.7	업무, 운동시설포함
녹지용지	소 계	188,315	감) 32,958	155,357	63.3	감) 17.5%
	녹지	85,843	감) 27,060	58,783	24.0	조성녹지 포함
	원형녹지	102,472	감) 5,898	96,574	39.3	

【영월 한옥마을 조성사업 토지이용계획도】



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비고
기정	기간(년)	2017 ~ 2024	2024 ~ 2025	-	2단계
	면적(m <sup>2</sup> )	251,314 (85.2%)	43,760 (14.8%)	-	
변경	기간(년)	2017 ~ 2024	2024 ~ 2025	2024 ~ 2025	3단계
	면적(m <sup>2</sup> )	176,023 (71.6)	45,816 (18.7%)	23,873 (9.7%)	

사.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 게재생략 담당부서 비치

## 아.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변경)

## ○ 재원조달계획

내역		금 액(백만원)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기 정	대주주	9,763	1,500	6,000	9,000	5,950	2787	-	35,000
	재무적투자자 (금융권투자자)	-	-	6,000	10,000	10,000	4,000	-	30,000
	장기 투자회원 (특별회원권)	-	-	2,592	6,318	5,608	7,916	-	22,434
	회원제 회원권 (일반회원권)	-	-	-	5,368	10,354	15,580	8,041	39,344
	합 계	9,763	1,500	14,592	30,686	31,912	30,283	8,041	126,778
변 경	대주주	9,763	1,532	5,131	16,188	4,975	3,000	3,000	43,589
	재무적투자자 (금융권투자자)	-	-	-	-	10,000	10,000	10,000	30,000
	장기 투자회원 (특별회원권)	-	-	-	-	3,000	18,000	8,000	29,000
	회원제 회원권 (일반회원권)	-	-	-	-	6,000	17,874	12,033	35,907
	합 계	9,763	1,532	5,131	16,188	23,975	48,874	33,033	138,496

○ 연도별 투자계획

내역		금 액(백만원)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기 정	보상비	5,712	-	2,299	1,852	898	898	225	11,884	
	공사비	2,174	309	7,210	23,125	25,551	25,345	5,079	88,794	
	부대비용 (설계,감리,기타)	1,877	1,191	5,083	5,709	5,463	4,040	2,737	26,100	
	합 계	9,763	1,500	14,592	30,686	31,912	30,283	8,041	126,778	
	1 단계	보상비	5,712	-	1,176	504	-	-	-	7,392
		공사비	2,174	309	7,210	23,125	25,551	18,691	-	77,060
		부대비용 (설계,감리,기타)	1,877	1,191	5,083	5,709	5,463	2,548	-	21,871
		합 계	9,763	1,500	13,469	29,338	31,014	21,239	-	106,323
	2 단계	보상비	-	-	1,123	1,348	898	898	225	4,492
		공사비	-	-	-	-	-	6,654	5,079	11,734
		부대비용 (설계,감리,기타)	-	-	-	-	-	1,492	2,737	4,229
		합 계	-	-	1,123	1,348	898	9,044	8,041	20,455
	변 경	보상비	5,712	1	476	2,108	875	-	-	9,172
		공사비	2,174	435	2,631	11,580	21,100	44,790	31,033	113,743
		부대비용 (설계,감리,기타)	1,877	1,096	2,024	2,500	2,000	4,084	2,000	15,581
		합 계	9,763	1,532	5,131	16,188	23,975	48,874	33,033	138,496
1 단계		보상비	5,712	1	476	-	475	-	-	6,664
		공사비	2,174	435	2,631	11,580	21,100	20,072	-	57,992
		부대비용 (설계,감리,기타)	1,877	1,096	1,138	2,500	2,000	1,100	-	9,711
		합 계	9,763	1,532	4,245	14,080	23,575	21,172	-	74,367
2 단계		보상비	-	-	-	1,249	400	-	-	1,649
		공사비	-	-	-	-	-	21,000	10,033	31,033
		부대비용 (설계,감리,기타)	-	-	886	-	-	1,492	1,000	3,378
		합 계	-	-	886	1,249	400	22,492	11,033	36,060
3 단계		보상비	-	-	-	859	-	-	-	859
		공사비	-	-	-	-	-	3,718	21,000	24,718
		부대비용 (설계,감리,기타)	-	-	-	-	-	1,492	1,000	2,492
		합 계	-	-	-	859	-	5,210	22,000	28,069

자. 보건의료·교육 및 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차.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변경) : 게재생략 담당부서 비치

카. 토지수용 또는 사용계획 조서(변경) : [별첨 1] 참조

타. 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변경)

- 사업명 : 영월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사업
- 시행자 : 영월군
- 사업비 : 24,000백만원(국비 100%)
- 사업량 : 접속도로 1,658m(교량 360m, 도로 1,298m)

파. 사업성에 관한사항(변경) : 게재생략 담당부서 비치

하.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2.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시행자의 명칭 및 소재지(변경)

- 명 칭 : (기정) 더한옥호텔엔리조트 주식회사 대표 조정일  
(변경) 더한옥호텔엔리조트 주식회사 대표 조정일, 이정림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8층 (여의도동, 익스콘벤처타워)

나. 지역개발사업의 명칭, 위치, 목적(변경없음)

- 명 칭 : 영월 한옥마을 조성사업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남면 북쌍리 산39번지 일원
- 목 적 : 영월군의 역사, 문화 예술, 환경 차별화된 종합적 관광·휴양단지를 조성 개발하여 고용창출과 지역의 소득증대 및 지역활성화 도모

다.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2017년 ~ 2025년(변경없음)

3.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에 관한 사항

가.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 성 명 : (기정) 더한옥호텔엔리조트 주식회사 대표 조정일  
(변경) 더한옥호텔엔리조트 주식회사 대표 조정일, 이정림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8층 (여의도동, 익스콘벤처타워)

나. 사업의 명칭·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변경)

- 명 칭 : 영월 한옥마을 조성사업

- 목 적 : 영월군의 역사, 문화 예술, 환경 차별화된 종합적 관광·휴양단지를 조성 개발하여 고용창출과 지역의 소득증대 및 지역활성화 도모
- 시행지의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남면 북쌍리 산39번지 일원
- 면 적 : (기정) 295,074㎡ → (변경) 245,712㎡
- 시행기간 : 2017년 ~ 2025년

다. 사업시행지의 위치도(변경없음)

< 광역위치도 >



< 위치도 >



라.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변경) : 계재생략 및 담당부서 비치

마. 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서(해당없음)

바. 연차별 자금 투입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변경)

○ 연차별 자금 투입계획

내역		금 액(백만원)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기 정	보상비	5,712	-	2,299	1,852	898	898	225	11,884	
	공사비	2,174	309	7,210	23,125	25,551	25,345	5,079	88,794	
	부대비용 (설계,감리,기타)	1,877	1,191	5,083	5,709	5,463	4,040	2,737	26,100	
	합 계	9,763	1,500	14,592	30,686	31,912	30,283	8,041	126,778	
	1 단계	보상비	5,712	-	1,176	504	-	-	-	7,392
		공사비	2,174	309	7,210	23,125	25,551	18,691	-	77,060
		부대비용 (설계,감리,기타)	1,877	1,191	5,083	5,709	5,463	2,548	-	21,871
		합 계	9,763	1,500	13,469	29,338	31,014	21,239	-	106,323
	2 단계	보상비	-	-	1,123	1,348	898	898	225	4,492
		공사비	-	-	-	-	-	6,654	5,079	11,734
		부대비용 (설계,감리,기타)	-	-	-	-	-	1,492	2,737	4,229
		합 계	-	-	1,123	1,348	898	9,044	8,041	20,455
	변 경	보상비	5,712	1	476	2,108	875	-	-	9,172
		공사비	2,174	435	2,631	11,580	21,100	44,790	31,033	113,743
		부대비용 (설계,감리,기타)	1,877	1,096	2,024	2,500	2,000	4,084	2,000	15,581
		합 계	9,763	1,532	5,131	16,188	23,975	48,874	33,033	138,496
1 단계		보상비	5,712	1	476	-	475	-	-	6,664
		공사비	2,174	435	2,631	11,580	21,100	20,072	-	57,992
		부대비용 (설계,감리,기타)	1,877	1,096	1,138	2,500	2,000	1,100	-	9,711
		합 계	9,763	1,532	4,245	14,080	23,575	21,172	-	74,367
2 단계		보상비	-	-	-	1,249	400	-	-	1,649
		공사비	-	-	-	-	-	21,000	10,033	31,033
		부대비용 (설계,감리,기타)	-	-	886	-	-	1,492	1,000	3,378
		합 계	-	-	886	1,249	400	22,492	11,033	36,060
3 단계		보상비	-	-	-	859	-	-	-	859
		공사비	-	-	-	-	-	3,718	21,000	24,718
		부대비용 (설계,감리,기타)	-	-	-	-	-	1,492	1,000	2,492
		합 계	-	-	-	859	-	5,210	22,000	28,069

○ 재원조달 계획

내역		금 액(백만원)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기 정	대주주	9,763	1,500	6,000	9,000	5,950	2,787	-	35,000
	재무적투자자 (금융권투자자)	-	-	6,000	10,000	10,000	4,000	-	30,000
	장기 투자회원 (특별회원권)	-	-	2,592	6,318	5,608	7,916	-	22,434
	회원제 회원권 (일반회원권)	-	-	-	5,368	10,354	15,580	8,041	39,344
	합 계	9,763	1,500	14,592	30,686	31,912	30,283	8,041	126,778
변 경	대주주	9,763	1,532	5,131	16,188	4,975	3,000	3,000	43,589
	재무적투자자 (금융권투자자)	-	-	-	-	10,000	10,000	10,000	30,000
	장기 투자회원 (특별회원권)	-	-	-	-	3,000	18,000	8,000	29,000
	회원제 회원권 (일반회원권)	-	-	-	-	6,000	17,874	12,033	35,907
	합 계	9,763	1,532	5,131	16,188	23,975	48,874	33,033	138,496

사. 토지·물건 및 권리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 해당없음

아. 보상계획서(변경) : 토지보상 협의를 통하여 사유지의 97.94%(240,636㎡, 32필지)를 취득하였으며, 나머지 동의토지 2.05%(5,042㎡, 8필지) 및 국유지 0.01%(34㎡, 1필지)는 협의 매수할 예정임

자. 존치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서 : 해당없음

차. 공구분할 계획서 및 환경영향평가서 : 계제생략 담당부서 비치

타.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 계제생략 담당부서 비치

4. 인허가 등의 의제 처리사항 및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고시내용에 관한 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 [별첨 2]

나. 지형도면 고시도(변경) : 경제생략 담당부서 비치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다. 승인조건 및 관계도서(사업시행지의 위치도, 계획평면도, 개략설계도서 등)는 강원특별자치도 균형발전과(☎ 033-249-3032) 및 영월군 경제고용과(☎ 033-370-252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임

[ 별첨1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건물 등의 권리명세서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계	기정				385,739	295,074						
	변경				388,345	245,712						
1	기정	북쌍리	55-1	전	1,653	1,653	엄효섭 외 1인	영월군 남면 문개실길 37-151				
	변경	북쌍리	55-1	전	1,653	-	엄효섭 외 1인	영월군 남면 문개실길 37-151				제척
2	기정	북쌍리	55-2	전	1,653	1,653	엄효섭 외 1인	영월군 남면 문개실길 37-151				
	변경	북쌍리	55-2	전	1,653	-	엄효섭 외 1인	영월군 남면 문개실길 37-151				제척
3	기정	북쌍리	55-3	전	6,946	6,946	엄효섭 외 1인	영월군 남면 문개실길 37-151				
	변경	북쌍리	55-3	전	6,946	-	엄효섭 외 1인	영월군 남면 문개실길 37-151				제척
4	기정	북쌍리	56	전	1,653	1,653	엄효섭 외 1인	영월군 남면 문개실길 37-151				
	변경	북쌍리	56	전	1,653	-	엄효섭 외 1인	영월군 남면 문개실길 37-151				제척
5	기정	북쌍리	56-1	전	3,134	3,134	엄기열	영월군 남면 문개실길 37-151				
	변경	북쌍리	56-1	전	3,134	-	엄금녀	원주시 천태봉길 56-16(단구동)				제척
6	기정	북쌍리	57	임	1,405	1,405	엄완섭	영월읍 영흥리 850-5 동우프라자상가아파트 805호	평창영월정선 축산업협동 조합	강원 평창군 평창읍 하리 131-1(영월 지점)	근저당권 (채무자 엄완섭)	
									평창영월정선 축산업협동 조합	강원 평창군 평창읍 백오로 9(영월지점)	근저당권 (채무자 엄완섭)	

연 번	구 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변경	북쌍리	57	임	1,405	-	업완섭	영월읍 영흥리 850-5 동우프라자상가아파트 805호	평창영월정선 축산업협동 조합	강원 평창군 평창읍 하리 131-1(영월 지점)	근저당권 (채무자 업완섭)	체척
									평창영월정선 축산업협동 조합	강원 평창군 평창읍 백오로 9(영월지점)	근저당권 (채무자 업완섭)	
7	기정	북쌍리	57-1	임	1,289	1,289	김완희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9길 8, 다동 110호(하나아파트)				
	변경	북쌍리	57-1	임	1,289	-	김완희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9길 8, 다동 110호(하나아파트)				체척
8	기정	북쌍리	57-2	전	1,994	1,994	업완섭	영월읍 하송리 185-5 진영연립 B동 204호				
	변경	북쌍리	57-2	전	1,994	-	업완섭	영월읍 하송리 185-5 진영연립 B동 204호				체척
9	기정	북쌍리	57-3	전	8,098	8,098	업완섭	영월읍 하송리 185-5 진영연립 B동 204호				
	변경	북쌍리	57-3	전	8,098	-	업완섭	영월읍 하송리 185-5 진영연립 B동 204호				체척
10	기정	북쌍리	58-1	구	833	154	국(농림축산 식품부)					
	변경	북쌍리	58-1	구	833	34	국(농림축산 식품부)					축소
11	기정	북쌍리	59	답	1,822	1,166	업완섭 외 1인	영월읍 영흥리 850-5 동우프라자상가아파트 805호				
	변경	북쌍리	59-2	답	214	214	더한옥호텔엔 리조트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8층(여의도동, 익스콘벤처타워)				지적 분할
12	기정	북쌍리	59-1	답	175	173	업완섭	영월읍 영흥리 850-5 동우프라자상가아파트 805호				
	변	북쌍리	59-1	답	175	173	더한옥호텔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유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경						리조트 주식회사	은행로 3, 8층(여의도동, 익스콘벤처타워)				변경
13	기정	북쌍리	60-1	전	3,058	994	엄호영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16번길 15, 402호(태광상가주택)	평창영월정선 축산업협동 조합	강원 평창군 평창읍 하리 131-1(영월 지점)	근저당권 (채무자 엄완섭)	
	변경	북쌍리	60-3	전	495	495	더한옥호텔앤 리조트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8층(여의도동, 익스콘벤처타워)				지적 분할
14	기정	북쌍리	61	대	268	18	엄호영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16번길 15, 402호(태광상가주택)	평창영월정선 축산업협동 조합	강원 평창군 평창읍 하리 131-1(영월 지점)	근저당권 (채무자 엄완섭)	
15	기정	북쌍리	62	전	1,867	1,867	엄완섭	영월읍 영흥리 850-5 동우프라자상가아파트 805호	평창영월정선 축산업협동 조합	강원 평창군 평창읍 하리 131-1(영월 지점)	근저당권 (채무자 엄완섭)	
	변경	북쌍리	62-4	전	206	206	더한옥호텔앤 리조트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8층(여의도동, 익스콘벤처타워)				지적 분할
16	기정	북쌍리	62-1	임	3,795	3,795	더한옥호텔앤 리조트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21, 9층(여의도동, 동성빌딩)				
17	기정	북쌍리	62-2	도	410	410	엄완섭	영월읍 영흥리 850-5 동우프라자상가아파트 805호	평창영월정선 축산업협동 조합	강원 평창군 평창읍 하리 131-1(영월 지점)	근저당권 (채무자 엄완섭)	
	변경	북쌍리	62-2	도	410	410	더한옥호텔앤 리조트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8층(여의도동, 익스콘벤처타워)				소유 변경
18	기	북쌍리	62-3	전	2,199	2,199	엄완섭	영월읍 영흥리 850-5	평창영월정선	강원 평창군	근저당권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정								축산업협동조합	평창읍 하리 131-1(영월지점)	(채무자엄완섭)	
	변경	북쌍리	62-3	전	2,199	2,199	더한옥호텔엔리조트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8층(여의도동, 익스콘벤처타워)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강원 평창군 평창읍 백오로 9(영월지점)	근저당권(채무자엄완섭)	소유변경
19	기정	북쌍리	63	전	136	136	엄완섭	영월읍 영흥리 850-5 동우프라자상가아파트 805호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강원 평창군 평창읍 하리 131-1(영월지점)	근저당권(채무자엄완섭)	
	변경	북쌍리	63	전	136	136	더한옥호텔엔리조트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8층(여의도동, 익스콘벤처타워)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강원 평창군 평창읍 백오로 9(영월지점)	근저당권(채무자엄완섭)	소유변경
20	기정	북쌍리	64	전	1,570	1,570	조정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200-16, 2동 501호(한남동, 힐탑트레저)				
	변경	북쌍리	64	전	1,570	1,570	더한옥호텔엔리조트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8층(여의도동, 익스콘벤처타워)				소유변경
21	기정	북쌍리	64-1	전	60	60	김나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57, 102동 4402호(목동, 목동현대하이페리온)				
	변경	북쌍리	64-1	전	60	60	더한옥호텔엔리조트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8층(여의도동, 익스콘벤처타워)				소유변경
22	기정	북쌍리	64-2	전	60	60	길양훈	경기도 구리시 갈매중앙로 131, 310동 1302호(갈매동, 한라비발디)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23	변경	북쌍리	64-2	전	60	60	더한옥호텔엔리조트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8층(여의도동, 익스콘벤처타워)				소유 변경
	기정	북쌍리	64-3	전	60	60	김록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2길 53-4, 비101호(남현동)				
24	변경	북쌍리	64-3	전	60	60	더한옥호텔엔리조트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8층(여의도동, 익스콘벤처타워)				소유 변경
	기정	북쌍리	64-4	전	60	60	유재훈	경기도 부천시 양지로 234-10, 102동 2103호(옥길동, 제이드카운티 1단지)				
25	변경	북쌍리	64-4	전	60	60	더한옥호텔엔리조트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8층(여의도동, 익스콘벤처타워)				소유 변경
	기정	북쌍리	64-5	전	60	60	한준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7, 101동 406호(잠실동, 현대아파트)				
26	변경	북쌍리	64-5	전	60	60	더한옥호텔엔리조트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8층(여의도동, 익스콘벤처타워)				소유 변경
	기정	북쌍리	64-6	전	60	60	김남열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275, 311동 1301호(운양동, 풍경마을한강신도시롯데캐슬)				
27	변경	북쌍리	64-6	전	60	60	더한옥호텔엔리조트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8층(여의도동, 익스콘벤처타워)				소유 변경
	기정	북쌍리	64-7	전	60	60	서우경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845, 132동 2302호(장기동, 한강센트럴자이)				
28	변경	북쌍리	64-7	전	60	60	더한옥호텔엔리조트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8층(여의도동, 익스콘벤처타워)				소유 변경
	기정	북쌍리	64-8	전	60	60	한상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105, 2311동 104호(행신동, 햇빛마을)				

연 번	구 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변경	북쌍리	64-8	전	60	60	더한옥호텔앤 리조트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8층(여의도동, 익스콘벤처타워)				소유 변경
29	기정	북쌍리	67	전	2,151	2,151	조정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200-16, 2동 501호(한남동, 힐탑트레저)				
	변경	북쌍리	67	전	2,151	2,151	더한옥호텔앤 리조트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8층(여의도동, 익스콘벤처타워)				소유 변경
30	기정	북쌍리	67-1	전	60	60	황호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62길 29, 102동 107호(명일동, 명일삼환아파트)				
	변경	북쌍리	67-1	전	60	60	더한옥호텔앤 리조트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8층(여의도동, 익스콘벤처타워)				소유 변경
31	기정	북쌍리	67-2	전	60	60	백재학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643번길 9, 1237동 703호(산본동,목련아파트)				
	변경	북쌍리	67-2	전	60	60	더한옥호텔앤 리조트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8층(여의도동, 익스콘벤처타워)				소유 변경
32	기정	북쌍리	67-3	전	60	60	신성훈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만내3길 22, 104동 1602호(평화동2가, 동아현대아파트)				
	변경	북쌍리	67-3	전	60	60	더한옥호텔앤 리조트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8층(여의도동, 익스콘벤처타워)				소유 변경
33	기정	북쌍리	67-4	전	60	60	유기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99, 601동 703호(상현동, 만현마을쌍용아파트)				
	변경	북쌍리	67-4	전	60	60	더한옥호텔앤 리조트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8층(여의도동, 익스콘벤처타워)				소유 변경
34	기정	북쌍리	67-5	전	60	60	진영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5길 1,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변경	북쌍리	67-5	전	60	60	더한옥호텔엔리조트 주식회사	1711호(당산동5가, 당산삼성세르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8층(여의도동, 익스콘벤처타워)				소유 변경
35	기정	북쌍리	67-6	전	60	60	문병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37, 103동 1403호(문래동3가,문래동 금호어울림아파트)				
	변경	북쌍리	67-6	전	60	60	더한옥호텔엔리조트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8층(여의도동, 익스콘벤처타워)				소유 변경
36	기정	북쌍리	67-7	전	60	60	위장우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55, 412동 302호(소하동, 휴먼시아)				
	변경	북쌍리	67-7	전	60	60	더한옥호텔엔리조트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8층(여의도동, 익스콘벤처타워)				소유 변경
37	기정	북쌍리	67-8	전	60	60	홍현성	경기도 남양주시 외부읍 석실로 15-26,301호				
	변경	북쌍리	67-8	전	60	60	더한옥호텔엔리조트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8층(여의도동, 익스콘벤처타워)				소유 변경
38	기정	북쌍리	산34	임	28,264	28,264	더한옥호텔엔리조트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21, 9층(여의도동, 동성빌딩)				
39	기정	북쌍리	산35	임	27,272	27,272	더한옥호텔엔리조트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21, 9층(여의도동, 동성빌딩)				
40	기정	북쌍리	산35-1	임	992	992	엄복영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341-6				
	변경	북쌍리	산35-1	임	992	992	더한옥호텔엔리조트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8층(여의도동, 익스콘벤처타워)				소유 변경
41	기정	북쌍리	산36	임	7,706	7,706	박금순	정선군 남면 멀미길 33, 104동 101호(무릉주공아파트)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변경	북쌍리	산36	임	7,706	7,706	더한옥호텔엔리조트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8층(여의도동, 익스콘벤처타워)				소유변경
42	기정	북쌍리	산39	임	15,174	15,174	더한옥호텔엔리조트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21, 9층(여의도동, 동성빌딩)				
43	기정	북쌍리	산41	임	11,648	11,648	엄완섭	영월읍 하송리 185-5 진영연립 B동 204호				
	변경	북쌍리	산41-3	임	1,691	1,207	더한옥호텔엔리조트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8층(여의도동, 익스콘벤처타워)				지적분할
44	기정	북쌍리	산42-1	임	2,011	2,011	엄완섭	영월읍 영흥리 850-5 동우프라자상가아파트 805호				
	변경	북쌍리	산42-1	임	2,011	2,011	엄완섭	영월읍 영흥리 850-5 동우프라자상가아파트 805호				체적
45	기정	북쌍리	산46	임	3,372	3,372	더한옥호텔엔리조트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21, 9층(여의도동, 동성빌딩)				
46	기정	북쌍리	산47	임	39,669	39,669	더한옥호텔엔리조트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21, 9층(여의도동, 동성빌딩)				
47	기정	북쌍리	산47-2	임	39,669	15,023	더한옥호텔엔리조트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21, 9층(여의도동, 동성빌딩)				
	변경	북쌍리	산47-2	임	39,669	10,437	더한옥호텔엔리조트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21, 9층(여의도동, 동성빌딩)				축소
48	기정	북쌍리	산48	임	13,983	13,983	더한옥호텔엔리조트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21, 9층(여의도동, 동성빌딩)				
49	기정	북쌍리	산49	임	7,290	5,035	더한옥호텔엔리조트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21, 9층(여의도동, 동성빌딩)				
	변경	북쌍리	산49	임	7,290	3,784	더한옥호텔엔리조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21,				축소

연 번	구 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주식회사	9층(여의도동, 동성빌딩)				
50	기 정	북쌍리	산50	임	32,132	32,132	더한옥호텔엔 리조트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21, 9층(여의도동, 동성빌딩)				
51	기 정	북쌍리	산51	임	109,091	48,978	더한옥호텔엔 리조트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21, 9층(여의도동, 동성빌딩)				
52	기 정	북쌍리	산51-1	임	397	397	고진광 외 6인	태백시 황지동 418-3				
	변 경	북쌍리	산51-1	임	397	397	더한옥호텔엔 리조트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8층(여의도동, 익스콘벤처타워)				소유 변경

[별첨 2]

영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①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관리지역	총 계	295,074	-	295,074	100.0	
	계획관리지역	265,626	감) 26,771	238,855	80.9	
	보전관리지역	29,448	증) 26,771	56,219	19.1	

※지역개발사업구역 축소에 따라 구역에서 제척되는 계획관리지역 면적은 43,525㎡이며, 이중 용도지역 환원면적은 26,771㎡임.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변경사유
		기정	변경			
-	남면 북쌍리 56-1번지 일원	계획 관리지역	보전 관리지역	26,771	80	· 지역개발사업구역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

② 용도지구 결정 조서(해당없음)

③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 조서

■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3-8	문개실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남면 북쌍리 산39번지 일원	295,074	감) 49,362	245,712	강원도고시 제2021-221호 (21.06.04.)	

■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8	문개실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도면표시번호 변경 A → 3-8 · 구역면적 변경 - 면적: 295,074㎡ → 245,712㎡ (감:49,362㎡)	·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④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안) 조서

1.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계	295,074	감) 49,362	245,712	100.0	감) 16.7%	
관광휴양 시설용지	소 계	71,924	감) 15,366	56,558	22.9	감) 21.4%
	숙박시설	61,333	감) 10,549	50,784	20.6	
	상업시설	2,030	감) 2,030	-	-	폐지
	복합문화시설	7,021	감) 1,247	5,774	2.3	
	복합문화시설 (한옥문화플랫폼)	1,540	감) 1,540	-	-	폐지
공공시설 용지	소 계	34,835	감) 1,038	33,797	13.8	감) 3.0%
	도로	23,164	증) 662	23,826	9.7	인도, 산책로 포함
	주차장	7,478	감) 1,622	5,856	2.4	
	업무시설	4,193	감) 4,193	-	-	폐지
	기타시설	-	증) 4,115	4,115	1.7	업무, 운동시설포함
녹지용지	소 계	188,315	감) 32,958	155,357	63.3	감) 17.5%
	녹지	85,843	감) 27,060	58,783	24.0	조성녹지 포함
	원형녹지	102,472	감) 5,898	96,574	39.3	

2.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해당없음)

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안) 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안) 조서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관광휴양시설용지(숙박시설)

구분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숙박	소계	61,333	-	61,333	
		숙박 1	1,410	남면 북쌍리 산41 일원	1,410	
		숙박 2	2,157	남면 북쌍리 57-3 일원	2,157	
		숙박 3	638	남면 북쌍리 62-1 일원	638	
		숙박 4	1,068	남면 북쌍리 57-3 일원	1,068	
		숙박 5	2,814	남면 북쌍리 57-3 일원	2,814	
		숙박 6	2,874	남면 북쌍리 산47 일원	2,874	
		숙박 7	7,480	남면 북쌍리 산39 일원	7,480	
		숙박 8	6,458	남면 북쌍리 산47 일원	6,458	
		숙박 9	5,209	남면 북쌍리 산35 일원	5,209	
		숙박 10	3,711	남면 북쌍리 산47 일원	3,711	
		숙박 11	1,438	남면 북쌍리 산47 일원	1,438	
		숙박 12	3,774	남면 북쌍리 산47 일원	3,774	
		숙박 13	2,179	남면 북쌍리 산47 일원	2,179	
		숙박 14	6,329	남면 북쌍리 산47 일원	6,329	
		숙박 15	2,795	남면 북쌍리 산35 일원	2,795	
		숙박 16	3,274	남면 북쌍리 산34 일원	3,274	
		숙박 17	3,809	남면 북쌍리 64 일원	3,809	
		숙박 18	3,916	남면 북쌍리 67 일원	3,916	
변경	숙박	소계	50,784	-	50,784	
		숙박 1	3,379	남면 북쌍리 산34 일원	3,379	
		숙박 2	2,944	남면 북쌍리 산34 일원	2,944	
		숙박 3	1,583	남면 북쌍리 산51 일원	1,583	
		숙박 4	2,208	남면 북쌍리 산34 일원	2,208	
		숙박 5	1,974	남면 북쌍리 산50 일원	1,974	
		숙박 6	1,221	남면 북쌍리 산50 일원	1,221	
		숙박 7	1,310	남면 북쌍리 산51 일원	1,310	
		숙박 8	1,481	남면 북쌍리 산51 일원	1,481	
		숙박 9	2,460	남면 북쌍리 산47 일원	2,460	
		숙박 10	2,238	남면 북쌍리 산35 일원	2,238	
		숙박 11	2,213	남면 북쌍리 산47 일원	2,213	
		숙박 12	2,238	남면 북쌍리 산47 일원	2,238	
		숙박 13	2,110	남면 북쌍리 산35 일원	2,110	
		숙박 14	2,463	남면 북쌍리 산47 일원	2,463	
		숙박 15	3,162	남면 북쌍리 산47 일원	3,162	
		숙박 16	17,800	남면 북쌍리 산39 일원	17,800	

관광휴양시설용지(상업시설)

구분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sup>2</sup> )	
기정	상업	소계	2,030	-	2,030	
		상업 1	1,009	남면 북쌍리 57-3 일원	1,009	방문자 센터
		상업 2	1,021	남면 북쌍리 57 일원	1,021	간이식당
폐지	-	-	-	-	-	용지삭제

관광휴양시설용지(복합문화시설)

구분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sup>2</sup> )	
기정	복합 문화	소계	8,561	-	8,561	
		복합문화 1	7,021	남면 북쌍리 57-3 일원	7,021	복합문화시설
		복합문화 2	1,540	남면 북쌍리 57 일원	1,540	한옥문화플랫폼
변경	복합 문화	소계	5,774	-	5,774	
		복합문화 1	5,774	남면 북쌍리 산35 일원	5,774	복합문화시설

공공시설용지

구분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sup>2</sup> )	
기정	공공	소계	34,835	-	34,835	
		공공 1 - 1	21,426	남면 북쌍리 62-2 일원	21,426	도로
		공공 1 - 2	1,738	남면 북쌍리 62-3 일원	1,738	산책로
		공공 2 - 1	3,882	남면 북쌍리 41 일원	3,882	주차장 A
		공공 2 - 2	176	남면 북쌍리 57-3 일원	176	주차장 B
		공공 2 - 3	1,097	남면 북쌍리 산35 일원	1,097	주차장 C
		공공 2 - 4	1,893	남면 북쌍리 산47 일원	1,893	주차장 D

		공공 2 - 5	388	남면 북쌍리 산34 일원	388	주차장 E
		공공 2 - 6	42	남면 북쌍리 산50 일원	42	주차장 F
		공공 3	281	남면 북쌍리 60-1 일원	281	웰컴하우스
		공공 4	1,538	남면 북쌍리 59 일원	1,538	웰컴하우스
		공공 5	2,374	남면 북쌍리 57-2 일원	2,374	테마관리동
변경	공공	소계	33,797	-	33,797	
		공공 1 - 1	22,310	남면 북쌍리 산47 일원	22,310	도로
		공공 1 - 2	1,516	남면 북쌍리 산47 일원	1,516	산책로
		공공 2 - 1	616	남면 북쌍리 산51 일원	616	주차장 A
		공공 2 - 2	947	남면 북쌍리 64전 일원	947	주차장 B
		공공 2 - 3	1,200	남면 북쌍리 산35 일원	1,200	주차장 C
		공공 2 - 4	1,835	남면 북쌍리 산47 일원	1,835	주차장 D
		공공 2 - 5	1,258	남면 북쌍리 62-1 일원	1,258	주차장 E
		공공 3	254	남면 북쌍리 62-1 일원	254	웰컴하우스
		공공 4	3,861	남면 북쌍리 산35 일원	3,861	운동시설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변경)(안) 조서

관광휴양시설(숙박시설)

구분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	숙박 1~18	영월군 남면 북쌍리 산39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관광숙박시설 및 그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계획관리지역) · 20%이하(보전관리지역)	
			용적률	· 100%이하(계획관리지역) · 80%이하(보전관리지역)	
			높이	· 2층 이하	
			형태	· 한옥 · 한옥건축양식	
			색채	· 한옥고유의 색채 사용 권장	
변경	숙박 1~16	영월군 남면 북쌍리 산39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관광숙박시설 및 그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계획관리지역)	
			용적률	· 100%이하(계획관리지역)	
			높이	· 2층 이하	
			형태	· 한옥 · 한옥건축양식	
			색채	· 한옥고유의 색채 사용 권장	

관광휴양시설(상업시설)

구분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	상업 1~2	영월군 남면 북쌍리 산39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 및 그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계획관리지역) · 20%이하(보전관리지역)
			용적률		· 100%이하(계획관리지역) · 80%이하(보전관리지역)
			높이		· 1층이하
			형태		· 한옥 · 한옥건축양식
			색채		· 한옥고유의 색채 사용 권장
			폐지	-	-
불허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형태		-			
색채		-			

관광휴양시설(복합문화시설)

구분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	복합 문화 1~2	영월군 남면 북쌍리 산39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 및 그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계획관리지역) · 20%이하(보전관리지역)	
			용적률	· 100%이하(계획관리지역) · 80%이하(보전관리지역)	
			높이	· 1층 이하	
			형태	· 한옥 · 한옥건축양식	
			색채	· 한옥고유의 색채 사용 권장	
변경	복합 문화 1	영월군 남면 북쌍리 산39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 및 그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게임제공업소, 단란주점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계획관리지역)	
			용적률	· 100%이하(계획관리지역)	
			높이	· 1층 이하	
			형태	· 한옥 · 한옥건축양식	
			색채	· 한옥고유의 색채 사용 권장	

공공시설용지

구분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	공공 2~5	영월군 남면 북쌍리 산39번지 일원	용 도	허용용도	·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객 이용시설, 그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계획관리지역) · 20%이하(보전관리지역)	
			용적률	· 100%이하(계획관리지역) · 80%이하(보전관리지역)	
			높이	· 1층이하	
			형태	· 한옥 · 한옥건축양식	
			색채	· 한옥고유의 색채 사용 권장	
변경	공공 2~4	영월군 남면 북쌍리 산39번지 일원	용 도	허용용도	·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객 이용시설, 그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2종근린생활시설 (단, 게임제공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관련 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계획관리지역)	
			용적률	· 100%이하(계획관리지역)	
			높이	· 1층이하	
			형태	· 한옥 · 한옥건축양식	
			색채	· 한옥고유의 색채 사용 권장	

⑥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구분		주요시행내용	비고
1층 바닥높이		기정 · 건축물의 1층 바닥 높이는 한옥의 건축적 특성을 고려하되, 장애인의 이용 등을 고려하여 장애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접한 보도 또는 도로와 최소화	
외벽마감재		기정 · 골조가 노출되지 아니하며,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전통한옥으로 통일성을 유지	
지붕	지붕형상과 재료(기와)	기정 · 한식지붕틀 및 한식기와를 사용하여 기와를 잇도록 함 · 기와에 광택을 내는 원색의 유약 마감재 사용을 금지함	
	처마노출	기정 · 외벽을 목조 기둥선을 기준으로 맞추어 한식지붕의 하부구조와 목조기둥 상부를 노출하여 처마선이 드러나도록 함 · 부득이 외벽을 후퇴시킬 수 없는 경우, 처마와 닿은 외벽의 상부 부분이라도 철거하여 처마선이 드러나도록 함	
구조	목구조 방식	기정 · 기둥 및 보 등 주요 구조부는 전통적인 목구조를 원칙으로 함 단, 기단부 이하에 한하여 기타구조로 조성 가능함	
담장		기정 · 가로에 면한 담장의 높이는 1.5m 이하로 계획하며, 최소한의 출입구를 제외하고 전통담장을 설치하여 가로변으로부터 차폐함 · 장대석, 사고석, 전통벽돌, 외편, 자연석, 회벽 등 전통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전통무늬와 장식을 구현함	
구조물처리		기정 · 조립식 경량철골조, 무피복 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를 제한하며 경관을 보호	
대지 내 공지	공개 공지	기정 · 보행통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식수 등의 조경시설과 조명, 장식시설 등의 설치를 권장	
	대지 내 조경	기정 · 개별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내 조경은 건축법과 영월군 건축조례에 따르도록 하되, 전통적인 정원양식으로 조성을 권장  변경 · 개별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내 조경은 건축법과 영월군 건축조례에 따르도록 하되, 기존 녹지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친환경적이고 전통적인 정원양식으로 조성을 권장	
차량 동선 및 주차장	차량 동선	기정 · 평상시에는 개별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로의 접근은 차량을 통하여 접근하며, 비상시 차량통행로로 이동 · 진출입은 연접 도로 중 폭이 좁은 도로에서의 진출입을 권장	
		변경 ·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로의 접근성과 선돌문화제에서의 경관을 고려하여 외곽으로 주도로를 계획 · 도로 총연장을 길게함으로써 종단의 경사가 높지 않게 계획하며, 지선도로는 곡선 유형으로 계획하여 차량통행 안전성 확보	
	단주	기정 · 보행자 안전과 차량간섭을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구간에 설치	
	과속방지 시설	기정 · 보행자의 통행안전과 건축물의 환경유지를 위하여 교차로와 진출입로 주변에 설치를 권장	
	주차장 설치	기정 · 환경친화적인 한옥마을 조성과 주차장 설치의 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통합주차장 설치	
변경 · 친환경적인 한옥마을 조성과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통합주차장을 분산하고 적절한 장소에 설치			

공 고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1120호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사항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변경 등록(5개 단체)

구 분	등록번호	단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주 된 사 업	등록일자	비고
1	변경전	제2005-1 -	이우식	춘천시 서부대성로 12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및 시군 대한 자문·조언·홍보 등	2005.9.8	단체명변경 (23.6.2.)
	변경후	강원특별 자치도-1 4호					
2	변경전	제2004-1 -	이건실	춘천시 이디오아길 13	노인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사업	2004.7.6	단체명변경 (23.6.15.)
	변경후	강원특별 자치도-1 0호					
3	변경전	제2000-1 -	전배자	강릉시 수리골길 27	복지·여성사업	2000.5.2 4.	단체명변경 (23.6.21.)
	변경후	강원특별 자치도-4 7호					
4	변경전	제2001-1 -	안정희	춘천시 외솔길 25	여성권익사업	2001.3.1 9.	단체명변경 (23.6.22.)
	변경후	강원특별 자치도-2 3호					
5	변경전	제2012-1 -	양종천 (공동 대표 김찬중 )	춘천시 공지로 255, 3층 304호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지원, 정책연구·교육·홍보 컨설팅사업	2012.12. 4.	소재지변경 (23.6.30.)
	변경후	강원특별 자치도-3 호		춘천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1121호

제80회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0조에 의거, 제80회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3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심의일시 : 2023. 6. 27.(화) 14:00 ~ 18:00
2. 심의장소 : 도청 제2청사 4층 중회의실
3. 참석위원 : 11명(부위원장 1, 위촉직 10)
4. 심의안건 및 결과 ※ 세부내용 개별 통보

순번	건축물명	작품명	구분	작품가격 (천원)	심의결과
1	원주 의료원	자연에 의한 치유	조각	200,000	적합
2	원주 의료원	자연의 소리_힐링	조각	60,000	적합
3	원주 의료원	경계-시간	회화	100,000	적합
4	삼척 더스테이 아파트	자연을 감싸다	조각	51,600	부적합
5	양양 웨이블린트 숙박시설	여행	조각	186,000	적합
6	원주 이지더원 3차 아파트	컴포지션	조각	125,000	부적합
7	원주 이지더원 3차 아파트	생성	조각	97,000	부적합
8	원주 이지더원 3차 아파트	헤뜨는 풍경	조각	135,000	부적합
9	속초 하워드존슨 숙박시설	미,사,고(화해의 문)	조각	196,000	적합
10	홍천 희망리 아파트	The One - 하나 됨	조각	154,000	적합
11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제2사옥	건강 울타리 나무	조각	213,800	적합
12	강릉 정동진 숙박시설	You Never Walk Alone	회화	160,000	적합
13	강릉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	움트다	조각	128,000	적합

강원특별자치도축산기술연구소 공고 제2023-8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인 등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6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축 산 기 술 연 구 소 장

1. 공인등록 사용일 및 폐기일 : 2023. 6. 11.
2. 등록 및 폐기사유 : 기관명칭변경(강원도 ⇒ 강원특별자치도)
3. 등록 및 폐기 공인명, 인영(아래 별지서식 참조)

[별지 제3호서식]

등 록 인 영 부

2023년 7월 6일 현재

공 인 명	등록(재등록)일자	인 영	비 고
강원특별자치도 축산기술연구소장인	2023.06.11.		
강원특별자치도축산기술연구 소 재무관인	2023.06.11.		
강원특별자치도축산기술연구 소 지출원인	2023.06.11.		
강원특별자치도축산기술연구 소 물품출납원인	2023.06.11.		
강원특별자치도축산기술연구 소 세입징수관인	2023.06.11.		
강원특별자치도축산기술연구 소 세입세출외현금출납인	2023.06.11.		
강원특별자치도축산기술연구 소 계인	2023.06.11.		

폐 기 인 영 부

2023년 7월 6일 현재

공 인 명	등록(재등록)일자	인 영	비 고
강원도축산기술연구소장인	2015. 01. 02.		
강원도축산기술연구소 재무관인	2015. 01. 02.		
강원도축산기술연구소 지출원인	2015. 01. 02.		
강원도축산기술연구소 물품출납원인	2015. 01. 02.		
강원도축산기술연구소 세입징수관인	2015. 01. 02.		
강원도축산기술연구소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2015. 01. 02.		
강원도축산기술연구소 계인	2015. 01. 0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3-7호

「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부설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부설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동실습소의 첨단 시설과 설비, 전문 인력 활용을 통해 신기술·신산업 분야 전문교과 고교학점제 연계 공동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 전문성 향상 직무 연수 및 중학생 직업진로 체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 대상 및 목적 확대 (안 제1조, 제5조, 제6조)

- 강원특별자치도의 모든 학생과 교원이 공동실습소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개정

나. 신기술·신산업분야 직업교육지원 센터로서의 특성 나타낼 수 있도록 공동실습소 명칭 변경(안 별표)

- 4차 산업혁명 및 신기술·신산업 분야 전문 직업교육 시설 안내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명 창의융합형 공동실습소’ 로 명칭 변경(지역명: 춘천, 강릉, 태백, 홍천)

-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 교명 변경 예정(2024년 3월)에 따른 공동실습소 설치학교명 변경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장 정비(안 제4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참조: 중등교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제출방법

- 우 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854 중등교육과

- e-mail: indi114@korea.kr

- FAX: 033-258-5609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 담당자 주원철(☎ 033-258-562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부설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식 1부. 끝.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부설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부설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신기술·신산업 분야 기술 및 직무 교육을 통한 산업기술 동향 이해와 현장 적응력 강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부설 공동실습소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고려하여야” 를 “고려해야”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속직원” 을 “소속 직원” 으로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학생의 첨단 산업 기자재 조작 실습을 통한 산업현장 적응력 향상 교육과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산업 및 기술 이해 교육
- 2. 교원의 신기술·신산업 분야 기술 이해 및 산업 현장성 강화에 관한 연수

제6조제2호 중 “전문교과 교원” 을 “교원” 으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공동실습소 명칭·위치 및 설치학교(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설치학교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창의융합형 공동실습소	춘천시 후평1동 257-4번지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창의융합형 공동실습소	강릉시 입암동 525번지	강릉중앙고등학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 창의융합형 공동실습소	태백시 장성동 110-1번지	한국항공고등학교
강원특별자치도 홍천 창의융합형 공동실습소	홍천군 홍천읍 결운리 311번지	홍천농업고등학교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및 전문교과 교원을 대상으로 최신 첨단 기자재의 조작실습과 선진기계 영농기술 보급으로 산업 및 영농현장에서의 적응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부설 공동실습소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조직) ①·② (생 략)</p> <p>③ 교육감은 실습소의 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배정할 수 있으며, 소장은 실습소 근무교사를 배치할 때 전문지식과 실기능력, 자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④ 그 밖에 실습소 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소장이 설치학교의 소속직원 중에서 겸임하게 할 수 있다.</p> <p>제5조(업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최신 첨단 기자재의 조작실습을 통한 산업 사회의 적응력 향상교육</li> <li>2. 특성화고등학교 교원의 최신 첨단기자재 조작실습에 관한 연수</li> <li>3. (생 략)</li> </ol> <p>제6조(연수부) 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 략)</li> <li>2. 전문교과 교원의 연수</li> <li>3. ~ 5. (생 략)</li> </ol>	<p>제1조(목적) 강원특별자치도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신기술·신산업 분야 기술 및 직무 교육을 통한 산업기술 동향 이해와 현장 적응력 강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부설 공동실습소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조직)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고려해야 -----.</p> <p>④ ----- ----- 소속 직원 -----.</p> <p>제5조(업무)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생의 첨단 산업 기자재 조작 실습을 통한 산업현장 적응력 향상 교육과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산업 및 기술 이해 교육</li> <li>2. 교원의 신기술·신산업 분야 기술 이해 및 산업 현장성 강화에 관한 연수</li> <li>3. (현행과 같음)</li> </ol> <p>제6조(연수부)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교원-----</li> <li>3. ~ 5. (현행과 같음)</li> </ol>

[붙임 2]

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부설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견서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E-mail	
			연락처	
개정안	수정요구		수정사유	
제0조(00)	제0조(00)		○ -	

※ 참고자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3-8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2023. 3. 1.자 강원도교육청 조직개편 계획」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시행 2023. 6. 11.)」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와 [별표1]의 내용이 상이하여 조례 시행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나. 법령 정식명칭 사용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단순·경미한 사항(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별 위원 정수 항목 삭제. (안 제4조제2항 및 [별표 1])

- 지역별 위원 구성 기준과 지역별 위원 정수 배정이 상이함

나.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구성 현황 정비. (안 [별표2], 별지 제1호서식)

- 2023. 3. 1.자 강원도교육청 조직개편 계획을 반영하여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명칭, 부서 및 주요업무 정비

다. 법령 정식명칭 사용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4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참조: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 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제출 방법

- 우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과

- e-mail: simpleheart@korea.kr
- FAX: 033-259-0869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 예산과 심혜민에게 문의(☎033-259-085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 서식 1부. 끝.

[붙임1]

강원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를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로 한다.

제2조 중 “사업에 한한다” 를 “사업으로 한정한다” 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인터넷 홈페이지” 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 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람중” 을 “사람 중”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다문화가족법」” 을 “「다문화가족지원법」”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이라 함은” 을 “사람이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우선선정” 을 “우선 선정” 으로, “위원선정” 을 “위원 선정”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위원중” 을 “위원 중”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별표 2의” 를 “별표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무담당” 을 “주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 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하고, 별표(중전의 별표 2)와 별지 제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9.1.25., 2019.12.20., 2022.8.26.>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구성 현황(제7조제1항 관련)

분과 위원회	위원 인원	담당부서	주관부서	주요업무
학력분과	10명	더나은학력지원관, 정책기획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행정과	유초등교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언어발달 및 유치원 교육과정 지원</li> <li>○ (기초)학력 지원</li> <li>○ 한글, 수학, 외국어 교육</li> <li>○ 교육과정 운영 지원</li> <li>○ 대입 진학</li> </ul>
진로분과	10명	미래학교추진단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인성문화교육과, 미래체육특수교육과	중등교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직업교육</li> <li>○ 과학·정보교육</li> <li>○ 영재교육</li> <li>○ 미래교육 수업환경 구축</li> <li>○ 특수교육</li> </ul>
인성분과	10명	정책기획과, 교육지원과 중등교육과, 인성문화교육과	인성문화교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성교육</li> <li>○ 학교폭력예방·시민교육</li> <li>○ 체육교육</li> <li>○ 문화예술·독서·인문교육</li> </ul>
복지분과	10명	정책기획과, 안전복지과, 교육지원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인성문화교육과, 예산과, 행정과	안전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교육</li> <li>○ 돌봄·방과후학교</li> <li>○ 교육복지</li> <li>○ 보건·영양교육</li> <li>○ 학생·학교안전</li> <li>○ 재난안전·산업안전보건관리</li> </ul>
행정분과	10명	공보담당관, 감사관, 정책기획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인성문화교육과, 총무과, 예산과, 행정과, 시설과	시설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부모 활동 지원</li> <li>○ 지역교육협력·교육자치활성화</li> <li>○ 교육정책 및 주요업무</li> <li>○ 감사업무</li> <li>○ 참여예산제 운영</li> <li>○ 교직원 연수 및 지원업무</li> <li>○ 교육환경개선사업</li> <li>○ 학교 및 기관 여건개선사업</li> </ul>

【별지 제1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 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

신 청 자 인적사항	①성 명	한 글		②생년월일	③지역
		한 자			
	④주 소	자택 : (우: ) 직장 : (우: )			
	⑤연 락 처	일반전화 :                      휴대전화 : E-mail :			
구 분	⑥직 업	○ 직장명 : ○ 주요업무 :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족 <input type="checkbox"/> 재정·예산 전문가 <input type="checkbox"/> 학부모 <input type="checkbox"/> 시민사회단체		○ ○ ○			
해당란 V 표기	⑦주요경력 (구체적으로 작성)	자격증			

⑧분과위원회 희망분과	○ 1지망 :
	○ 2지망 :
	○ 3지망 :
① 학력분과    ② 진로분과    ③ 인성분과    ④ 복지분과    ⑤ 행정분과	

위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첨부 :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선정)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p>
<p>제2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인건비, 법정경비 등 경직성 경비와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 추진 사업에 한한다.</p>	<p>제2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 ----- 사업으로 한정한다.</p>
<p>제3조(예산편성 의견수렴) ①·② (생 략)  ③ 교육감은 주민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주민참여의 편의성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민 예산참여방을 운영한다.</p>	<p>제3조(예산편성 의견수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p>
<p>제4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운영) ① (생 략)  ② 제1항의 지역별 위원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③ (생 략)</p>	<p>제4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lt;삭 제&gt;  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위원 선정기준)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사람중에서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및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5명 이내에서 우선 선정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위원 정수에 포함한다.</p>	<p>제6조(위원 선정기준) ① -----사람 중----- ----- -----.</p>
<p>1. (생 략)  2.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다문화가족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대표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을 하는 사람</p>	<p>1. (현행과 같음)  2. ----- 「다문화가족지원법」 ----- -----</p>

② 제1항제1호의 재정·예산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3.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선정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선정 시 지역별로 배분된 위원 정수 보다 신청인의 수가 많을 때에는 지역별로 추첨에 의해 선정한다.

④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위원 비율이 40% 이상 되도록 노력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생략)

제9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분과위원회는 연중 필요시 마다 분과위원장이 별표 2의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소집한다.

② 주관부서는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분과위원회별 주관부서 주무담당이다.

③ (생략)

②

----- 사람이란

1. ~ 3. (현행과 같음)

③ ----- 우선 선정  
----- 위원 선정

<삭제>

제7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위원 중-----

③ (현행과 같음)

제9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분과위원회는 연중 필요시 마다 분과위원장이 별표의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소집한다.

②

----- 주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

③ (현행과 같음)

[붙임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견서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E-mail	
			연락처	
개정안		수정요구		수정사유
제0조(00)		제0조(00)		○ -

※ 참고자료:

시 군 행정

춘천시 고시 제2023-324호

춘천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중도남유원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춘천시 중도동 357번지 일원의 춘천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중도유원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제 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07일

춘 천 시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춘천시 중도동 357번지 일원 (변경없음)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
  - 가. 사업의 종류 : 춘천 도시계획시설(시설:유원지)사업
  - 나. 사업의 명칭 :
    - 기정 : 중도남유원지 기반시설공사(1단계), 중도남유원지 기반시설공사(2단계)
    - 변경 : 중도남유원지 기반시설공사(1단계), 중도남유원지 기반시설공사(2단계), 중도남유원지 기반시설공사(3단계)
- 3. 면적 또는 규모 (변경)
  - 가. 결정면적 : 916,989㎡ (변경없음)
  - 나. 인가면적 :
    - 기정 : 548,414㎡ (1단계 : 67,736.9㎡, 2단계 : 480,677.1㎡)
    - 변경 : 548,372.8㎡ (1단계 : 201,351.0㎡, 2단계 : 252,808.3㎡, 3단계 : 94,213.5㎡)
    -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조정
  - 다. 규 모 (변경없음)
    - 건축물에 관한 사항
      - 문화 및 집회시설(유적박물관): 1동, 1층, 건축면적 1,630㎡, 건축연면적 1,603.51㎡
      - 업무시설(통합관제센터): 1동, 1층, 건축면적 162.83㎡, 건축연면적 162.83㎡
-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주식회사 강원중도개발공사 대표 김준우  
나. 주 소 : 춘천시 상중도길 15-98, 2층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가.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나. 준공예정일

- 기 정 : 1단계 2023. 12. 31, 2단계 2025. 12. 31.

- 변 경 : 1단계 2023. 12. 31, 2단계 2024. 12. 31, 3단계 2026.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가. 토지조서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외 권리			비고
			본번	부번			계	1단계	2단계	3단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실시계획인가(기정) 계						666,808	548,414	67,736.9	480,677.1	-						
실시계획인가(변경) 계						550,108.0 (815,504)	548,372.8 (548,054)	201,351.0 (201,079)	252,808.3 (252,670)	94,213.5 (94,305)						
1	기정	중도동	312	8	전	38	38		38		강원도					
2	기정	중도동	312	10	전	55	55		55		강원도					
3	기정	중도동	314	1	전	20	20		20		강원도					
4	기정	중도동	314	7	전	93	93		93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역삼동)					
	변경	중도동	314	7	전	93	93		93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5	기정	중도동	314	8	전	329	329		329	강원도						
6	기정	중도동	314	12	전	39	39		39	강원도						
7	기정	중도동	314	13	전	105	105		105	강원도						
8	기정	중도동	328	0	전	411	411		223	188	강원도					
9	기정	중도동	328	1	전	25,135	25,135		25,135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변경	중도동	328	1	전	25,135	25,135	24,082	1,053	신영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	춘천신용 협동조합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57 (중앙로2가)	근저 당권		
10	기정	중도동	328	2	전	5,202	5,202		5,202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변경	중도동	328	2	전	5,202	5,202		5,087	115	강원중도	강원도 춘천시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의 권리			비고
			본번	부번			계	1단계	2단계	3단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개발공사	상중도길 15-98 (중도동)				
11	기정	중도동	328	3	전	5,750	5,750			5,750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변경	중도동	328	3	전	5,750	5,750			5,750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12	기정	중도동	328	4	전	176	176			176	강원도					
13	기정	중도동	328	5	전	7,574	7,574			7,574	강원도					
	변경	중도동	328	5	전	7,574	7,574	145	7,354	75	신영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	춘천신용 협동조합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57 (중앙로2가)	근저당 권	
14	기정	중도동	328	6	전	26	26			26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변경	중도동	328	6	전	26	26			26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15	기정	중도동	329	0	전	4,377	4,377			4,377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변경	중도동	329	0	전	4,377	4,377	4,377			신영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	춘천신용 협동조합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57 (중앙로2가)	근저당 권	
16	기정	중도동	336	2	유	42	42			42	강원도					
17	기정	중도동	336	6	전	52	52			52	강원도					
18	기정	중도동	336	7	전	29	29			29	강원도					
19	기정	중도동	336	11	전	126	126			126	강원도					
20	기정	중도동	338	2	대	19	19			19	강원도					
21	기정	중도동	342	1	도	594	594			594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변경	중도동	342	1	도	594	594	554	40		신영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	춘천신용 협동조합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57 (중앙로2가)	근저당 권	
22	기정	중도동	342	15	도	212	212			212	강원중도	강원도 춘천시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의 권리			비고	
			본번	부번			계	1단계	2단계	3단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개발공사	중앙로 16, 무림빌딩 6층(오선동)					
23	기정	중도동	342	18	천	13	13			13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 6층(오선동)					
24	기정	중도동	342	19	천	25	25			25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 6층(오선동)					
25	기정	중도동	342	20	천	45	45			45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 6층(오선동)					
26	기정	중도동	342	21	천	33	33			33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 6층(오선동)					
27	기정	중도동	351	6	천	119	119			119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 6층(오선동)					
28	기정	중도동	351	11	유	46	46			46	강원도						
29	기정	중도동	351	16	천	70	70			70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30	기정	중도동	351	34	유	60	60			60	강원도						
31	기정	중도동	357	0	천	13	13			13	강원도						
32	기정	중도동	357	1	천	1,163	1,163			1,163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변경	중도동	357	1	천	1,163	1,163			1,163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33	기정	중도동	357	3	천	1,524	1,524			1,524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변경	중도동	357	3	천	1,524	1,524			1,524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의 권리			비고		
			본번	부번			계	1단계	2단계	3단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34	기정	중도동	357	4	전	31,407	31,407		31,407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변경	중도동	357	4	전	31,407	31,407	30,437	970		신영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	춘천신용 협동조합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57 (중앙로2가)	근저당 권			
35	기정	중도동	357	6	전	302	302		302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변경	중도동	357	6	전	302	302		302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36	변경	중도동	357	7	전	853	11		11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 6층(요선동)						
											강원도개발공 사	강원도 춘천시 외솔길17 (석사동)						
37	변경	중도동	357	8	전	23,662	40		40		강원도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 6층(요선동)						
											강원도개발공 사	강원도 춘천시 외솔길17(석사동)						
38	변경	중도동	357	9	전	2,961	133		133		강원도							
											강원도개발공 사	강원도 춘천시 외솔길 17(석사동)						
39	기정	중도동	357	10	전	8,525	8,525		8,525		강원도							
40	기정	중도동	357	11	전	576	576		576		강원도							
41	기정	중도동	357	12	전	44	44		44		강원도							
42	기정	중도동	357	13	전	95	95		95		강원도							
43	기정	중도동	357	14	전	1,232	1,232		1,232		강원도							
44	기정	중도동	357	15	전	4,334	4,334	50	4,284		강원도							
45	기정	중도동	357	16	전	471	471		471		강원도							
46	기정	중도동	357	17	전	2,170	2,170		2,170		강원도							
47	기정	중도동	357	18	전	2,856	2,856		2,856		강원도							
48	기정	중도동	357	19	전	334	334		334		강원도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의 권리			비고	
			본번	부번			계	1단계	2단계	3단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49	기정	중도동	357	20	전	468	468		468			강원도					
50	기정	중도동	357	21	전	37	37		37			강원도					
51	기정	중도동	357	24	전	11,661	11,661		11,661			강원도					
52	기정	중도동	357	25	전	59	59		59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53	기정	중도동	357	26	전	1,338	1,338		1,338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변경	중도동	357	26	전	1,338	1,338		1,338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54	기정	중도동	357	27	전	1,986	1,986		1,986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변경	중도동	357	27	전	1,986	1,986	251	1,735			신영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	춘천신용 협동조합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57 (중앙로2가)	근저당 권	
55	기정	중도동	357	28	전	100	100		100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변경	중도동	357	28	전	100	100	7	93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56	기정	중도동	357	29	전	28	28		28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변경	중도동	357	29	전	28	28		28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57	기정	중도동	357	30	전	449	449		449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변경	중도동	357	30	전	449	449		449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58	기정	중도동	357	31	전	252	252		252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의 권리			비고	
			본번	부번			계	1단계	2단계	3단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변경	중도동	357	31	전	252	252		252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59	기정	중도동	357	32	전	5,133	5,133		5,133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변경	중도동	357	32	전	5,133	4,970		4,970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60	변경	중도동	357	33	전	2,596	48		48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외솔길 17(석사동)					
											강원도개발공 사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6층(요선동)					
61	기정	중도동	357	34	전	1,189	1,189		1,189		강원도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변경	중도동	357	34	전	1,189	1,181		1,181		강원도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62	기정	중도동	357	35	전	8,799	8,799		8,799		강원도						
63	기정	중도동	357	36	전	194	194		194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64	기정	중도동	357	37	전	170	170		170		강원도						
65	기정	중도동	357	38	전	862	862		862		강원도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66	기정	중도동	357	39	전	6,787	6,787		6,787		강원도						
67	기정	중도동	357	40	전	2,407	2,407		2,407		강원도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변경	중도동	357	40	전	2,407	2,401		2,401		강원도						
											강원중도	강원도 춘천시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의 권리			비고
			본번	부번			계	1단계	2단계	3단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개발공사	상중도길 15-98(중도동)				
68	기정	중도동	357	41	전	34,601	34,601			34,601	강원도					
69	기정	중도동	357	42	전	70	70			70	강원도					
70	변경	중도동	357	43	전	2,370	11			11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외솔길 17(석사동)				
											강원도개발공 사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6층(오선동)				
71	기정	중도동	357	44	전	237	237			237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72	기정	중도동	357	45	전	2,303	2,303			2,303	강원도					
73	기정	중도동	357	47	전	36	36			36	강원도					
74	기정	중도동	357	48	전	5,159	5,159			5,159	강원도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75	기정	중도동	362	4	도	22	22			22	강원도					
76	변경	중도동	362	6	도	262	7			7	강원도개발공 사	강원도 춘천시 외솔길 17(석사동)				
77	기정	중도동	362	7	도	239	239			239	강원도					
78	기정	중도동	362	8	도	216	216			216	강원도					
79	기정	중도동	362	9	도	45	45			45	강원도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변경	중도동	362	9	도	45	40			40	강원도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강원중도 개발공사					
80	기정	중도동	362	11	도	5	5			5	강원도					
81	기정	중도동	362	12	도	58	58			58	강원도	강원도 춘천시 외솔길 17(석사동)				
											강원도개발공 사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의 권리			비고	
			본번	부번			계	1단계	2단계	3단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82	기정	중도동	362	13	도	92	92		92			강원도					
83	기정	중도동	362	15	도	102	102		102			강원도					
84	기정	중도동	364	2	유	974	974		974			강원도					
85	기정	중도동	364	3	유	1,700	1,700		1,700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변경	중도동	364	3	유	1,700	1,700		1,700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86	기정	중도동	366	2	대	120	120		120			강원도					
87	기정	중도동	366	6	전	30	30		30			강원도					
89	기정	중도동	366	8	대	1,440	1,440		1,440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변경	중도동	366	8	대	1,440	1,440		1,440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90	기정	중도동	366	11	대	427	427		427			강원도					
91	기정	중도동	367	1	전	126	126		126			강원도					
92	기정	중도동	367	6	전	67	67		67			강원도					
93	기정	중도동	367	7	전	12	12		12			강원도					
94	기정	중도동	367	9	전	103	103		103			강원도					
95	기정	중도동	367	10	전	22	22		22			강원도					
96	기정	중도동	368	1	전	102	102		102			강원도					
97	기정	중도동	368	6	전	294	294		294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변경	중도동	368	6	전	294	294		294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98	기정	중도동	368	7	전	353	353		353			강원도					
99	기정	중도동	369	1	전	28	28		28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 6층(오선동)				
100	변경	중도동	372	2	전	1,318	16		16			강원중도	강원도 춘천시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의 권리			비고	
			본번	부번			계	1단계	2단계	3단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개발공사	외솔길 17(석사동)					
											강원도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 6층(오선동)					
101	기정	중도동	372	4	전	322	322			322	강원중도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102	기정	중도동	372	5	전	724	724			724	강원도						
											강원도						
103	기정	중도동	430	0	전	5,843	5,843	4,304		1,539	강원중도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강원도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외솔길 17(석사동)					
104	기정	중도동	430	1	전	1,000	1,000			1,000	강원중도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기정	중도동	430	2	전	2,810	2,810			2,810	강원중도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105	변경	중도동	430	2	전	2,810	2,749			1,269	1,480	강원중도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기정	중도동	430	3	전	29,195	29,195			29,195	-	강원도					
											강원중도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106	변경	중도동	430	3	전	29,195	29,184			29,184	29,184	강원중도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기정	중도동	430	4	전	1,029	1,029			1,029	-	강원중도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107	변경	중도동	430	4	전	1,029	1,005			594	411	강원중도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108	기정	중도동	430	5	전	345	345			345		강원도					
109	기정	중도동	430	6	전	31,840		11,586	14,858	5,396	강원중도	강원도 춘천시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의 권리			비고	
			본번	부번			계	1단계	2단계	3단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31,840					개발공사	상중도길 15-98 (중도동)				
110	기정	중도동	430	7	전	5,783	5,783			5,783		강원도					
111	기정	중도동	430	8	전	1,479	1,479	386		1,093		강원도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112	기정	중도동	430	9	전	1,583	1,583			1,583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113	기정	중도동	430	10	전	1,217	1,217			1,217		강원도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114	기정	중도동	430	11	전	19,583	19,583	15,558.0		4,025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115	기정	중도동	430	12	전	43	43			43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116	기정	중도동	430	13	전	390	390			390		강원도					
117	기정	중도동	430	14	전	1,093	1,093			1,093		강원도					
118	기정	중도동	430	15	전	1,327	1,327			1,327		강원도					
119	기정	중도동	430	16	전	2,326	2,326			1,780	546	강원도					
120	기정	중도동	430	17	전	89	89			89		강원도					
121	기정	중도동	430	18	전	255	255			255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변경	중도동	430	18	전	255	147			147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122	기정	중도동	430	20	전	1,544	1,544			1,544		강원도					
	변경	중도동	430	20	전	1,544	1,530			1,530		강원도					
123	변경	중도동	430	21	전	36	10			10		강원도					
124	변경	중도동	430	22	전	6,215	174	132		42		강원도개발공 사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 6층(오선동)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의 권리			비고
			본번	부번			계	1단계	2단계	3단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25	기정	중도동	430	24	전	581	581		581		강원도					
126	기정	중도동	430	26	전	80	80		80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강원도개발공 사	강원도 춘천시 외솔길 17(석사동)				
	변경	중도동	430	26	전	80	4		4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강원도개발공 사	강원도 춘천시 외솔길 17(석사동)				
127	변경	중도동	430	30	전	262	37	37			강원도개발공 사	강원도 춘천시 외솔길 17(석사동)				
128	기정	중도동	430	31	전	7,652	7,652		7,652	-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변경	중도동	430	31	전	7,652	7,446		2,104	5,342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129	변경	중도동	430	32	전	22,367	412	325	87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외솔길 17(석사동)				
											강원도개발공 사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6층(요선동)				
130	기정	중도동	430	37	전	1,280	1,280		1,280		강원도					
131	기정	중도동	436	0	대	185	185			185	강원도					
132	기정	중도동	436	3	대	620	620		620	-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강원도개발공 사	강원도 춘천시 외솔길 17(석사동)				
	변경	중도동	436	3	대	620	605		302	303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강원도개발공 사	강원도 춘천시 외솔길 17(석사동)				
133	기정	중도동	439	1	대	125	125		125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변경	중도동	439	1	대	125	46		46		강원중도	강원도 춘천시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의 권리			비고
			본번	부번			계	1단계	2단계	3단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개발공사	상중도길 15-98 (중도동)				
134	기정	중도동	439	3	대	490	490			490	강원도					
135	기정	중도동	439	4	대	757	757			757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변경	중도동	439	4	대	757	745			449	296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136	기정	중도동	439	5	대	289	289			289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변경	중도동	439	5	대	289	289			289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137	기정	중도동	439	6	대	6	6			6	강원도					
138	기정	중도동	439	7	대	1,271	1,271			342	929	강원도				
139	기정	중도동	441	1	전	442	442			442	강원도					
140	기정	중도동	441	2	천	1,005	1,005			1,005	-	강원도				
	변경	중도동	441	2	천	1,005	960			950	10	강원도				
141	기정	중도동	441	7	천	187	187			187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 6층(요선동)				
142	기정	중도동	441	10	천	8	8			8	강원도					
143	기정	중도동	444	5	천	808	808			808	강원도					
144	기정	중도동	448	0	천	935	935			935	-	강원도				
	변경	중도동	448	0	천	935	866			566	300	강원도				
145	기정	중도동	448	9	천	109	109			109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 6층(요선동)				
146												강원도				
	기정	중도동	450	7	천	1,230	1,230			1,230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변경	중도동	450	7	천	1,230	1,230	877	353			강원도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의 권리			비고
			본번	부번			계	1단계	2단계	3단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신영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				
147	기정	중도동	460	0	전	82,112	4,575	-	4,575	-	강원도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변경	중도동	460	0	전	82,112	4,353	728	3,189	436	강원도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신영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					
148	기정	중도동	460	1	전	3,045	3,045	3,045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149	기정	중도동	460	2	전	14,090	14,090	6,650	7,440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코리아 신탁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해성2빌딩)				
	변경	중도동	460	2	전	14,090	14,090	7,208	6,872	10	코리아 신탁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해성2빌딩)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150	기정	중도동	460	3	전	77	77		77	강원도						
151	기정	중도동	460	4	전	116	116		116	-	강원도					
	변경	중도동	460	4	전	116	69		69	강원도						
152	기정	중도동	460	5	전	17,124	17,124	10,990	1,499	4,635	강원도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153	기정	중도동	460	6	전	38	38		38	강원도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의 권리			비고	
			본번	부번			계	1단계	2단계	3단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54	기정	중도동	460	7	전	2,421	2,421		2,421			강원도					
	변경	중도동	460	7	전	2,421	2,421	1,867	554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155	기정	중도동	460	8	전	53	53		35	18		강원도					
	변경	중도동	460	8	전	53	53		35	18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156	기정	중도동	460	9	전	4,540	4,540	-	4,540			강원도					
	변경	중도동	460	9	전	4,540	4,431	2,712	1,719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159	기정	중도동	460	12	전	958	958	89	869			신영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변경	중도동	460	12	전	958	958	60	174	724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160	기정	중도동	460	13	전	581	581		581			신영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변경	중도동	460	13	전	581	581		58	523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161	기정	중도동	460	14	전	2,196	2,196	249	1,947			신영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변경	중도동	460	14	전	2,196	2,196	249	1,947			코리아 신탁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의 권리			비고
			본번	부번			계	1단계	2단계	3단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0층(해성2빌딩)				
	변경	중도동	460	14	전	2,196	2,196	231	1,904	61	코리아 신탁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 (해성2빌딩)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162	변경	중도동	460	19	전	1,748	208		208		강원도					
											강원도					
	기정	중도동	460	20	전	28,703	27,604	8,416	19,188	-	강원도개발공 사	강원도 춘천시 외솔길 17(석사동)				
	변경	중도동	460	20	전	28,703	27,591	8,839	278	18,47 4	강원도개발공 사	강원도 춘천시 외솔길 17(석사동)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기정	중도동	460	21	전	36	36		36	-	강원도개발공 사	강원도 춘천시 외솔길 17(석사동)				
	변경	중도동	460	21	전	36	7			7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강원도개발공 사	강원도 춘천시 외솔길 17(석사동)				
165	변경	중도동	460	22	전	236	46	46			강원도개발공 사	강원도 춘천시 외솔길 17(석사동)				
166	변경	중도동	460	23	전	224	37	37			강원도개발공 사	강원도 춘천시 외솔길 17(석사동)				
167	변경	중도동	460	24	전	101	43	43			강원도개발공 사	강원도 춘천시 외솔길 17(석사동)				
168	기정	중도동	472	3	대	332	332			332	강원도					
	기정	중도동	472	4	대	761	761			761	-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변경	중도동	472	4	대	761	708			708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170	기정	중도동	472	5	대	66	66			66	강원도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의 권리			비고	
			본번	부번			계	1단계	2단계	3단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71	기정	중도동	472	6	대	205	205	205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172	변경	중도동	472	7	대	169	38	38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외솔길 17(석사동)					
											강원도개발공 사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6층(요선동)					
173	기정	중도동	473	2	천	14	14	14		-	강원도						
	변경	중도동	473	2	천	14	5			5	강원도						
174	기정	중도동	481	2	대	727	727	348	379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175	기정	중도동	481	3	대	452	452		452	-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변경	중도동	481	3	대	452	390			390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176	변경	중도동	481	4	대	222	40	28	12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외솔길 17(석사동)					
											강원도개발공 사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6층(요선동)					
177	기정	중도동	486	1	대	250	250	250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178	기정	중도동	486	4	대	1,003	1,003	1,003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179	기정	중도동	488	2	대	49	49		49		강원도						
180	기정	중도동	488	3	대	278	278		278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181	기정	중도동	489	2	대	347	347		347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182	기정	중도동	490	2	대	605	605		605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의 권리			비고	
			본번	부번			계	1단계	2단계	3단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83	기정	중도동	493	0	대	5,359	5,359		191	5,168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184	기정	중도동	493	1	도	830	830		343	487	강원도						
185	기정	중도동	493	2	도	3	3			3	강원도						
186	기정	중도동	493	4	도	78	78			78	강원도						
187	기정	중도동	493	5	도	44	44			44	강원도						
188	기정	중도동	493	6	도	22	22			22	강원도						
189	기정	중도동	493	8	도	80	80			80	강원도						
190	기정	중도동	493	9	도	28	28			28	강원도						
191	기정	중도동	493	10	도	23	23			23	강원도						
192	기정	중도동	493	11	도	64	64			64	강원도						
193	기정	중도동	493	12	도	9	9			9	강원도						
194	기정	중도동	493	13	도	24	24			24	강원도						
195	기정	중도동	493	14	도	27	27			27	강원도						
196	기정	중도동	493	15	도	37	37			37	강원도						
197	기정	중도동	493	16	도	64	64			64	강원도						
198	기정	중도동	493	17	도	30	30			30	강원도						
199	기정	중도동	493	18	도	152	152			152	강원도						
200	기정	중도동	493	19	도	17	17			17	강원도						
201	기정	중도동	497	2	대	618	618			618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202	기정	중도동	499	0	대	1,116	1,116			1,116	강원도						
203	기정	중도동	499	1	대	64	64			64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변경	중도동	499	1	대	64	64			64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204	기정	중도동	502	2	대	417	417			417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205	기정	중도동	503	2	대	360	360	148	199	13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의 권리			비고
			본번	부번			계	1단계	2단계	3단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중도동)				
206	기정	중도동	509	2	대	463	463		60	403	강원도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207	기정	중도동	510	0	대	367	367	367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208	기정	중도동	510	1	대	205	205	205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변경	중도동	510	1	대	205	205	205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209	기정	중도동	512	3	대	509	509	165	278	66	강원도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210	기정	중도동	512	4	전	88	88			88	강원도					
211	기정	중도동	512	6	전	65	65		65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변경	중도동	512	6	전	65	65		19	46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212	기정	중도동	512	7	전	15	15		15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변경	중도동	512	7	전	15	15		2	13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213	기정	중도동	514	0	대	308	308			308	강원도					
214	기정	중도동	514	1	대	390	390			390	강원도					
215	기정	중도동	516	0	전	417	417			417	강원도					
216	기정	중도동	516	1	전	348	348		348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변경	중도동	516	1	전	348	348			348	강원중도	강원도 춘천시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의 권리			비고
			본번	부번			계	1단계	2단계	3단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개발공사	상중도길 15-98 (중도동)				
217	기정	중도동	516	2	전	6	6		6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변경	중도동	516	2	전	6	6		6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218	기정	중도동	516	3	전	1,221	1,221		1,221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변경	중도동	516	3	전	1,221	1,221		1,221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219	기정	중도동	516	4	전	252	252		252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변경	중도동	516	4	전	252	252		252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220	기정	중도동	516	5	전	45	45		45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변경	중도동	516	5	전	45	45		45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221	기정	중도동	516	6	전	529	529		529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변경	중도동	516	6	전	529	529		529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222	기정	중도동	517	5	전	52	52		52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223	기정	중도동	518	0	대	55	55		55		강원도					
224	기정	중도동	518	1	대	2	2		2		강원도					
225	기정	중도동	518	2	대	89	89		89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변경	중도동	518	2	대	89	89		89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의 권리			비고
			본번	부번			계	1단계	2단계	3단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중도동)				
226	기정	중도동	518	3	대	509	509			509	강원도					
227	기정	중도동	519	0	전	159	159			159	강원도					
228	기정	중도동	519	1	전	3,532	3,532			3,532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변경	중도동	519	1	전	3,532	3,532		218	3,314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229	기정	중도동	519	2	전	1,022	1,022			386	636	강원도				
230	기정	중도동	519	3	전	78	78				78	강원도				
231	기정	중도동	519	4	전	1,819	1,819			296	1,523	강원도				
232	기정	중도동	520	8	도	27	27				27	강원도				
233	기정	중도동	520	10	전	311	311				311	강원도				
234	기정	중도동	520	13	전	65	65				65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 6층(요선동)			
235	기정	중도동	520	14	전	42	42				42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 6층(요선동)			
236	기정	중도동	520	15	도	176	176				176	강원도				
237	기정	중도동	522	3	전	37	37				37	강원도				
238	기정	중도동	522	4	전	55	55				55	강원도				
239	기정	중도동	523	0	대	702	702			702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변경	중도동	523	0	대	702	702			702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240	기정	중도동	523	1	대	29	29			29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변경	중도동	523	1	대	29	29			29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241	기정	중도동	524	7	대	337	337			337	강원중도	강원도 춘천시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의 권리			비고
			본번	부번			계	1단계	2단계	3단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개발공사	상중도길 15-98 (중도동)				
242	기정	중도동	525	0	대	1,661	1,661		1,661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변경	중도동	525	0	대	1,661	1,661		1,661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243	기정	중도동	525	1	대	99	99		99		강원도					
244	기정	중도동	525	3	대	126	126		126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변경	중도동	525	3	대	126	126		126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245	기정	중도동	525	4	대	45	45		45		강원도					
246	기정	중도동	526	0	전	40	40		40		강원도					
247	기정	중도동	526	2	전	3,982	3,982		3,982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변경	중도동	526	2	전	3,982	3,982		3,982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248	기정	중도동	526	3	전	1,853	1,853		1,853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변경	중도동	526	3	전	1,853	1,853		1,853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249	기정	중도동	527	1	전	100	100		100		강원도					
250	기정	중도동	527	8	전	1	1		1		강원도					
251	기정	중도동	528	1	전	132	132		132		강원도					
252	기정	중도동	528	3	대	121	121		121		강원도					
253	기정	중도동	528	8	전	113	113		113		강원도					
254	기정	중도동	529	7	전	403	403		276	127	강원도					
255	기정	중도동	531	0	전	45	45			45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 6층(요선동)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의 권리			비고		
			본번	부번			계	1단계	2단계	3단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256	기정	중도동	531	3	천	25	25				25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 6층(요선동)					
257	기정	중도동	531	4	천	5	5				5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 6층(요선동)					
258	기정	중도동	531	5	천	51	51				51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 6층(요선동)					
259	기정	중도동	531	6	천	126	126				126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 6층(요선동)					
260	기정	중도동	535	0	천	41	41				41	강원도						
261	기정	중도동	535	5	천	28	28				28	강원도						
262	기정	중도동	535	6	천	35	35				35	강원도						
263	기정	중도동	535	8	천	30	30				30	강원도						
264	기정	중도동	535	9	천	11	11				11	강원도						
265	기정	중도동	543	1	천	113	113			65	48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 6층(요선동)					
266	기정	중도동	543	3	천	29	29			13	16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 6층(요선동)					
267	기정	중도동	543	9	천	9	9			9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 6층(요선동)					
268	기정	중도동	544	1	대	61	61			61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 6층(요선동)					
269	기정	중도동	544	3	천	78	78				78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 6층(요선동)					
270	기정	중도동	545	1	천	65	65				65	강원중도	강원도 춘천시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의 권리			비고	
			본번	부번			계	1단계	2단계	3단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개발공사	상중도길 15-98 (중도동)					
271	기정	중도동	545	4	전	21	21		21		강원도						
272	기정	중도동	545	6	전	72	72		72		강원도						
273	기정	중도동	546	1	대	64	64		64		강원도						
274	기정	중도동	546	4	대	17	17		17		강원도						
275	기정	중도동	546	6	대	100	100		100		강원도						
											강원도						
276	기정	중도동	550	3	전	580	580	403	177		코리아 신탁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해성2빌딩)					
											강원도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해성2빌딩)					
277	기정	중도동	550	5	전	443	443	379	64		코리아 신탁주식회사						
											강원도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해성2빌딩)					
278	기정	중도동	560	0	전	25	25		25		강원도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기정	중도동	560	1	전	1,186	1,186		1,186		코리아 신탁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해성2빌딩)					
279											코리아 신탁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해성2빌딩)					
	변경	중도동	560	1	전	1,186	1,186	1,181	5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280	기정	중도동	560	2	전	2,827	2,827		2,827		코리아 신탁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해성2빌딩)					
											코리아 신탁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해성2빌딩)					
	변경	중도동	560	2	전	2,827	2,827	1,487	1,340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의 권리			비고
			본번	부번			계	1단계	2단계	3단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중도동)				
281	기정	중도동	560	3	전	85	85	85			코리아 신탁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해성2빌딩)				
282	변경	중도동	560	4	전	50,662	38		38		강원도					
283	변경	중도동	560	5	전	4,475	383	119	264		강원도					
284	기정	중도동	567	11	전	299	299		299		강원도					
285	기정	중도동	567	12	전	556	556		556		강원도					
	변경	중도동	567	12	전	556	447		447		강원도					
286	기정	중도동	568	1	전	41	41		41		강원도					
287	기정	중도동	568	4	전	498	498		498		강원도					
288	기정	중도동	568	5	전	1,642	1,642		1,642		강원도					
	변경	중도동	568	5	전	1,642	1,311		1,311		강원도					
289	기정	중도동	568	6	전	140	140		140		강원도					
290	기정	중도동	590	0	전	2,193	2,193	1,205	988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 6층(요선동)					
										코리아 신탁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해성2빌딩)					
291	기정	중도동	590	1	잡	178	178		158	20	강원도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292	기정	중도동	590	4	전	183	183	183			코리아 신탁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해성2빌딩)				
293	기정	중도동	590	5	잡	30	30		30		강원도					
294	기정	중도동	590	6	잡	2	2		2		강원도					
295	기정	중도동	590	8	잡	56	56	56			코리아 신탁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해성2빌딩)				
296	기정	중도동	590	12	잡	55	55	55			코리아 신탁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해성2빌딩)				
297	기정	중도동	590	14	잡	92	92	83	9		강원도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의 권리			비고	
			본번	부번			계	1단계	2단계	3단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코리아 신탁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해성2빌딩)					
298	기정	중도동	590	15	잡	56	43		43		강원도						
299	기정	중도동	590	16	잡	6	6		6		강원도						
300	변경	중도동	590	17	전	1,059	199		199		강원도						
301	변경	중도동	590	18	잡	451	30	11	19		강원도						
302	기정	중도동	591	1	전	427	427	418	9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 6층(요선동)						
										코리아 신탁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해성2빌딩)						
303	기정	중도동	591	4	전	52	52		52		코리아 신탁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해성2빌딩)					
304	기정	중도동	594	1	전	702	702	81	621		강원도						
										코리아 신탁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해성2빌딩)						
305	기정	중도동	594	6	전	15	15		15		코리아 신탁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해성2빌딩)					
306	기정	중도동	594	9	전	137	137	94	43		강원도						
										코리아 신탁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해성2빌딩)						
307	기정	중도동	594	10	전	689	689	440	249		강원도						
										코리아 신탁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해성2빌딩)						
308	변경	중도동	594	11	전	172	80		80		강원도						
309	기정	중도동	595	1	원	5,074	2,075	-	2,075		강원도						
										코리아 신탁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해성2빌딩)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의 권리			비고
			본번	부번			계	1단계	2단계	3단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변경	중도동	595	1	원	5,074	2,705	1,641	1,064		강원도					
											코리아 신탁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해성2빌딩)				
310	변경	중도동	595	7	유	7,279	3		3		강원도					
311	기정	중도동	595	8	원	1,624	1,351		1,351		강원도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변경	중도동	595	8	원	1,624	1,099		1,099		강원도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312	변경	중도동	603	0	원	14,749	1	1			강원도					
313	기정	중도동	603	1	원	24	24		24		강원도					
314	기정	중도동	603	5	원	8	8		8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315	기정	중도동	603	7	원	3,614	28		28		강원도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변경	중도동	603	7	원	3,614	-				강원도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316	기정	중도동	603	9	원	4,723	1,302		1,302		강원도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변경	중도동	603	9	원	4,723	1,367		1,367		강원도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317	기정	중도동	603	10	원	40	40		40		강원도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의 권리			비고
			본번	부번			계	1단계	2단계	3단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318	기정	중도동	603	12	원	23	18		18		강원도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변경	중도동	603	12	원	23	2		2		강원도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319	기정	중도동	603	13	원	4	4		4		강원도					
320	기정	중도동	603	14	원	59	59		59		강원도					
321	기정	중도동	603	15	원	2,723	1,002		1,002		강원도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변경	중도동	603	15	원	2,723	766		766		강원도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322	기정	중도동	603	20	원	3,570	8		8		강원도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 6층(요선동)				
	변경	중도동	603	20	원	3,570	-				강원도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 6층(요선동)				
323	기정	중도동	606	2	천	19,314	3,695	-	3,695		강원도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변경	중도동	606	2	천	19,314	3,535	1,226	2,309		강원도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324	기정	중도동	612	0	천	10,803	10,803	-	10,803		강원도					
											강원중도	강원도 춘천시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의 권리			비고
			본번	부번			계	1단계	2단계	3단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변경	중도동	612	0	천	10,803	10,703	7,694	3,009	개발공사	상중도길 15-98 (중도동)					
										강원도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325	기정	중도동	612	5	천	1,512	1,512	529	983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326	기정	중도동	612	7	천	563	563		563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 6층(요선동)					
327	기정	중도동	612	14	천	91	91	91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328	기정	중도동	612	15	천	296	296	256	40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329	기정	중도동	612	16	천	2,660	147	147		국(기획재정부 )						
	변경	중도동	612	16	천	2,660	-			국(기획재정부 )						
330	기정	중도동	612	17	천	2,060	2,060		2,060	강원도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 6층(요선동)					
	변경	중도동	612	17	천	2,060	2,034		2,034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 6층(요선동)					
331	변경	중도동	612	18	천	4,045	5		5	강원도						
332	변경	중도동	612	20	천	202	109		109	강원도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 6층(요선동)					
333	기정	중도동	612	21	천	162	162		162	강원중도	강원도 춘천시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의 권리			비고	
			본번	부번			계	1단계	2단계	3단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개발공사	상중도길 15-98 (중도동)				
334	기정	중도동	612	22	천	143	143			143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335	기정	중도동	612	23	천	61	61			61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변경	중도동	612	23	천	61	6			6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336	기정	중도동	624	0	천	30	30			30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 6층(요선동)				
337	기정	중도동	632	0	천	1,958	1,958			1,958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 6층(요선동)				
338	기정	중도동	632	9	천	145	145			145		강원도					
339	기정	중도동	632	10	천	179	179			179		강원도					
340	기정	중도동	650	0	천	10,159	10,159	7,362		2,797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341	기정	중도동	650	3	천	1,311	1,311	1,113		198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342	기정	중도동	650	10	천	1,070	1,070			1,070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 6층(요선동)				
343	기정	중도동	654	0	천	15,184	15,184	10,080		5,104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344	기정	중도동	654	3	천	49	49			49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 6층(요선동)				
345	기정	중도동	654	4	천	391	391			391		강원도					
346	기정	중도동	654	8	천	36	36			36		강원도					
347	기정	중도동	654	9	천	590	590			590		강원도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의 권리			비고	
			본번	부번			계	1단계	2단계	3단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348	기정	중도동	654	10	천	1,270	1,270		1,270			강원도					
349	기정	중도동	654	11	천	24	24	24			강원도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350	기정	중도동	654	12	천	537	537	49	488		강원도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351	기정	중도동	661	0	천	11,631	11,631	11,413	218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352	기정	중도동	661	1	천	12	12		12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 6층(요선동)				
353	기정	중도동	664	0	천	17,163	17,163	17,142	21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354	기정	중도동	664	1	천	95	95		95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 6층(요선동)				
355	기정	중도동	664	3	천	6,550	4,641	-	4,641		강원도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355	변경	중도동	664	3	천	6,550	4,510	1,640	2,870		강원도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356	기정	중도동	705	4	천	7	7		7			강원도					
357	기정	중도동	705	14	천	1	1		1			강원도					
358	기정	중도동	707	0	천	5,342	1,270		1,270		강원도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358	변경	중도동	707	0	천	5,342	1,131		1,131		강원도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의 권리			비고	
			본번	부번			계	1단계	2단계	3단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359	기정	중도동	707	5	천	661	596		596		강원도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변경	중도동	707	5	천	661	566		566		강원도						
											강원중도 개발공사	강원도 춘천시 상중도길 15-98 (중도동)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춘천시 공고 제2023-1513호

춘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안) 열람공고

춘천시 고시 제2023-278호(2023. 6. 9.)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된 동내면 학곡리 856번지 일원의 춘천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안)을 열람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춘 천 시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856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 종류 : 춘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 나. 사업의 명칭 : 춘천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주차시설 조성)
- 3. 면적 또는 규모
  - 가. 면 적 : 6,083.9㎡
  - 나. 규 모 : 주차장 조성 A=6,083.9㎡
-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춘천시장
  - 나. 주 소 : 춘천시 시청길 11 (옥천동)
-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5일 후
  - 나. 준공예정일 : 2023. 12. 31.
- 6. 열람의 일시 및 장소
  - 가. 일 시 : 2023. 7. 7. ~ 2023. 7. 24.(17일간)
  - 나. 장 소 : 춘천시청 도시계획과(☎033-250-3175)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가.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외 권리			비고
					결정 면적	기타 면적	합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1	동내면 학곡리	108-20	전	6	0.3		0.3	춘천시					
2	"	108-15	전	292	18.7		18.7	춘천시					
3	"	567-21	구	228	47		47	춘천시					
4	"	산61	임	4,146	3,961.5		3,961.5	춘천시					
5	"	101-25	임	3,778	1,367.4		1,367.4	춘천시					
6	"	848	차	64,253.1	25		25	춘천시					
7	"	856	잡	924.2	664		664	춘천시					
합 계					6,083.9		6,083.9						

나. 지장물조서 : 해당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춘천시 공고 제2023-1514호

춘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류765호선)사업 실시계획(안) 열람공고

춘천시 고시 제2016-446호(2016.12.8.)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된 교동 4-2번지 일원의 춘천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류765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안)을 열람 공고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 시행 지구안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공람기간 내에 춘천시청 도시계획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7일

춘 천 시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춘천시 교동 4-2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 종류 : 춘천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류765호선)사업
  - 나. 사업의 명칭 : 한림대학교병원 앞 도시계획도로(소로3류765호선) 정비사업
- 3. 면적 또는 규모
  - 가. 면적 : 241㎡
  - 나. 규모 : 도로정비 B=6.0m, L=40.8m
-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춘천시장
  - 나. 주 소 : 춘천시 시청길 11 (옥천동)
-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5일 후
  - 나. 준공예정일 : 2025. 12. 31.
- 6. 열람의 일시 및 장소
  - 가. 일 시 : 2023. 7. 7. ~ 2023. 7. 24.(17일간)
  - 나. 장 소 : 춘천시청 도시계획과(☎033-250-3175)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가.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외 권리			비고
					결정 면적	기타 면적	합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1	교동	4-2	대	4,520	178		178	학교법인 일송학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94-195				
2	"	14-79	도	52	52		52	강원도					
3	"	14-78	도	11	11		11	강원도					
합 계					241		241						

나. 지장물조서 : 해당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원주시 고시 제2023-256호

원주 도시계획시설(소로1-201호, 소로2-545호)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원주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86조 제6항, 시행규칙 제14조 및 같은 법 제91조,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7일

원 주 시 장

□ 사업시행자(변경3차) 지정(국토계획법 제86조)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원주시 단구동 837-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원주 도시계획시설(소로1-201호, 소로2-545호)사업
- 명칭 : 원주 단관지구 베르뉴타운(2차) 기반시설(도로) 조성사업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이지더원산업개발 대표 정상구
- 주소 : 원주시 지정면 무릉로 5, 202호(베르뉴스퀘어)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결정폭원(m)	연장(m)	금회시행	향후시행(m)	비고
소로1-201호	10	167	B=10m, L=29m	-	
소로2-545호	8	402	B=8m, L=136m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2023. 6. 23.

□ 실시계획(변경3차)인가(국토계획법 제88조)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원주시 단구동 837-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원주 도시계획시설(소로1-201호, 소로2-545호)사업

○ 명칭 : 원주 단관지구 베르뉴타운(2차) 기반시설(도로) 조성사업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이지더원산업개발 대표 정상구

○ 주소 : 원주시 지정면 무릉로 5, 202호(베르뉴스퀘어)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결정폭원(m)	연장(m)	금회시행	향후시행(m)	비고
소로1-201호	10	167	B=10m, L=29m	-	
소로2-545호	8	402	B=8m, L=136m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있음)

○ (기정) 2020. 11. 27. ~ 2023. 06. 30.

(변경) 2020. 11. 27. ~ 2023.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붙임)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토지포함) 및 지하시설물 등

■ 토지조서

○소로1-201호

일 련 번 호	토지소재지		지 목	지적 (m2)	편입 면적 (m2)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소재지	지번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 외의권리 의종류및 내용	
6	원주시 단구동	851-15	임	637	289	원주시 능라동길 42, 505호(무실동)	(주)이지더원 산업개발	원주시 중앙로 118(중앙동)	원주신용 협동조합	근저당권	
계				637	289						

○소로2-545호

일 련 번 호	토지소재지		지 목	지적 (m2)	편입 면적 (m2)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소재지	지번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 외의권리 의종류및 내용	
1	원주시 단구동	837-5	임	269	269	원주시 능라동길 42, 505호(무실동)	(주)이지더원 산업개발	원주시 중앙로 118(중앙동)	원주신용 협동조합	근저당권	
2	원주시 단구동	837-10	답	80	80	원주시 능라동길 42, 505호(무실동)	(주)이지더원 산업개발	원주시 중앙로 118(중앙동)	원주신용 협동조합	근저당권	
3	원주시 단구동	851-15	임	637	348	원주시 능라동길 42, 505호(무실동)	(주)이지더원 산업개발	원주시 중앙로 118(중앙동)	원주신용 협동조합	근저당권	
4	원주시 단구동	868	전	8	8	원주시 능라동길 42, 505호(무실동)	(주)이지더원 산업개발	원주시 중앙로 118(중앙동)	원주신용 협동조합	근저당권	
5	원주시 단구동	산113-5 8	임	374	374	원주시 능라동길 42, 505호(무실동)	(주)이지더원 산업개발	원주시 중앙로 118(중앙동)	원주신용 협동조합	근저당권	
계				1,368	1,079						

원주시 고시 제2023-260호

원주 도시계획시설(중로3-302호, 중로3-303호, 소로3-3002호, 주차장307호)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원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7일

원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92-10번지 일원(반계리 은행나무 남측)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원주 도시계획시설(중로3-302호, 중로3-303호, 소로3-3002호, 주차장307호)사업
- 명칭: 반계리 은행나무광장 주차장 및 진입로 개설공사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원주시장(관광과)
- 주소: 원주시 시청로 1(무실동)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결정폭원(m)	연장(m)	금회시행(m)	비고
중로3-302호	12	63	B=12m, L=63m	
중로3-303호	12	162	B=12m, L=162m	
소로3-3002호	4	140	B=4m, L=134.1m	

구분	결정면적(m <sup>2</sup> )	금회시행(m <sup>2</sup> )	비고
주차장307호	5397	5397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2024.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 토지조서

(중로 3-302)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m2)	편입 면적 (m2)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소재지	지번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91-6	구	327.00	327.0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 공사				
2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92-1 0	전	480.00	480.00	경기도 하남시 하남유니온로 10, 103동 1906호(신장동, 하남호반써밋에듀파크)	이관섭				
3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98-1 2	전	360.00	80.00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계				1,167	887						

(중로 3-303)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m2)	편입 면적 (m2)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소재지	지번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98-12	전	360.00	280.00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2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96-24	전	108.00	108.00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3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96-27	전	209.00	209.00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4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94-2	전	168.00	168.00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산40	원정식				
5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96-26	전	559.00	559.00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6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496-3	전	624.00	624.00	경기도 광주시 경안천로 91, 101동 402호(송정동,송정우 림필유)	서명숙				
계				2,028	1,948						

(소로 3-3002)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m2)	편입 면적 (m2)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소재지	지번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495-4	도	5.00	1.00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2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96-2 3	전	36.00	36.00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3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672-2	도	79.00	79.00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건설부				
4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495-3	도	10.00	5.00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5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496-6	전	153.00	153.00	경기도 광주시 경충대로 1422번길 41, 104동901호(쌍령동, 쌍령현대아파트)	서명자				
6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496-4	전	143.00	143.00	경기도 광주시 경안천로 91, 101동 402호 (송정동,송정우림필유 )	서명숙				
7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94-3	전	119.00	119.00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산40	원정식				
계				545	536						

(주차장 307)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m2)	편입 면적 (m2)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소재지	지번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96-10	전	1,032.00	1,032.00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2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98-6	전	2,020.00	2,020.00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				
3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92-1	전	580.00	580.00	경기도 하남시 하남유니온로 10, 103동 1906호(덕풍동, 휴먼시아 꽃피마을2단지)	이관섭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시장 1길 19	문막농 업협동 조합	지상권 설정	
4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91-4	구	1,492.00	1,492.0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 공사				
5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92-11	전	172.00	172.00	원주시 남산로 120(일산동)	이용섭				
						원주시 시청로90, 202동 1201호 (무실동, 뜨란채아파트)	이명섭				
6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91-1	유	80.00	80.0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 공사				
7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92-4	전	35.00	35.0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 공사				
계				5,411	5,411						

■ 지장물조서  
(중로 3-302)

순번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91-6	웬스	H=1.6m	8.5	m	원주시 문막읍 원문로 2298	삼성전자 원주물류센터				
2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91-6	보도블록포장	-	33.4	m2	원주시 문막읍 원문로 2298	삼성전자 원주물류센터				
3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91-6	흡연 부스 (정자)	3.5x3.9m	1	동	원주시 문막읍 원문로 2298	삼성전자 원주물류센터				
4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91-6	가설 창고	판넬	7.1	m2	원주시 문막읍 원문로 2298	삼성전자 원주물류센터				

(중로 3-303)

순번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96-24	전력주	-	1	EA	원주시 우산로 122	한국전력				
2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96-24	관정	-	1	EA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119	장기홍				
3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96-26	수목	R15	195	주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119	이명우				

(소로 3-3002)

순번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496-6	전력주		1	EA	원주시 우산로 122	한국전력				
2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496-6	통신주		1	EA	원주시 단구동 702	KT강원본부 원주지사				
3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496-4	통신주		1	EA	원주시 단구동 702	KT강원본부 원주지사				
4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496-6	차단봉		2	EA	경기도 광주시 경충대로 1422번길 41, 104동901호(쌍령동, 쌍령현대아파트)	서명자				
5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94-3	대문		1	EA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산40	원정식				
6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496-23	수목	R6	2	주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96-2	김문자, 박조원				

(주차장 307)

순 번	지 번	물 건 의 종 류	구 조 및 규 격	수 량	단 위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의 종 류 및 내 용	
1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91-4	통신주		1	EA	원주시 단구동 702	KT강원본부 원주지사				
2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96-10	담장		15	m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119	장기홍				

원주시 공고 제2023-2014호

원주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23호,경관녹지46호)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원주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를 실시하고 주민·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7일

원 주 시 장

□ 사업시행자(변경1차) 지정(국토계획법 제86조)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원주시 무실동 1816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원주 도시계획시설사업
- 명칭 : 원주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23호,경관녹지46호)사업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원주시장 / 중앙근린공원개발 주식회사
-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 /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3, 403호(무실동, 로얄타워)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있음)

- 면적  
(기정)3,746.0㎡(근린공원23호 3,442.5㎡, 경관녹지46호 303.5㎡)  
(변경)4,124.9㎡(근린공원23호 3,821.4㎡, 경관녹지46호 303.5㎡)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2023.06.29.(접수일)

□ 실시계획(변경1차)인가(국토계획법 제88조)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원주시 무실동 1816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원주 도시계획시설사업

○ 명칭 : 원주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23호,경관녹지46호)사업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원주시장 / 중앙근린공원개발 주식회사

○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 /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3, 403호(무실동, 로알타워)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있음)

○ 면적

(기정)3,746.0㎡(근린공원23호 3,442.5㎡, 경관녹지46호 303.5㎡)

(변경)4,124.9㎡(근린공원23호 3,821.4㎡, 경관녹지46호 303.5㎡)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3. 09. 30.

6. 열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3. 7. 7.~2023. 7. 24.

○ 장소 : 원주시청 도시계획과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변경있음)

8.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 및 지하시설물 등

■ 토지조서  
(기정)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 목	지적 (m2)	편입 면적 (m2)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소재지	지번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 의권리의종 류및내용	
1	원주시 명륜동	855	공	166,997.4	2,421.5		원주시				근린공원
2	원주시 무실동	1920	공	86,358.5	1,021.0		원주시				근린공원
3	"	1816	공	12,179.4	303.5		원주시				경관녹지
계		3필지		265,535.3	3,746.0						

(변경)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 목	지적 (m2)	편입 면적 (m2)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소재지	지번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 의권리의종 류및내용	
1	원주시 명륜동	855	공	166,997.4	2,810.2		원주시				근린공원
2	원주시 무실동	1920	공	86,358.5	1,011.2		원주시				근린공원
3	"	1816	공	12,179.4	303.5		원주시				경관녹지
계		3필지		265,535.3	4,124.9						

동해시 공고 제2023-898호

동해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36호선, 소로1-27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동해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36호선, 소로1-27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동 해 시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동해시 발한동 501-10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동해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36호선, 소로1-27호선) 사업
  - 나. 명 칭 : 발한동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도로개설

구분	시 설 종 류					기시행 (m)	금회시행 (m)	향후시행 (m)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총연장 (m)			
도로	중로	2	36	15	145	-	145	-
도로	소로	1	27	10	284	107	177	-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1) 동해현대지역주택조합 조합장 하 은 상
    - 2) 에이치엔아이엔씨(주) 대 표 차 동 원, 박 창 연
  - 나. 주 소
    - 1) 강원도 동해시 지리골길 9, 102호 (발한동)
    - 2)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72 (장충동2가, 아도라타워2층)
- 5. 사업의 착수·준공일
  - 가. 착 수 일 : 2016. 10. 25.
  - 나. 준 공 일 : 2023. 06. 22.

태백시 고시 제2023-58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1.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동법시행령 제97조 및 동법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를 태백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6월 23일

태 백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태백시 철암동 10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명 칭 : 태백 고원 힐링 캠핑장 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결 정 규 모(m <sup>2</sup> )	기 시 행	금 회 시 행	비고
공 원	38,443	-	38,443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태백시장
- 주 소 : 태백시 태백로 21(황지동)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일 : 2023. 6. 23.
- 준공예정일 : 2024.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와 지번,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참조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참조

아. 계획 관련 서류- 실시설계도서, 자금계획 등 정책사업과 공공사업팀 비치  
(033-550-747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 외 권리명세	
1	철암동	99	전	597.1	597.1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2	철암동	100	전	3,071.8	3,071.8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3	철암동	101-1	전	523.7	523.7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4	철암동	99-12	임	26,382.0	2,115.2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5	철암동	99-13	임	7,377.1	2,784.8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6	철암동	100-1	전	1,847.7	1,847.7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7	철암동	100-2	전	3,568.4	3,568.4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8	철암동	100-3	창	503.9	503.9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9	철암동	102	대	184.6	184.6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0	철암동	103	전	3,544.3	3,544.3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1	철암동	104	전	361.3	361.3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2	철암동	105	전	2,685.6	2,685.6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3	철암동	106	전	81.0	81.0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4	철암동	109	대	371.9	371.9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5	철암동	109-3	전	3,952.2	3,952.2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6	철암동	113	전	3,177.8	3,177.8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7	철암동	110	전	1,145.7	286.4 (지분1/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109비선아파트 506-201	심*준				
					286.4 (지분1/4)	충청남도 천안시 원성동 222-9	심*백				
					286.4 (지분1/4)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39길 51(서초동)	심*준				
					286.4 (지분1/4)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8	철암동	111	전	155.3	155.3	강원도 태백시 장성1길 117, 101동 802호(동아라이크텐 아파트)	전*예				
19	철암동	112	전	1,237.7	1,237.7	강원도 태백시 장성1길 117, 101동 802호(동아라이크텐 아파트)	전*예				

20	철암동	112-2	전	15.7	15.7	강원도 태백시 장성1길 117, 101동 802호(동아라이크텐 아파트)	전*예				
21	철암동	113-3	대	946.7	946.7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22	철암동	113-4	도	502.8	502.8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23	철암동	113-5	전	1,144.2	1,144.2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24	철암동	324-47	임	19,558.9	2,145.8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25	철암동	99-5	임	16.5	16.5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26	철암동	99-6	임	5.0	5.0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27	철암동	102-1	대	22.1	22.1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28	철암동	102-2	대	41.7	41.7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29	철암동	103-1	전	245.6	245.6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30	철암동	105-1	전	71.3	71.3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31	철암동	105-2	전	122.4	122.4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32	철암동	109-1	전	85.5	85.5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33	철암동	109-2	전	114.8	114.8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34	철암동	112-1	전	22.8	22.8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35	철암동	113-1	전	161.8	161.8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36	철암동	114-1	도	83.4	83.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37	철암동	392	도	785.5	785.5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기획재정부				

■ 물건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 외 권리명세	
1	철암동	99-4	물호스	PVC	300m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2	철암동	99-4	물탱크	FRP (φ0.6, H1.2)	1식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3	철암동	100-1	전기목책	-	60m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4	철암동	100-1	계사	목조슬레이트	18.75㎡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5	철암동	100-1	밤나무	R30	1주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6	철암동	100-1	바닥포장	콘크리트	20.00㎡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7	철암동	100-1	도라지		100.00㎡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8	철암동	100-3	우사	블럭조 판넬지붕	124.85㎡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9	철암동	100-3	창고	경량철골조 강판지붕	30.78㎡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0	철암동	100-3	엄나무1	R7	10주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1	철암동	100-3	엄나무2	R5	15주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2	철암동	100-3	엄나무3	R18	10주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3	철암동	100-3	엄나무4	R20	10주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4	철암동	100-3	복숭아나무	R20	2주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5	철암동	100-3	사과나무	R1	2주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6	철암동	100-3	정화조탱크	FRP	2식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7	철암동	100-3	동산이전비	-	1식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8	철암동	102	주택	경량철골구조 싱글지붕	89.53㎡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9	철암동	102	덧돌	콘크리트	1식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20	철암동	102	창고1	조립식판넬조	24.00㎡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21	철암동	102	창고2	파이프강판지붕	7.14㎡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22	철암동	102	창고3	조립식판넬조	1식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23	철암동	102	창고4	파이프강판지붕	6.8㎡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24	철암동	102	야외화장실	조립식판넬조	1식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25	철암동	102	창고5	철제	1식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26	철암동	102	물탱크	FRP	1식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27	철암동	102	창고6	각파이프	1식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천막지붕							
28	철암동	102	장독대 보관함	조립식판넬조	1식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29	철암동	102	바닥포장	고압블럭	258㎡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30	철암동	102	조경석축	자연석	20㎡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31	철암동	102	우물	D=6	1식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32	철암동	102	계단	철제	1식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33	철암동	102	비닐하우스	철제비닐지붕	5.86㎡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34	철암동	102	우편함	철제	1식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35	철암동	102	농업용전기	5kw	1식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36	철암동	102	동산이전비	운동기구, 장작, 화로, 전사 등	1식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37	철암동	102	위성안테나	-	1식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38	철암동	102	사과나무	6년생	7주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39	철암동	102	대추나무	6년생	1주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40	철암동	102	대추나무	2년생	2주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41	철암동	102	주목나무	R5 H1.5	1주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42	철암동	102	주목나무	R3 H0.3	1주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43	철암동	102	자두나무	6년생	1주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44	철암동	102	추자나무	2년생	1주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45	철암동	102	복숭아나무	6년생	1주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46	철암동	102	매자나무	1년생	1주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47	철암동	102	철쭉	-	4주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48	철암동	103	분묘1	유연단장	1식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49	철암동	103	상석1	화강석	1식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50	철암동	103	고석1	화강석	1식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51	철암동	103	기초석1	화강석	1식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52	철암동	103	향로석1	화강석	1식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53	철암동	103	분묘2	유연단장	1식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54	철암동	103	상석2	화강석	1식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55	철암동	103	고석2	화강석	1식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56	철암동	103	기초석2	화강석	1식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57	철암동	103	향로석2	화강석	1식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58	철암동	103	두릅나무	R4 H1.8	20주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59	철암동	103	회양목	W0.3 H0.3	30주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60	철암동	103	철쭉	W0.5 H0.8	1주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61	철암동	103	경운기	-	1대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62	철암동	103	관리기	-	1대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63	철암동	103	쟁기	-	2대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64	철암동	103	파이프	철제	1식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65	철암동	103-1	울타리	철근그물(H1.7)	40m	미상	미상				
66	철암동	105	컨테이너	3*6	1식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67	철암동	109	주벽	블록조기와강판 (적벽돌보강)	63㎡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68	철암동	109	보일러실 및 화장실	블록조기와강판 (적벽돌보강)	22.35㎡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69	철암동	109	계단	적벽돌 및 콘크리트	1식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70	철암동	109	수도전	콘크리트	1식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71	철암동	109	화단	자연석	11m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72	철암동	109	심야전기 보일러	-	1식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73	철암동	109	우물	D=5m	1식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74	철암동	109	바닥포장1	파쇄석	162㎡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75	철암동	109	조경석축	자연석	58m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76	철암동	109	바닥포장2	콘크리트	24㎡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77	철암동	109-3	울타리	파이프그물	70m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78	철암동	110	울타리	파이프그물	21m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79	철암동	112	울타리	파이프그물	28m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80	철암동	113	울타리	파이프그물	90m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81	철암동	113-3	주벽	블럭조 싱글지붕 (연외벽돌보강)	117.8㎡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82	철암동	113-3	창고 및 보일러실	C형강 및 벽돌조 위 싱글지붕	19.7㎡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83	철암동	113-3	다용도실	C형강 및 벽돌조 위 싱글지붕	24.43㎡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84	철암동	113-3	보일러실	블록조 강판	1.62㎡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85	철암동	113-3	창고	파이프판넬	25.6㎡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86	철암동	113-3	건조실	파이프판넬 (강판외벽)	21.83㎡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87	철암동	113-3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29.16㎡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88	철암동	113-3	냉동냉장고	5kw	1식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89	철암동	113-3	컨테이너	2*3	1식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90	철암동	113-3	고추건조기	-	1식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91	철암동	113-3	화덕, 난로	콘크리트, 철제	1식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92	철암동	113-3	화단1	목조	12m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93	철암동	113-3	빨래건조대	철제	1식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94	철암동	113-3	국기봉	철제	1식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95	철암동	113-3	철계단	-	1식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96	철암동	113-3	화단2	자연석	211㎡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97	철암동	113-3	벌통	토봉	5군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98	철암동	113-3	우물	-	1식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99	철암동	113-3	우물함	콘크리트위 철제	1식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00	철암동	113-3	우편함	철제	1식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01	철암동	113-3	동산이전비	버섯목, 견사 등	1식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02	철암동	113-3	바닥포장	콘크리트	335.50㎡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03	철암동	113-3	블루베리	H1.0	4.0주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04	철암동	113-3	개두릅	H2.0	200.0주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05	철암동	113-3	연산홍	W0.3 H0.3	135.0주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06	철암동	113-3	사과나무	R8.0 H3.0	25.0주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07	철암동	113-3	복숭아나무	R10.0 H2.0	25.0주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08	철암동	113-3	자두나무	R8.0 H3.0	3.0주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09	철암동	113-3	회양목	W0.5 H0.6	50.0주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10	철암동	113-3	배나무	R7.0 H1.5	3.0주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11	철암동	113-3	아로니아	H1.2	18.0주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12	철암동	113-3	뽕나무	R10.0 H2.5	1.0주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13	철암동	113-3	다래나무	지주대포함	2.0주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14	철암동	113-3	아그배나무	-	1.0주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15	철암동	113-3	주목나무	R7.0 H1.3	3.0주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16	철암동	113-3	소나무	R12.0 H1.6	8.0주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17	철암동	113-3	소나무	R5.0 H0.2	3.0주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18	철암동	113-3	앵두나무	R16.0 H2.5	2.0주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19	철암동	113-3	포도나무 지주대	철파이프	1.0식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20	철암동	113-4	바닥포장 (진입로)	콘크리트	605.5㎡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21	철암동	113-4	개복숭아	R8.0 H1.5	11.0주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22	철암동	113-4	머루나무	지주대포함	15.0주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23	철암동	113-4	매실나무	R3.0 H1.0	11.0주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24	철암동	113-4	돌배나무	R35.0 H5.0	1.0주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25	철암동	113-5	바닥포장	고압블럭	13.5㎡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26	철암동	113-5	계사1	조립식판넬	8.0㎡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27	철암동	113-5	계사2	철파이프 능형망	11.0㎡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28	철암동	113-5	대추나무	R20.0 H6.0	1.0주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29	철암동	113-5	대추나무	R6.0 H1.8	1.0주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30	철암동	113-5	대추나무	R3.0 H1.5	1.0주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31	철암동	113-5	포도나무	-	3.0주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32	철암동	113-5	산청목 (벌나무)	R7.0 H1.6	1.0주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33	철암동	113-5	오미자	지주대포함	450.0주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34	철암동	113-5	살구나무	R10.0 H1.7	1.0주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35	철암동	113-5	산나물	어수리, 곰취 등	160.0㎡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36	철암동	113-5	복숭아나무	R8.0 H1.8	1.0주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37	철암동	113-5	사과나무	R7.0 H2.0	14.0주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38	철암동	324-38	울타리	능형망(H1.8)	230.0m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39	철암동	324-38	엄나무	-	400.0주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40	철암동	324-38	매실나무	-	1.0주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41	철암동	324-38	회양목	-	315.0주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42	철암동	324-38	무궁화	-	47.0주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43	철암동	324-38	살구나무	-	5.0주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44	철암동	324-38	왕자두나무	-	5.0주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45	철암동	324-38	사과나무	-	10.0주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46	철암동	324-38	자두나무	-	4.0주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47	철암동	324-38	양산홍	-	5.0주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48	철암동	324-38	두릅나무	-	10.0주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149	철암동	324-38	물탱크	1톤	1.0식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백시				

태백시 고시 제2023-6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1.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동법시행령 제97조 및 동법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를 태백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6월 30일

태 백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태백시 문곡동 7-5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갓밭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결 정 규 모(m <sup>2</sup> )					기 시 행		금 회 시 행		비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m)	연장(m)	폭원(m)	연장(m)	폭원(m)	연장(m)	
도 로	소 로	3	101	6	423	-	-	6	423	
도 로	소 로	3	169	4	505	-	-	4	93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태백시장
- 주 소 : 태백시 태봉로 21(황지동)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일 : 2023. 6. 30.
- 준공예정일 : 2025.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와 지번,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참조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참조

아. 계획 관련 서류- 실시설계도서, 자금계획 등 건설과 도로정비팀 비치  
(033-550-213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편입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 외 권리명세	
1	문곡동	7-16	7-16	잡종지	130	130	1/1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시				
2	문곡동	7-17	7-17	전	532	532	1/1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시				
3	문곡동	7-19	7-19	잡종지	56	56	1/1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시				
4	문곡동	7-20	7-20	잡종지	100	100	1/1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2*9 계산아파트 20*-***	박*구				
5	문곡동	3-18	3-18	주차장	23	23	1/1	강원도 태백시 태봉로21	태*시				
6	문곡동	7-14	7-14	전	7	7	1/1	강원도 태백시 문곡동 2-**	문*진	강원도 태백시 시*북길 **(황지동)	**새마을금고	근저당	
										강원도 태백시 시*북길 **(황지동)	**새마을금고	지상권	
7	문곡동	7-15	7-15	전	2	2	1/1	강원도 태백시 문곡동 2-**	문*진	강원도 태백시 시*북길 **(황지동)	**새마을금고	근저당	
										강원도 태백시 시*북길 **(황지동)	**새마을금고	지상권	
8	문곡동	7-21	7-21	전	88	88	1/1	강원도 태백시 문곡동 2-**	문*진	강원도 태백시 시*북길 **(황지동)	**새마을금고	근저당	
										강원도 태백시 시*북길 **(황지동)	**새마을금고	지상권	
9	문곡동	7-22	7-22	전	12	12	1/1	강원도 태백시 문곡동 2-**	문*진	강원도 태백시 시*북길 **(황지동)	**새마을금고	근저당	
										강원도 태백시 시*북길 **(황지동)	**새마을금고	지상권	
10	문곡동	7-23	7-23	전	13	13	1/1	강원도 태백시 문곡동 2-**	문*진	강원도 태백시 시*북길 **(황지동)	**새마을금고	근저당	
										강원도 태백시 시*북길 **(황지동)	**새마을금고	지상권	

11	문곡동	7-24	7-24	전	141	141	1/1	강원도 태백시 문곡동 2-**	문*진	강원도 태백시 시*북길 ** (황지동)	**새마을금고	근저당
										강원도 태백시 시*북길 ** (황지동)	**새마을금고	지상권
12	문곡동	7-25	7-25	전	13	13	1/1	강원도 태백시 문곡동 2-**	문*진	강원도 태백시 시*북길 ** (황지동)	**새마을금고	근저당
										강원도 태백시 시*북길 ** (황지동)	**새마을금고	지상권
13	문곡동	산5-31	산5-31	임야	1,437	1,437	2/15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2*, 103동 ***호	김*희			
							4/15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가마골로 *, 103동 4**호	김*길			
							2/15	인천광역시 남동구 독곡로 57-*, *동	김*희			
							2/15	강원도 춘천시 효명길 **	박*열			
							2/15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칠중7길 *2, *동 3*2호	김*주			
							6/105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3길 *7, 4**동 **10호	김*은			
							6/105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3길 *7, 4**동 **10호	김*은			
							9/105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3길 *7, 4**동 **10호	백*주			
14	문곡동	산4-15	산4-15	임야	291	291	1/1	태백시 황지동 6*4 태백황지3단지 3**-7**	이*옥	서울 중구 충정로1가 **	**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	**협동조합중앙회	지상권
15	문곡동	산4-3	산4-3	임야	4,723	48	1/1	태백시 황지동 6*4 태백황지3단지 3**-7**	이*옥	서울 중구 충정로1가 **	**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	**협동조합중앙회	지상권

속초시 고시 제2023-93호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93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93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인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8일

속 초 시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속초시 중앙동 468-17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93호선)
  - 명칭: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93호선) 개설공사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시설의 세분	결정규모	금회 사업규모	비고
도로	소로1-93호선	B=10~14m, L=74m	B=3m, L=37m	가감속차로 설치에 따른 도로 확장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주)태인디앤디 대표 이규형, 이상애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서관동 17층 1710호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 실시계획인가일 ~ 2023. 6. 30.
  - 변경) 실시계획인가일 ~ 2023. 12. 31.

6.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시설명	시설의 세분	사업규모	면적	비고
도로	소로1-93호선	B=3m, L=37m	111㎡	도시계획시설 내 편입토지 및 새로 설치되는 모든 구조물 또한 귀속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

자·권리자의 성명·주소(붙임)

■ 토지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1,221	111					
1	중앙동	468-255	도	145	6	속초시				
2	중앙동	468-17	대	870	82	케이비부동산신 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3	중앙동	468-193	대	165	3	케이비부동산신 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4	중앙동	468-243	도	41	20	속초시				

삼척시 고시 제2023-96호

삼척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삼척자동차터미널)사업  
실시계획 인가 실효 고시

삼척시 고시 제2022-79호로 실시계획 인가(건축법 의제협의) 고시된 삼척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삼척자동차터미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인가 실효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7일

삼 척 시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남양동 340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삼척자동차터미널)사업
  - 나. 명칭 : 삼척터미널 버스 전기충전소 증축공사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강원여객자동차(주)
  - 나.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하슬라로 27(홍제동)
- 4. 사업의 규모
  - 가. 대지면적: 2,696.5㎡
  - 나. 건축면적: 전기충전소 설치 16.5㎡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가. 착수예정일 : 2022. 6. 10.
  - 나. 준공예정일 : 2022.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및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남양동	340	대	2,696.5	2,696.5	강원여객자동차(주)	강릉시 하슬라로 27	-	
계				2,696.5	2,696.5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실효 사유

: 삼척시 고시 제2022-79호에 따른 사업기간 내에 실시계획인가 기간연장 신청 및 공사완료를 하지 않아 사업인정 실효.

영월군 고시 제2023-138호

군계획시설(공원)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공원)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8일

영 월 군 수

가. 군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16	공 원	어린이공 원	영월읍 영흥리 1033-33번지 일원	1,946	감)1,946	-	강원도고시 제2003-145호 (2003.6.28)	실효

나. 실효일자 : 2023. 6. 28.

다. 실효사유 : 군계획시설사업 미 시행

라. 지형도면 : 붙임 참조

마. 관계도서는 영월군 도시과(☎ 033-370-237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군계획시설(공원) 결정 실효 지형도면  
기정



군계획시설(공원) 실효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범례**

- 지적선
- 공원

0 20 50 100

A north arrow and a scale bar are located in the bottom right corner of the legend area. The scale bar is marked with 0, 20, 50, and 100 units.

변경



군계획시설(공원) 실효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범례**

- 지적선
- 공원

0 20 50 100

A north arrow and a scale bar are located in the bottom right corner of the legend area. The scale bar is marked with 0, 20, 50, and 100 units.

영월군 고시 제2023-140호

영월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강원도고시 제2003-145(2003.6.28.)호, 영월군고시 제2003-65(2003.7.7.)호로 최초 결정된 영월 군계획시설 도로(소로1-31, 소로3-130, 소로3-132, 소로3-133, 소로3-140, 소로3-154, 소로3-155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인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3일

영 월 군 수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603-5번지 일원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881-2번지 일원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164-9번지 일원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190-4번지 일원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513-6번지 일원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639번지 일원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636-16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영월 군계획시설(도로)
- 명칭
  - 소로1-31호선 도로 개설사업(폭원 10m, 연장 162m)
  - 소로3-130호선 도로 개설사업(폭원 6m, 연장 185m)
  - 소로3-132호선 도로 개설사업(폭원 6m, 연장 177m)
  - 소로3-133호선 도로 개설사업(폭원 6m, 연장 48m)
  - 소로3-140호선 도로 개설사업(폭원 6m, 연장 570m)
  - 소로3-154호선 도로 개설사업(폭원 6m, 연장 230m)
  - 소로3-155호선 도로 개설사업(폭원 6m, 연장 36m)

다) 사업시행의 면적 및 규모

토지이용현황 (㎡)	지목별	계	대지	도로	전	답	구거	종교용지	과수원	임야
	면적	7,500	1,644	2,153	2,080	301	6	78	280	958
토지이용계획 (㎡)	용도별	계				도로(7개 노선)				
	면적	7,500				7,500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주소

- 성명 : 영월군수
- 주소 :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마) 사업의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8. 6. 28.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소로1-31호선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대장	편입	성명	주소
합계	15필지	-	-	14,239	1,644	-	-
1	덕포리	485-3	도	5,415	528	국(국토교통부)	
2	덕포리	600	대	2,605	21	국(통계청)	
3	덕포리	601-8	전	795	55	김0옥	
4	덕포리	601-9	대	218	4	김0옥	
5	덕포리	601-10	전	136	44	김0옥	
6	덕포리	601-17	전	31	31	영월군	
7	덕포리	601-18	대	23	23	영월군	
8	덕포리	603-5	도	341	6	영월군	
9	덕포리	806-2	대	258	55	박0자	
10	덕포리	806-6	대	91	84	국(기획재정부)	
11	덕포리	806-7	대	43	43	영월군	
12	덕포리	813-1	전	2,404	407	김0덕	
13	덕포리	813-3	도	346	36	영월군	
14	덕포리	814-4	도	231	6	영월군	
15	덕포리	814-7	답	1,302	301	김0해	

○ 소로3-130호선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대장	편입	성명	주소
합계	21필지	-	-	17,890	1,110	-	-
1	영흥리	74-6	도	10,293	45	영월군	
2	영흥리	769	대	942	80	대지권설정	
3	영흥리	769-2	대	1,306	2	대지권설정	
4	영흥리	769-3	대	148	61	황0주	
5	영흥리	769-5	과	208	207	유0순	
6	영흥리	769-7	과	249	73	황0주	
7	영흥리	770-4	대	247	24	영흥9리마을회	771-9
8	영흥리	881-2	전	343	135	영월군	
9	영흥리	881-4	대	368	100	정0순	
10	영흥리	881-5	대	280	40	김0수	
11	영흥리	881-6	전	155	7	김0수	
12	영흥리	882-2	도	100	100	영월군	
13	영흥리	882-3	대	395	7	강0숙	
14	영흥리	882-4	전	9	6	강0숙	
15	영흥리	882-8	전	13	13	(주)반곡토건	
16	영흥리	885-1	대	1,065	44	영월향교	
17	영흥리	885-2	대	245	14	영월향교	
18	영흥리	885-15	대	411	34	영월향교	
19	영흥리	886-6	전	102	2	김0섭	
20	영흥리	886-7	대	991	108	국(법무부)	
21	영흥리	886-9	도	20	8	영월군	

○ 소로3-132호선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대장	편입	성명	주소
합계	17필지	-	-	18,042	1,119	-	-
1	하송리	100-30	구	823	3	국(국토교통부)	
2	하송리	120-1	전	210	24	백0선	
3	하송리	120-3	전	17	11	영월군	
4	하송리	121-1	대	305	55	백0선	
5	하송리	121-4	도	263	21	영월군	
6	하송리	143-1	전	423	8	정0옥	
7	하송리	158-2	중	331	78	여호와의증인의 영월회중(교회)	158-2
8	하송리	158-3	전	1,105	69	정0옥	
9	하송리	158-9	전	832	78	엄0흡	
10	하송리	158-11	전	264	31	영월군	
11	하송리	164-1	전	1,099	136	조0대	
12	하송리	164-5	전	255	20	영월군	
13	하송리	164-8	대	702	50	조0대	
14	하송리	164-9	도	84	84	영월군	
15	하송리	168-9	구	83	3	영월군	
16	하송리	168-20	전	109	2	영월군	
17	하송리	190-4	도	11,137	446	영월군	

○ 소로3-133호선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대장	편입	성명	주소
합계	8필지	-	-	11,662	299	-	-
1	하송리	119-2	전	3	3	영월군	
2	하송리	158-4	대	279	35	유0열	
3	하송리	158-15	대	47	47	이0자	
4	하송리	158-16	대	58	3	장0우	
5	하송리	159-3	대	25	18	권0상	
6	하송리	160-14	대	75	63	국(기획재정부)	
7	하송리	160-16	전	38	38	권0섭	
8	하송리	190-4	도	11,137	92	영월군	

○ 소로3-140호선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대장	편입	성명	주소
합계	32필지	-	-	9,150	1,643	-	-
1	덕포리	328	대	429	2	변0근	
2	덕포리	328-1	전	454	5	변0근	
3	덕포리	329-2	도	1,637	380	영월군	
4	덕포리	329-3	전	92	44	금융종합건설(주)	
5	덕포리	329-6	전	194	49	금융종합건설(주)	
6	덕포리	505-26	전	336	1	금융종합건설(주)	
7	덕포리	505-28	전	292	170	금융종합건설(주)	
8	덕포리	506-39	도	35	8	영월군	
9	덕포리	506-44	전	45	39	영월군	
10	덕포리	506-45	대	55	44	영월군	
11	덕포리	513-2	전	365	1	박0우	
12	덕포리	513-3	전	409	3	박0우	
13	덕포리	513-6	도	75	73	영월군	
14	덕포리	513-7	전	67	67	영월군	
15	덕포리	514	대	136	5	황0봉	
16	덕포리	515-1	대	192	54	김0수	
17	덕포리	515-2	전	836	66	전0해	
18	덕포리	515-4	대	342	4	이0숙	
19	덕포리	515-7	대	50	50	영월군	
20	덕포리	516-1	전	1,587	38	박0우	
21	덕포리	516-2	대	162	41	박0우	
22	덕포리	520-1	대	53	1	영월군	
23	덕포리	521-1	대	73	10	영월군	
24	덕포리	521-3	대	149	30	영월군	
25	덕포리	521-7	대	188	3	유0옥	
26	덕포리	521-10	도	22	22	영월군	
27	덕포리	521-11	도	69	30	영월군	
28	덕포리	521-12	대	86	42	영월군	
29	덕포리	521-13	도	11	3	영월군	
30	덕포리	산73-5	임	365	189	영월군	
31	덕포리	산73-6	임	344	169	영월군	

○ 소로3-154호선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대장	편입	성명	주소
합계	10필지	-	-	31,930	1,381	-	-
1	덕포리	587	대	202	176	이0희	
2	덕포리	636-2	도	398	30	영월군	
3	덕포리	636-3	대	370	3	오0희	
4	덕포리	638-2	전	1,103	169	엄0섭	
5	덕포리	638-3	전	359	241	엄0섭	
6	덕포리	639	도	1,055	162	영월군	
7	덕포리	산64-3	임	1,876	118	영월군	
8	덕포리	산64-4	임	85	24	영월군	
9	덕포리	산77	임	26,429	451	제주고씨화전군과 광후공손종중	
10	덕포리	산77-3	임	53	7	제주고씨화전군과 광후공손종중	

○ 소로3-155호선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대장	편입	성명	주소
합계	8필지	-	-	2,205	304	-	-
1	덕포리	636-3	대	370	23	오0희	
2	덕포리	636-15	대	50	50	오0희	
3	덕포리	636-16	도	116	73	영월군	
4	덕포리	636-17	대	71	53	유0옥	
5	덕포리	636-21	대	21	21	신0아	
6	덕포리	636-28	대	115	17	영월군	
7	덕포리	638-2	전	1,103	26	엄0섭	
8	덕포리	638-3	전	359	41	엄0섭	

고성군 고시 제2023-122호

고성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제11차)

고성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제1항 별표1에 따라 고성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 6. 30.

고 성 군 수

고성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안)

I . 농공단지 개요

1. 관리기관(변경없음) : 고성군수

2. 조성목적(변경없음)

○ 우리 군은 도내에서도 최동북단에 입지한 접경지역으로 지형적 여건과 중복규제 등으로 인해 인근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제조업 등 산업이 매우 열악하여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 최근 건강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의식(Well-Being)의 변화로 인하여 청정 무한자원인 해양심층수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특히 고성군은 지난 2000년 정부(해양수산부)로부터 심층수개발 제1후보지로 선정되어 그동안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다각적인 산업화와 상품화를 통해 국내 최고의 경쟁력 확보하게 되었고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지속적인 주도권 확보 및 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개발여건이 취약한 고성군의 전략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고유 명품 브랜드로 만들어 동북아 최고의 심층수 산업허브(중심지)로 부상함으로써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고성군 죽왕면 송지호로 15-4(오호리 278번지)

○ 면 적 : 103,539.2㎡→100,915.5㎡(감2,623.7)

4.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09년 ~ 2015년

○ 개발방법 : 공영개발

5. 분양대상 및 분양조건

- 산업시설용지 : 70,558.7㎡(28개 블록)
- 분양가격 : 94,000원/㎡ (310,740원/3.3058㎡)

6. 분양계약 및 분양대금 납부조건(변경없음)

구 분	계 약 금	중 도 금	잔 금	비 고
납부금액	10%	40%	50%	
납부시기	입주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일시납 또는 위 잔금 납부기한으로부터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 납부방법 : 고성군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군금고에 납부

※ 납부기간 내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연체료의 징수)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율 최대 15% 적용

- 할부이율 : 연6%
- 토지사용승낙서 발급 : 분양대금 50% 이상 납부 시(계약금 및 중도금)

7. 추진경위

- 2009. 5.13. : 고성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기본 및 실시계획 승인
- 2009. 5.15. : 고성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기본 및 실시계획 고시
- 2009. 6.30. ~ 2010.10.27. : 고성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조성(착공 및 준공)
- 2010. 4. 9. : 고성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고시
- 2011.12.28. : 고성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제1차)
- 2012. 7.20. : 고성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준공 인가 공고
- 2014. 3. 6. : 고성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고시(제2차)
- 2014. 5. 8. : 고성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제3차)
- 2014.12.30. : 고성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제4차)
- 2015. 3.18. : 고성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제5차)
- 2015. 7.30. : 고성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제6차)
- 2015. 9.19. : 고성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고시(제7차)
- 2020. 2.17.. : 고성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확정고시(제8차)
- 2021. 1.27. : 고성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확정고시(제9차)
- 2023. 5.20. : 고성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명 승인 고시(제10차)
- 2023. 6.15. : 고성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명 승인 정정 고시(제10차)

II . 관리기본계획

1. 관리기본 방향(변경없음)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과 「농공 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지침」(이하 “통합지침”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운영 및 활성화 도모
- 해양심층수 이용 가공 식·음료품 제조업종의 협동화 사업을 위한 집적화 및 심층수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입지 경쟁력 강화
- 친환경 기업유치를 위한 적정 규모의 산업시설용지 제공 및 입주기업 조기 정착과 경영 안정 위해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활동 전개
- 맞춤형 공공시설 조성 및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로 단지 시설 이용률 제고하고 기업 근로자에 보다 쾌적한 근무여건 제공

2. 관리할 농공단지의 면적

구 분	면적(m <sup>2</sup>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03,539.2	감)2,623.7	100,915.5	100.0	
산업시설구역	66,091.9	증)4,466.8	70,558.7	69.9	공장용지
지원시설구역	4,787.4	감)4,466.8	320.6	0.3	공동이용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구역	23,757.7	감)2,451	21,306.7	21.2	도로, 주차장, 폐수종말처리장 등
녹지시설구역	8,902.2	감)172.7	8,729.5	8.6	녹지, 공원

3.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입주대상 및 자격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중 본 관리기본 계획상 입주업종에 해당하는 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2항, 제43조 6항에 따라 단지 내 기 입주기업에 한하여 토지가 아닌 건물 옥상에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신설)

※ 입주업종

당 초		변 경		
1	식료품 제조업(10)	통합배치(허용업종) ①	1	식료품 제조업(10)
			2	음료 제조업(11)
			3	태양력 발전업(35114)
2	음료 제조업(11)	통합배치(허용업종) ②, 임대용지	1	식료품 제조업(10)
			2	음료 제조업(11)
			3	태양력 발전업(35114)
			4	비 주거용 건물임대업(68112)

나. 입주 제외대상(통합지침 제36조 등)

- ① 환경부장관이 별도 지정·고시하는 지역내 연간 20톤 이상 대기오염물질발생 사업장
-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 ③ 1일 폐수배출량이 2,000m<sup>3</sup> 이상인 사업장
- ④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
- ⑤ 특정대기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
- ⑥ 폐수배출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 ⑦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저촉되는 사업장
- ⑧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산업단지 관리상 문제가 우려되는 업종
- ⑨ 생산공정 상 수산동물에 대한 할복작업을 포함하는 작업장

다. 입주 우선순위

- ① 수도권 및 타시·군·구에서 본사 또는 공장 이전을 위하여 협약(양해각서)을 체결한 기업체
-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기업
- ③ 관리권자가 권장하는 사업(해양심층수 관련 산업) 추진을 위하여 “협동화(집단지화) 사업” 으로 입주하고자 신청한 기업체
- ④ 현지 부존자원을 제품원료의 50% 이상 활용하는 기업체
- ⑤ 신기술 보유, 고용창출 및 부가가치가 큰 업종
- ⑥ 기존 농공단지 입주업체중 사업 확장으로 인해 공장용지가 필요한 업체
- ⑦ 관리기본계획상 유치업종에 해당되는 업체로서 건설한 기업의 입주유치를 위해 자체자금 조달 및 신용평가 등에 적합한 기업체

4. 농공단지의 용도별 구역

가.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m<sup>2</sup>, %)

구 분	면 적			구 성 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03,539.2	감)2,623.7	100,915.5	100.0
산업시설용지	66,091.9	증)4,466.8	70,558.7	69.9
통합배치(허용업종) ①	63,165.4	증)4,466.8	67,632.2	67
통합배치(허용업종) ②, 임대용지	2,926.5	-	2,926.5	2.9
공공시설용지	23,757.7	감)2,623.7	30,036.2	29.8
폐수처리시설	1,789.2	-	1,789.2	1.8
주 차 장	781.5	-	781.5	0.8
도 로	19,325.1	감)2,451	16,874.1	16.7
저 류 지	1,861.9	-	1,861.9	1.9
녹 지	6,135	감)127.7	5,962.3	5.9
공 원	2,767.2	-	2,767.2	2.7
지원시설용지	4,787.4	감)4,466.8	320.6	0.3
지 원 시 설	4,787.4	감)4,466.8	320.6	0.3

나.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1) 산업시설용지

- 산업집적법 제2조 및 농공단지 개발계획에 의한 유치업종으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 (입주기업체

지붕에 한함)

2) 지원시설용지

-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같은법 제2조 제17호 및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건축물로서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3) 공공시설용지 : 공공용 건축물 및 관련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 4) 녹지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에 의한 공공녹지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녹지(유원지 “제외” )

다. 용도별 구역 평면도 : 별첨 1

5. 산업시설구역 업종별 공장배치계획(변경)

(단위 : m<sup>2</sup>, %)

구 분		위치	업체수	면적		구성비	
계획내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28	66,091.9
산업 시설 용지 (변경)	통합배치 (허용업종) ①	오호리 278-16번지	오호리 278-16번지	27	63,165.4	67,632.2	95.85
		오호리 278-17번지	오호리 278-17번지				
		오호리 278-18번지	오호리 278-18번지				
		오호리 278-19번지	오호리 278-19번지				
		오호리 278-3번지	오호리 278-3번지				
		오호리 278-13번지	오호리 278-13번지				
		오호리 278-14번지	오호리 278-14번지				
		오호리 278-26번지	오호리 278-26번지				
		오호리 278-15번지	오호리 278-15번지				
		오호리 278-53번지	오호리 278-53번지				
		오호리 278-24번지	오호리 278-24번지				
		오호리 278-23번지	오호리 278-23번지				
		오호리 278-22번지	오호리 278-22번지				
		오호리 278-2번지	오호리 278-2번지				
		오호리 278-28번지	오호리 278-28번지				
		오호리 278-20번지	오호리 278-20번지				
		오호리 278-46번지	오호리 278-33번지				
오호리 278-27번지	오호리 278-46번지						
오호리	오호리						

			278-33번지 오호리 278-35번지 오호리 278-36번지 오호리 278-37번지 - - 오호리 278-41번지 오호리 278-42번지 오호리 278-32번지	278-27번지 오호리 278-35번지 오호리 278-36번지 오호리 278-37번지 오호리 278-38번지 오호리 278-39번지 오호리 278-41번지 오호리 278-42번지 오호리 278-32번지				
산업 시설 용지	통합배치 (허용업종) ② 임대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으로서 다음 용도에 해당하는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 식료품 제조업</li> <li>11. 음 료 제조업</li> <li>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li> </ul> </li> <li>· 「산집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토지가 아닌 건물 옥상에 배치)</li> <li>·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토지가 아닌 건물 옥상에 배치)</li> </ul>	오호리 278-4번지		1	2,926. 5	2,926. 5	4.15

※ 입주업체수 및 규모는 분양에 따라 필지의 분할 또는 합병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6. 폐수처리시설,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계획(변경없음)

가. 폐수처리시설

1) 설치현황

- 위 치 : 고성군 죽왕면 인정길 14-6(오호리 278-9번지)
- 시설연면적 : 918.21㎡(지하 1, 지상 2)
- 처리 용량 : 440㎡/일

2) 운영방안 : 단지 내 발생 오·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나. 지원시설 설치계획

시설명	내용		
	개소수	면적(m <sup>2</sup> )	
		당초	변경
지 원 시 설	1	4,787.4	320.6

※ 공동이용시설은 입주업체의 규모,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설치 등을 적절히 판단 하여 지원할 계획임.

7. 지역기능인력 육성 및 인력수급

가. 입주기업의 직종별 인력수요

(단위 : 명)

구 분	계	식료품	음료품
총고용인원	300	220	80
현지고용인	210	160	50
신규고용인	90	60	30

나. 지역별 인력수급 전망

(단위 : 호, 명)

행정기관	세대수	인 구 수			세대당인구
		계	남	여	
합 계	14,546	27,869	14,634	13,235	1.9
간성읍	3,390	7,012	3,665	3,347	
거진읍	3,557	6,444	3,280	3,164	
현내면	1,381	2,460	1,228	1,232	
죽왕면	2,094	3,849	2,021	1,828	
토성면	4,124	8,104	4,440	3,664	

※ 고성군 통계연보 (2021년 고성군 통계연보)

다. 임금소득, 원자재공급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전망 (년간)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임 금 소 득	6,000
지역주민소득	2,000

라. 인근 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개별공장에 대한 입주업체의 경쟁력에 관한 전망 및 협력강화방안

1) 경쟁력에 관한 전망

· 국민 소득 및 의식수준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되고 웰빙문화 확산됨으로써 고품질 미네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해양심층수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이에 보조를 맞춰 심층수 활용한 각종 우수제품이 경쟁적으로 연구·출시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정부(해양수산부)에서 해양심층수를 미래 유망분야로 선정하여 해양 신산업 육성계획 수립중에 있으며 규제개혁을 통해 심층수가 식품공정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것을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토록 개정하고 다양한 협력사업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우수한 경쟁력을 확보한 우리지역의 심층수산업은 고품질 청정산업으로 성장과 발전이 크게 기대됨

2) 협력방안

· 국내 유일 해양심층수 「산·학·연·관 클러스터」 조성하여 연구·개발, 제품 생산 및 판매, 네트워킹과 홍보·브랜드 강화활동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효율성 제고하고 연계사업간 시너지 창출로 성과 극대화

· 주민, 대학, 행정, 전문기관간 긴밀히 협력하고 협업 강화로 해양심층수 전문인력 확보함으로써 지역 체감도 제고 및 차별화 된 단지 운영

· “농공단지협의회” 를 구성·운영 및 사무국 설치·지원으로 상호 협력관계 유지

Ⅲ. 기타 농공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농공단지 관리계획 》

1. 분양용지 관리

가.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산업집적법 제39조, 통합지침 제31조)

· 공장설립·사업개시 신고전에 산업용지 및 공장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고성군)에 양도하여야 함.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9조(산업용지의 처분제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공고 등의 적정절차를 거쳐 선정된 다른 기업체나 산업집적법에서 정한 기관에 양도하여야 함

나. 산업용지의 환수(산업집적법 제41조, 통합지침 제33조)

· 관리기관은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6월내의 시정 명령후, 당해 산업용지를 환수할 수 있음

다. 입주계약의 해지 등(산업집적법 제42조, 통합지침 제32조)

· 관리기관은 기업체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내의 시정을 명하고,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 공장 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 공장 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경우
- ▶ 산업집적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 산업집적법 제38조 및 제38조의 2에 따른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
- ▶ 산업집적법 제38조의 2 또는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경우

▶ 산업집적법 제39조의 2 제4항을 위반하여 분할된 산업용지 또는 산업용지의 공유 지분을 처분한 경우  
라. 입주계약 해지 후의 재산처분 등(산업집적법 제43조)

· 상기 ③과 같은 사유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중 공장설립을 완료하지 못한 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입주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산업집적법 제39조에 따라 처분해야 함

· 공장설립을 완료한 자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신고한 후, 입주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기업체에 양도하여야 함

· 1년 이내에 양도되지 아니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은 관리기관이 매수

마. 이행강제금(산업집적법 제43조의 3)

· 관리권자는 처분·양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양도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로 이행기간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할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함

바. 보조금 지원 기업의 사후관리(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의무사업 이행기간(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완료 통보한 날로부터 5년)이상 영위하여야 하며, 타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관리권자(고성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 지원받은 기업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8조에서 규정한 산출내역에 의거 보조금을 환수함

사. 기타사항

·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자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취득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 미체결시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함.

· 기타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통합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함

2. 환경관리

○ 입주기업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 허용기준에 적합하고,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원주지방환경 관리청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농공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 운영(440m<sup>3</sup>/일)

○ 농공단지 내 완충녹지 공간을 조성하여 주변지역의 환경영향을 최소화

3. 안전관리

○ 화재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파출소, 소방서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재해예방 및 신속한 복구체제 구축

○ 입주기업이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함

○ 단지 방호는 경찰서 및 군부대와 협조로 농공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위계획이 수립 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4. 기반시설 지원

○ 농공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공업용수 부족 시 지하수 이용시설에 대한 관정 사업비 지원

《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

1. 시설투자 및 경영활동 보조사업

- 지원대상 : 농공단지 입주기업
- 주요 지원사업

사 업 명	주요내용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지식재산권 창출 및 경영컨설팅 지원 * 지원 비율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입주기업 맞춤형 경영지원	입주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시제품 제작비, 상표 및 포장디자인 개발비, 제품 마케팅 및 홍보비 등) * 지원 비율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입주기업 특화시설 보조지원	입주기업 생산필수기반시설 지원(기업별 1회) * 지원 비율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전년도 표준재무제표 상 물류비의 50% 이내 지원 * 지원 비율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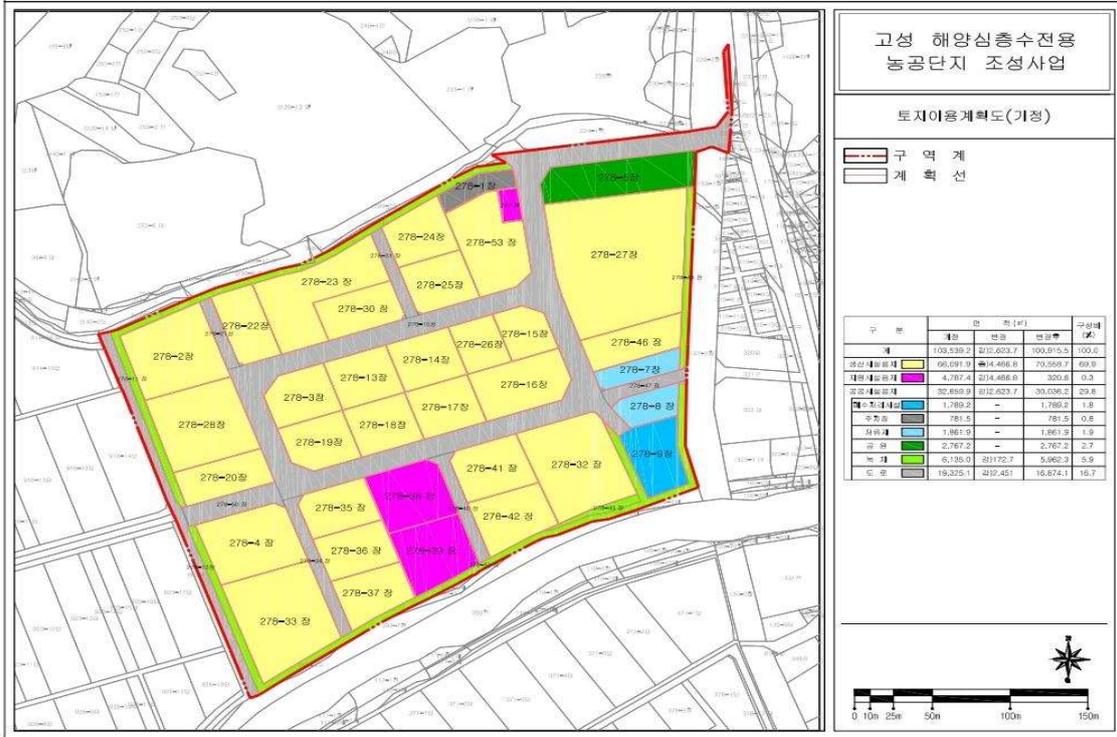
2. 금융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농공단지 입주기업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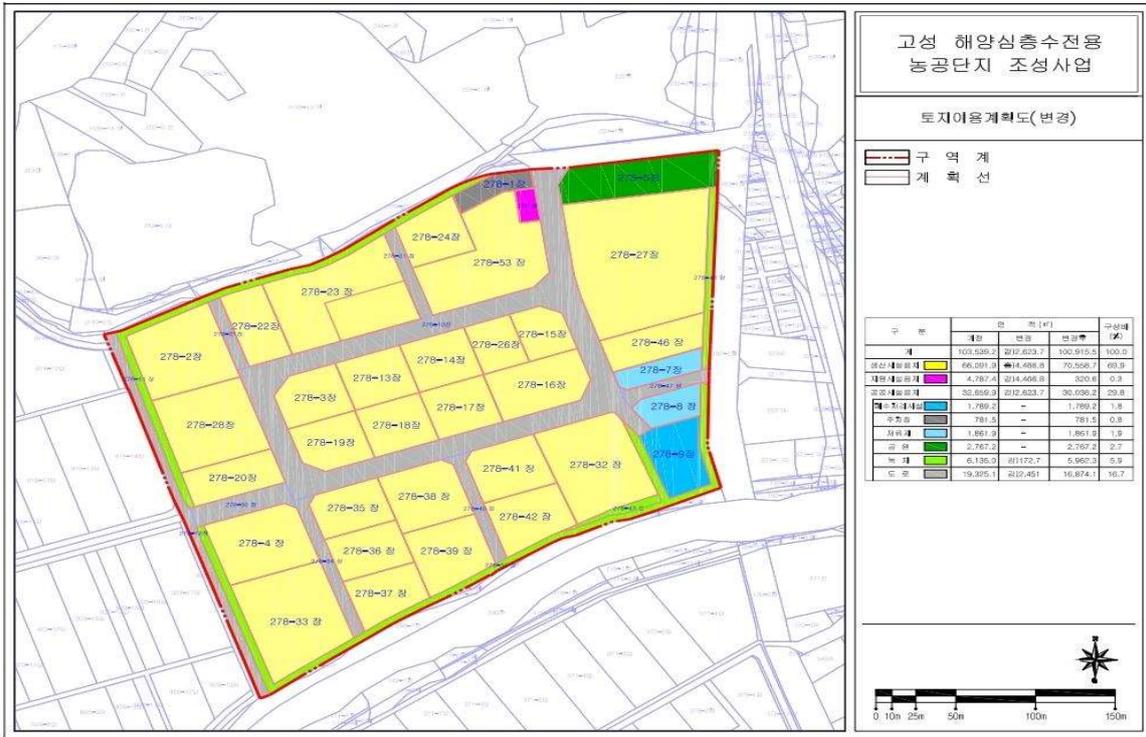
사 업 명	주요내용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 융자한도 4억원으로 최대 3년 지원(기본 2년, 연장 1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이자차액의 3~4% 지원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 종류 : 3종(경영안정, 창업및경쟁력 강화, 특수목적) - 조건 : 지원대상, 금액 및 기간, 금리 등이 종류별 다름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	- 종류 : 창업기업지원자금 등 총7종 - 조건 : 지원대상, 금액 및 기간, 금리 등이 종류별 다름

별첨 1

용도별 구역 평면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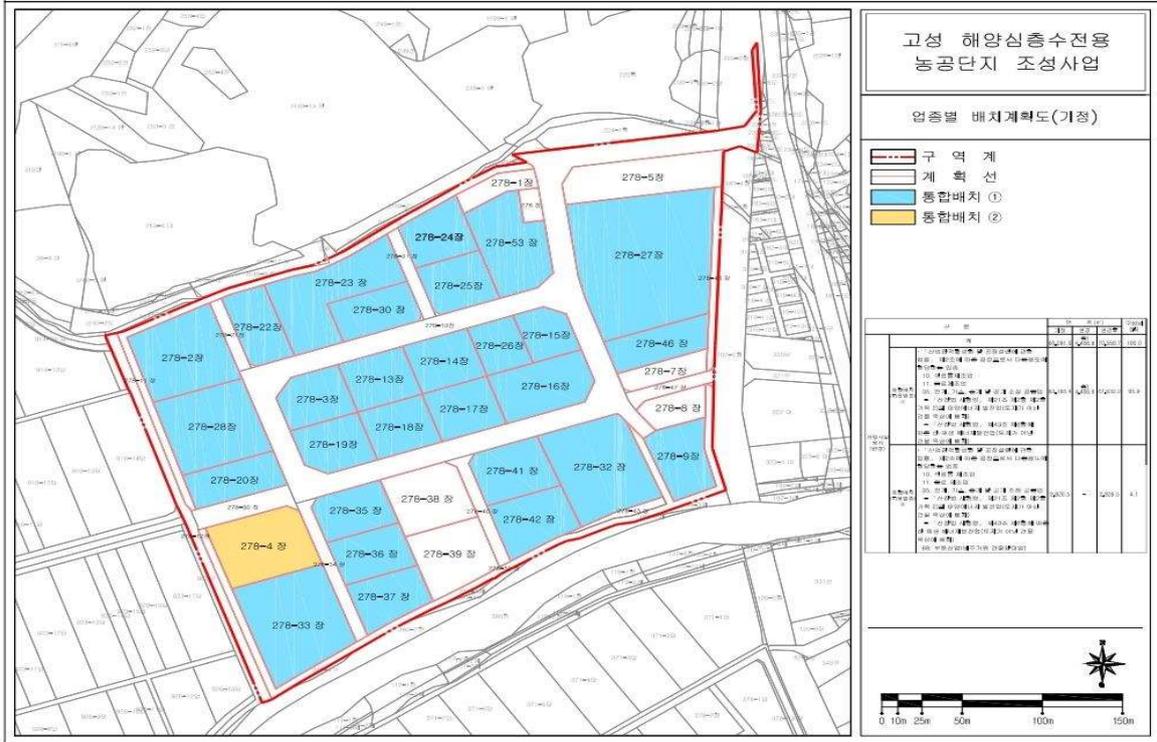


용도별 구역 평면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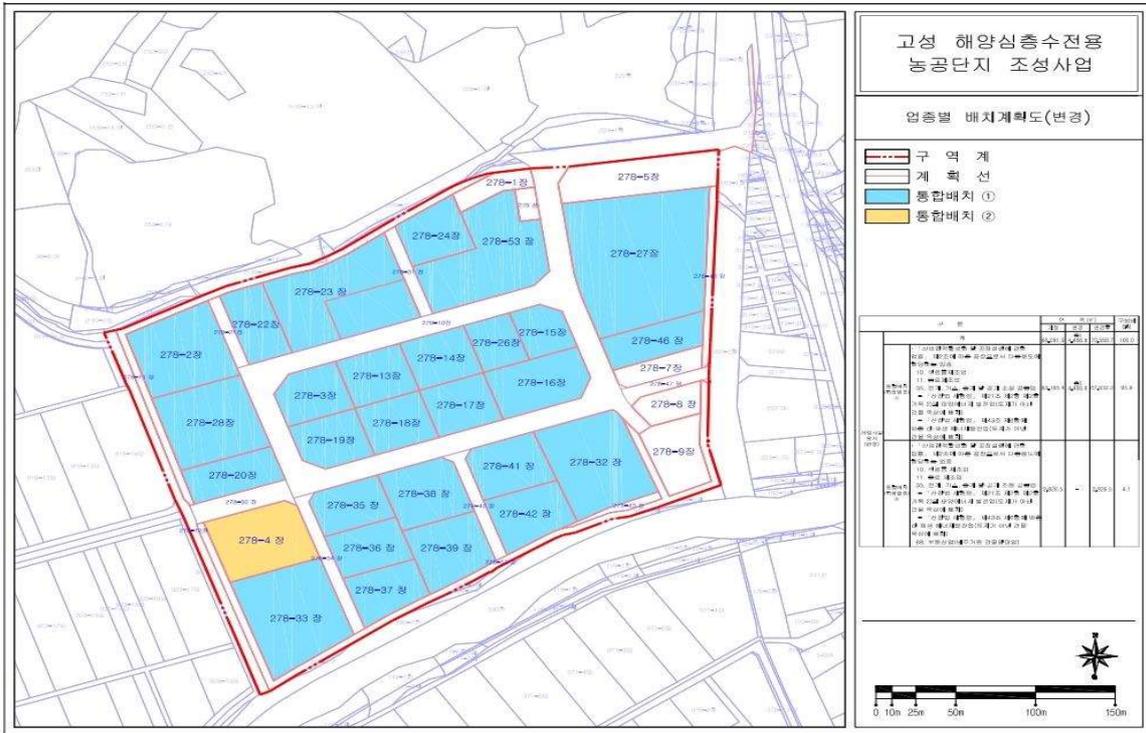


별첨 1

업종별 공장배치계획도(기정)



업종별 공장배치계획도(변경)



고성군 고시 제2023-123호

고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 1.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219호(2023. 6. 23.)로 결정(변경) 고시된 “고성 군관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는 고성군 건설도시과(도시계획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7 월 04 일

고 성 군 수

- 가.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산89-2번지 일원에 계획적·체계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원암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전제로 한 고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 나. 위            치 :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산89-2번지 일원
- 다.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661,478,001.6	-	661,478,001.6	100.00	
도시 지역		12,421,948.4	-	12,421,948.4	1.88	
주 거 지 역	소 계	3,071,201.4	-	3,071,201.4	0.46	
	제1종일반주거지역	1,867,053.3	-	1,867,053.3	0.28	
	제2종일반주거지역	921,159.4	-	921,159.4	0.14	
	제3종일반주거지역	54,076.0	-	54,076.0	0.01	
	준주거지역	228,912.7	-	228,912.7	0.03	
상 업 지 역	소 계	394,073.0	-	394,073.0	0.06	
	일반상업지역	394,073.0	-	394,073.0	0.06	
공 업 지 역	소 계	209,275.0	-	209,275.0	0.03	
	일반공업지역	209,275.0	-	209,275.0	0.03	
녹 지 지 역	소 계	8,304,854.0	-	8,304,854.0	1.26	
	보전녹지지역	829,251.0	-	829,251.0	0.13	
	생산녹지지역	1,120,805.0	-	1,120,805.0	0.17	
	자연녹지지역	6,354,798.0	-	6,354,798.0	0.96	
미지정		442,545.0	-	442,545.0	0.07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도시 지역		649,056,053.2	-	649,056,053.2	98.12	
관 리 지 역	소 계	138,905,375.7	-	138,905,375.7	21.00	
	계획관리지역	66,627,716.0	증) 8,352	66,636,068.0	10.07	
	생산관리지역	15,408,894.3	-	15,408,894.3	2.33	
	보전관리지역	55,904,697.4	감) 8,352	55,896,345.4	8.45	
	미분류	964,068.0	-	964,068.0	0.15	
	농림지역	315,387,353.5	-	315,387,353.5	47.68	
자연환경보전지역		194,763,324.0	-	194,763,324.0	29.44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고성군 원암리 산89-2번지 일원	계획 관리지역	보전 관리지역	1,075	80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9,427	100	

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승인 도면 : 실음 생략(건설도시과 비치)